



#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2017~2021)

신경혜·박성민·한정림



## 머 리 말

1988년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사업장 가입자 이외에 농어촌 지역 자영자 및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2016년 12월 기준으로 약 2,183만 명의 가입자가 가입되어 있고 노령연금 급여의 수급자도 약 341만 명에 달하였으며, 그 동안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와 운용수익으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도 시가기준으로 558조원에 이르는 등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본 과제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목적이외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본 연구원의 신경혜 연구위원이 책임자로 수급자 및 급여지출 전망을 수행하고, 가입자 및 보험료 수입 전망은 박성민 선임연구위원이, 그리고 기금전망과 중기추계모형의 보완은 한정립 부연구위원이 각각 맡아 수행하였다. 특히 거시경제변수 전망은 연구원 내부의 연구진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으나, 금번 중기재정전망은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협의회'의 전망치를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국민연금 중기전망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연구자들은 중기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추계모형에 적용되는 변수들의 불확실성으로 전망이 용이하지 않아 정확한 추계결과의 생산에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연금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이러한 상태를 모형화하여 적용하는 방법에도 실적자료의 미비로 예측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 방법론 등을 계속 개선하여 모형에 적용되는 초기치와 기초율 등을 최근의 추이에 맞도록 조정하였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 의한 증기재정전망은 관련된 가정 및 변수의 오차, 사전에 예측 불가능한 제도의 변화 등에 의하여 실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추계에 의한 미래의 예측방법이 갖는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계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향후에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의 많은 자문을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공단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이를 연구한 연구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특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추후 결정될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2017년 4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 원 희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김 성 숙

## 목 차 | Contents

요 약 .....	1
I. 서 론 .....	7
II. 가입자 전망 .....	11
1. 가입자 현황 .....	11
2. 가입자 전망 .....	19
III. 연금보험료 수입 .....	27
1. 평균소득월액 .....	27
2. 징수율 및 납부예외자비율 가정 등 .....	40
3.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 .....	45
IV. 급여지출 및 기타지출 .....	49
1. 급여지급현황 및 전망 .....	49
2. 노령연금 전망 .....	69
3. 유족연금 전망 .....	81
4. 장애연금 전망 .....	84
5.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전망 .....	88
6. 기타지출 .....	95
V. 기금운용현황 및 투자 .....	97
1. 기금운용현황 .....	97
2. 기금투자에 대한 가정 .....	103
3. 기금전망 .....	106
참고문헌 .....	109
부 록 .....	111

## 표차례

〈요약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중기 전망 .....	1
〈요약표 2〉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	2
〈요약표 3〉 보험료수입 전망 .....	3
〈요약표 4〉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	4
〈요약표 5〉 국민연금 재정전망 .....	5
〈표 II-1〉 성별·가입종별 가입자 현황 .....	12
〈표 II-2〉 월별 가입자 현황(2015.12~2016.12) .....	12
〈표 II-3〉 국민연금 가입률 .....	20
〈표 II-4〉 지역가입자 비중 전망 .....	22
〈표 II-5〉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	23
〈표 III-1〉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평균임금 .....	28
〈표 III-2〉 월별 상·하한 소득자 비중의 변화 .....	30
〈표 III-3〉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	34
〈표 III-4〉 평균소득월액 전망 .....	37
〈표 III-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전망 .....	37
〈표 III-6〉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비교 .....	40
〈표 III-7〉 월별 징수율 현황 .....	41
〈표 III-8〉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수납률(2014년) .....	42
〈표 III-9〉 연금보험료 수납현황 .....	45
〈표 III-10〉 보험료수입 전망 .....	46
〈표 III-11〉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	46
〈표 III-1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	47
〈표 III-13〉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	47
〈표 III-14〉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	47

〈표 Ⅲ-15〉 지역,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47
〈표 Ⅳ-1〉 급여지급현황(2000~2016)	50
〈표 Ⅳ-2〉 A값 전망	54
〈표 Ⅳ-3〉 수급자 및 급여액 현황(2016년)	55
〈표 Ⅳ-4〉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56
〈표 Ⅳ-5〉 출생코호트(55년생~60년생) 인구수 및 가입자수	60
〈표 Ⅳ-6〉 장애연금 신청자 및 등급 외 비율	66
〈표 Ⅳ-7〉 특례노령연금 지급현황	70
〈표 Ⅳ-8〉 특례노령연금 전망	72
〈표 Ⅳ-9〉 조기노령연금 지급현황	73
〈표 Ⅳ-10〉 조기노령연금 전망	75
〈표 Ⅳ-11〉 노령연금(10년 이상 20년 미만) 지급현황	76
〈표 Ⅳ-12〉 노령연금(20년 이상) 지급현황	77
〈표 Ⅳ-13〉 노령연금 신규대상자	79
〈표 Ⅳ-14〉 노령연금(10년 이상 20년 미만) 전망	79
〈표 Ⅳ-15〉 노령연금(20년 이상) 전망	80
〈표 Ⅳ-16〉 노령연금(소득활동) 전망	80
〈표 Ⅳ-17〉 유족연금 지급현황	81
〈표 Ⅳ-18〉 유족연금 전망	84
〈표 Ⅳ-19〉 장애연금 지급현황	85
〈표 Ⅳ-20〉 장애연금 전망	87
〈표 Ⅳ-21〉 장애일시금 전망	88
〈표 Ⅳ-22〉 반환일시금 지급현황	89
〈표 Ⅳ-23〉 반환일시금 수급자수 전망	93
〈표 Ⅳ-24〉 반환일시금 전망	93
〈표 Ⅳ-25〉 사망일시금 지급현황	94
〈표 Ⅳ-26〉 사망일시금 전망	95

〈표 IV-27〉 기타지출 현황 .....	96
〈표 IV-28〉 연도별 기타지출 전망 .....	96
〈표 V-1〉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	97
〈표 V-2〉 연도별 기금운용내역 .....	98
〈표 V-3〉 연도별 수익률 현황 .....	101
〈표 V-4〉 2016년도 투자 현황 .....	102
〈표 V-5〉 기금투자계획 .....	103
〈표 V-6〉 연도별 여유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내역 .....	104
〈표 V-7〉 부문별 투자수익 세부내역 .....	105
〈표 V-8〉 부문별 여유원금회수 세부내역 .....	106
〈표 V-9〉 국민연금 재정전망 .....	107
〈부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중기 전망 .....	111
〈부표 2〉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2016~2021) .....	112
〈부표 3〉 개정법(급여 관련) 주요내용 .....	113
〈부표 4〉 잠재적 수급권자(현행 대비 개정법) .....	114
〈부표 5〉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	115
〈부표 6〉 연도별 기금운용내역 .....	116
〈부표 7〉 연도별 수익률 현황 .....	117

## 그림차례

[그림 II-1] 총 가입자 실적 및 2015년도 전망과의 비교 .....	13
[그림 II-2] 사업장 가입자 추이 .....	15
[그림 II-3] 사업장 가입자 실적 및 2015년도 전망과의 비교 .....	16
[그림 II-4] 지역가입자 추이 .....	17
[그림 II-5] 지역가입자 실적 및 2015년 전망과의 비교 .....	18
[그림 II-6]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및 전망 .....	21
[그림 II-7] 지역가입자 비중 추이 및 전망 .....	22
[그림 II-8] 총 가입자 전망 .....	24
[그림 II-9] 사업장 가입자 전망 .....	24
[그림 II-10] 지역가입자 전망 .....	25
[그림 II-11] 임의가입자 전망 .....	25
[그림 II-12] 임의계속가입자 전망 .....	26
[그림 III-1] 사업장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	34
[그림 III-2]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	36
[그림 III-3]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의 평균소득 비교 .....	38
[그림 III-4] 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 비율 현황 및 전망 .....	44
[그림 IV-1] 수급자수 및 급여액 산출 흐름도 .....	53
[그림 IV-2] 총 급여액 실적(2000~2016) 및 전망치(2017~2021) .....	57
[그림 IV-3] 노령연금액 실적(2000~2016) 및 전망치(2017~2021) .....	58
[그림 IV-4] 노령연금(조기노령 포함) 신규수급자수 실적(2000~2016) 및 전망치(2017~2021) .....	59
[그림 IV-5] 유족연금액 실적(2000~2016) 및 전망치(2017~2021) .....	61
[그림 IV-6] 유족연금 신규수급자수 실적(2000~2016) 및 전망치 (2017~2021) .....	62

[그림 IV-7] 장애연금 실적(2000~2016) 및 전망치(2017~2021) .....	63
[그림 IV-8]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실적(2000~2016) 및 전망치(2017~2021) ...	64
[그림 IV-9]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의 월별 발생추이(2006~2016) .....	65
[그림 IV-10] 일시금(장애일시금 제외) 실적 및 전망치(2017~2021) .....	67

## 요약

### 1. 거시경제변수의 가정

〈요약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중기 전망

(단위 : %)

경제변수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2.8	2.6	3.2	3.4	3.4	3.1
소비자물가상승률	1.0	1.6	1.7	1.8	2.0	2.0
명목임금상승률	3.8	2.6	3.1	3.5	4.0	3.5
명목금리	1.8	3.3	3.4	3.5	3.7	3.7

주 : 1) 2016년도는 실적치임.

2) 전망치는 기획재정부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협의회' 전망치('17.01)임.

### 2. 가입자

- 전체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경제활동참가율 및 국민연금 가입률의 증가로 가입자의 증가추이는 유지되나, 향후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2019년에 이르러 감소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지역가입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증가는 계속 유지
  - 임의가입자는 추계 기간 중 계속 최근의 증가 추이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연금을 수급하고자 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최근 증가추이 반영

## 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 〈요약표 2〉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단위 : 명)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가입자	21,832,524 (1.22%)	21,894,718 (0.28%)	21,936,725 (0.19%)	21,919,819 (-0.08%)	21,837,649 (-0.37%)	21,764,299 (-0.34%)
사업장 가입자	13,192,436 (3.02%)	13,381,244 (1.43%)	13,491,840 (0.83%)	13,562,658 (0.52%)	13,593,688 (0.23%)	13,638,828 (0.33%)
지역 가입자	8,060,199 (-2.92%)	7,843,398 (-2.69%)	7,685,188 (-2.02%)	7,510,075 (-2.28%)	7,319,010 (-2.54%)	7,141,919 (-2.42%)
임의	296,757 (23.35%)	344,338 (16.03%)	383,660 (11.42%)	417,363 (8.78%)	445,452 (6.73%)	467,922 (5.04%)
임의 계속	283,132 (29.22%)	325,738 (15.05%)	376,037 (15.44%)	429,723 (14.28%)	479,499 (11.58%)	515,630 (7.54%)

주 : ( )은 연간 증감률

## 3. 연금보험료 수입

- 2010년 7월부터 적용된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의 자동조정으로 인하여 가입자 평균 소득의 증가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나,
  -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상승률은 전체 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함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이전의 증가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임의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의 차이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요약표 3〉 보험료수입 전망

(단위: 백만원)

연도	총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	반·추납
2017	40,571,606	35,662,149	3,592,303	333,770	289,510	693,873
2018	41,969,501 (3.45%)	36,862,207 (3.37%)	3,659,472 (1.87%)	387,880 (16.21%)	342,163 (18.19%)	717,780 (3.45%)
2019	43,253,496 (3.06%)	37,935,987 (2.91%)	3,735,418 (2.08%)	439,254 (13.24%)	403,098 (17.81%)	739,739 (3.06%)
2020	44,430,074 (2.72%)	38,923,670 (2.60%)	3,790,796 (1.48%)	487,489 (10.98%)	468,257 (16.16%)	759,862 (2.72%)
2021	45,667,898 (2.79%)	39,991,707 (2.74%)	3,837,327 (1.23%)	531,546 (9.04%)	526,286 (12.39%)	781,031 (2.79%)

주 : ( )은 연간 증감률

## 4. 수급자 및 급여지출

- 2016년도 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인 55년생이 노령연금 신규수급자로 발생되기 시작하였으며, 베이비부머 코호트는 인구수 뿐만 아니라 가입자수도 이전 출생코호트에 비해서 많으며 또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수의 비중도 높아지므로, 2017년 이후에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함.
- 최근의 개정법(2016.11.30. 시행)<sup>1)</sup>에서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이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신규수급자는 서서히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특히 장애연금의 경우 초진일에서 부터 장애등급 판정까지의 시간적인 경과를 고려하면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개정법의 내용 중

1) '부록'의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 주요내용(요약) 참조

#### 4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중복급여의 유족연금 급여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유족연금액도 좀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함.

〈요약표 4〉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단위: 건, 억원)

연 도		총 계	노령 연금	유족 연금	장애 연금	장애 일시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2017	수급자	4,641,929	3,672,106	688,681	75,124	2,633	187,065	16,320
	급여액	194,031	161,222	19,017	3,462	353	9,463	514
2018	수급자	4,781,183	3,745,477	735,721	75,808	2,685	205,039	16,453
	급여액	211,779	176,201	20,944	3,508	367	10,224	535
2019	수급자	5,179,321	4,075,820	783,877	76,155	2,746	224,243	16,480
	급여액	234,271	195,569	23,031	3,587	382	11,143	559
2020	수급자	5,617,692	4,451,019	832,961	76,619	2,801	237,998	16,294
	급여액	269,692	227,855	25,241	3,674	397	11,953	572
2021	수급자	6,079,504	4,858,547	882,894	77,185	2,858	241,957	16,063
	급여액	309,695	264,936	27,602	3,771	412	12,392	582

주 : 1) 급여액은 연간 총액임.

2) 연금은 1개월 이상 수급한 연간 수급자수이며, 일시금은 연간 총 수급자임.

- 반환일시금 수급자 중 연령 도달로 인한 수급자는 2013년도 경우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수급연령의 변화가 있었으나, 2012년도에 이루어진 국민연금법 부칙 개정으로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2013년도는 일시금 수급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013년도보다는 다소 감소되었으며, 2015년 이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연령 도달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함.

## 5. 국민연금 재정전망

- 2016년 12월 말 현재 적립기금 558조원(시가기준)에서 2017년 말에는 적립기금이 약 60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에는 약 6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18년도 운용자금은 회수금 약 56조원과 신규조성자금 약 45조를 합하여 약 10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요약표 5〉 국민연금 재정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 (A)	계	617,959	665,925	708,690	767,554	810,756
	연금보험료	405,716	419,695	432,535	444,301	456,679
	이자수입	212,243	246,230	276,155	323,253	354,077
지출 (B)	계	200,570	218,864	241,947	278,009	318,707
	연금급여	194,031	211,779	234,271	269,692	309,695
	기타	6,539	7,085	7,676	8,317	9,012
신규조성자금(C=A-B)		417,389	447,061	466,743	489,545	492,049
회수자금(D)		455,352	559,399	421,625	477,782	451,674
운용자금(E=C+D)		872,741	1,006,460	888,368	967,327	943,723
적립기금		6,000,380	6,447,441	6,914,184	7,403,728	7,895,777

- 주 : 1) 기타지출은 관리운영비 및 경상지출 등이 포함됨.  
 2) 재정전망 작성기준은 현금의 수취나 지급과는 관계없는 발생주의로 기록하였으며, 따라서 현금의 유출입과는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음.



# I. 서론

매년 수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은 익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수입과 지출, 특히 연금보험료 수입과 급여지출의 전망을 통하여 여유자금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나아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과 용도를 갖고 있는 중기재정전망은 5년마다 수행되는 재정계산을 위한 장기재정전망과 다른 형태를 갖는다. 즉, 장기재정전망은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재정상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매 연단위의 현금의 흐름을 그 기본 결과로 제시하는 반면, 중기재정전망은 보다 세부적인 제도의 반영을 위하여 월단위로 작성되며, 재정상태의 안정성 진단보다는 정확한 수입과 지출의 전망이 요구된다.

이러한 중기재정전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중기재정추계모형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중기추계모형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단위로 구분되며, 이러한 구분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상태나 소득의 변화를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로 구성하게 된다<sup>2)</sup>. 가입자 전망은 최근 가입자의 증감 추이, 연금제도 및 정책의 변화를 고려하는 이외에 생산활동 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인구전망, 경찰인구 전망 등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매월 가입자의 소득이 변화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연금보험료 수입을 전망하고, 거시경제변수의 전망에서는 경기순환주기 등을 고려함으로써 장기전

---

2) 이러한 월(月)단위의 구분은 연(年)단위로 구축된 장기전망과 구분되며, 월별로 변화되는 가입자의 변화, 즉,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매년 7월에 변화되고 수급자의 급여액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4월에 조정되는 등 제도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8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망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상황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또한 기금운용수익 및 회수자금 규모의 파악을 위하여 중기전망시점에서 이미 투자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원리금 추심계획에 나타난 수익금과 회수계획을 반영하고 향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중기자산배분계획에 의거한 투자계획을 반영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전망을 시도하고 있다.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은 최근 연월의 실적자료를 초기치로 사용하고, 이후 변화되는 규모는 매월 신규로 발생하는 대상자를 추가적으로 산출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13년도에 이어서 2018년도에 이루어질 수급연령 상향을 고려하는 등 제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망하고 있으며, 변동이 불규칙하여 예측이 쉽지 않은 일시금의 경우에는 최근의 변화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중기전망에서 최근의 경향과 변화를 반영하려는 시도는 중기전망의 전망치와 실적의 비교를 통하여 보다 전망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대외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2장에서는 가입자 전망, 3장에서는 연금보험료 수입의 산출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4장에서는 급여지출 및 사업비를 포함한 기타지출의 전망을, 5장에서는 기금운용수익 및 회수자금의 산출과정과 전망된 수입과 지출을 이용하여 적립기금 등 전반적인 재정전망에 대한 설명을 게재하였다.

금번 중기전망은 이전과 달리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내부연구진에 의한 거시경제변수 전망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16년도에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협의회'의 주관 하에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2016~2025)'를 수행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sup>3)</sup>. 이는 사회보험의 통합모형을 통해서 사회

3) 「'16~'25 8대 사회보험 중기추계결과 및 '16년 자산운용실적」 발표, 기획재정부 보

보험의 재정전망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각 사회보험의 재정추계를 수행하는 기관의 모형을 통해서 전망기간에 해당되는 결과를 각각 취합하여 통합하고 분석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각 사회보험의 중기재정전망을 위해서 필요한 거시경제변수 전망은 공통전제를 적용하였다. 이와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금번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은 기획재정부의 통합재정추계에 적용된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적용하였다. 적용한 거시경제변수 및 노동변수 전망치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 Ⅱ. 가입자 전망

### 1. 가입자 현황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대상이며 가입자의 종류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되며,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이외의 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자 및 노령연금 수급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제도이며,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가 가입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64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6년도 12월말 현재 사업장가입자가 1,319만 명, 지역가입자가 806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임의가입자는 30만 명, 임의계속가입자는 28만 명으로 총가입자는 약 2,183만 명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되어 잠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4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2014년 후반에 이전 수준을 넘어섰으며 최근에도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임의계속가입자도 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가입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1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표 II-1〉 성별·가입종별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2016년 12월 기준)

구분 성별	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인원	비율				
계	21,832,524	(100.0%)	13,192,436	8,060,199	296,757	283,132
남자	12,195,190	(55.9%)	7,814,334	4,245,472	45,944	89,440
여자	9,637,334	(44.1%)	5,378,102	3,814,727	250,813	193,692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표 II-2〉 월별 가입자 현황(2015.12~2016.12)

(단위 : 천명)

연도	월	가입자			전월대비증감		
		계	사업장 가입자	지 역 가입자	계	사업장 가입자	지 역 가입자
평균		21,153	12,987	8,166	9	31	-22
2015	12	21,109	12,806	8,303	-29	11	-41
2016	1	21,030	12,766	8,264	-79	-40	-39
2016	2	21,056	12,813	8,243	26	47	-21
2016	3	20,990	12,800	8,190	-66	-13	-53
2016	4	21,056	12,905	8,150	66	105	-40
2016	5	21,120	12,955	8,165	64	49	15
2016	6	21,136	12,999	8,137	16	44	-28
2016	7	21,206	13,044	8,162	70	46	24
2016	8	21,235	13,072	8,164	29	27	2
2016	9	21,239	13,096	8,143	3	24	-21
2016	10	21,266	13,153	8,113	27	57	-30
2016	11	21,288	13,225	8,063	22	72	-50
2016	12	21,253	13,192	8,060	-35	-3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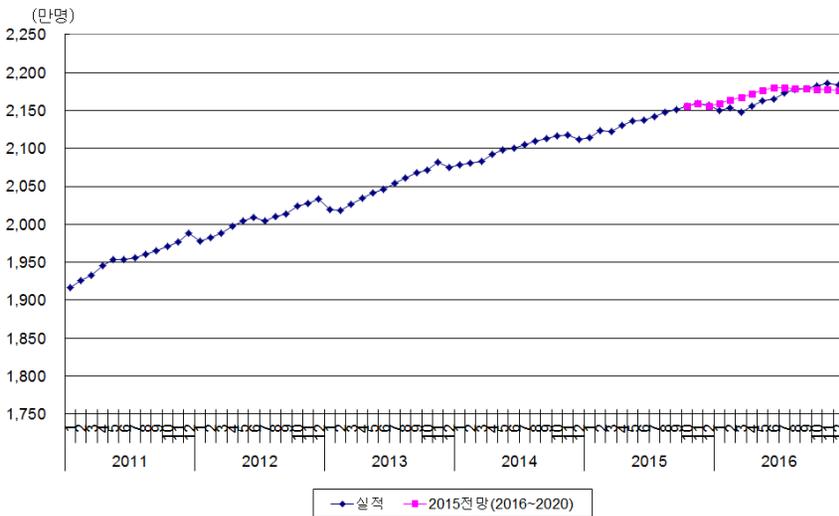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016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2,125만 명으로, 전년 동기(2015.12) 대비 14만 명 증가하였다. 이는 16만 명의

증가를 예상했던 기존의 전망<sup>4)</sup>과 비교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가입자의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가입자의 증가 추이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매년 말과 년 초에 가입자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표 II-2〉 및 [그림 II-1] 참조). 이러한 현상은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한정하여 이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입자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 II-1] 총 가입자 실적 및 2015년도 전망과의 비교



그 밖에 가입자의 변화 요인으로 임의가입자 추이 변화 및 임의계속 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지적할 수 있다. 노후생활보장 수단으로서의 국민연금의 중요성과 수익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적용제외자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던 임의가입자는 2013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4)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6~2020), 201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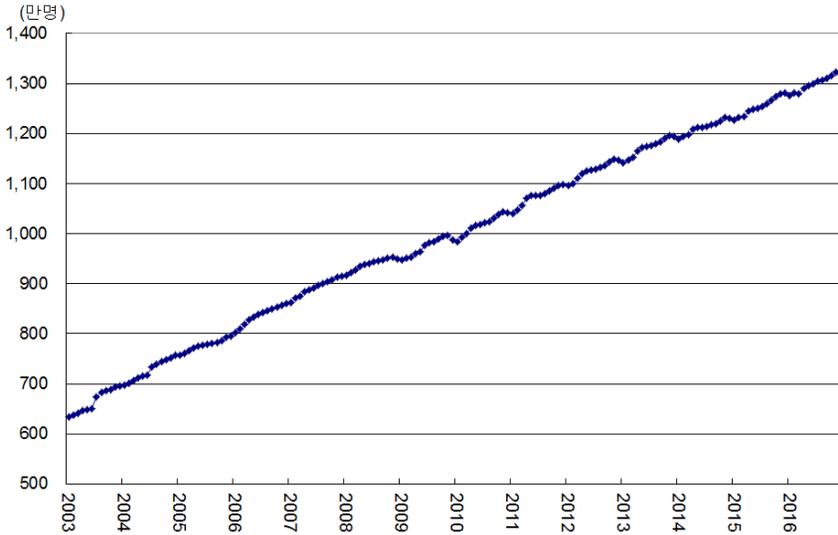
## 14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2014년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에는 2013년 감소 추이가 발생하기 이전 규모를 초과하였으며,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의 연장 또는 수급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가입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60세 이후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그 증가 추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범위가 상용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 2003년 이후 사업장가입자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장가입자의 규모는 사업장확대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1차 사업장확대 사업이 실시된 2003년도 중반, 제2차 사업장확대 사업이 실시된 2004년도 중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차 사업장확대가 실시된 2006년도 초반에 급격한 가입자의 상승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7년 초에 시행된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가입 조치로 인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증가가 나타났다.

2008년도 하반기에는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사업장가입자가 감소하였으나 그 영향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였고 2009년 초반 이후 이전 증가추이를 회복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및 2012년도 초반에도 사업장가입자의 규모가 잠시 하락하였으나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그림 II-2)참조). 이와 같이 매년 말과 초에 사업장 가입자의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최근 2009년 이후로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가입자의 규모는 매년 말과 초의 일시적인 등락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일정한 증가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II-2] 사업장 가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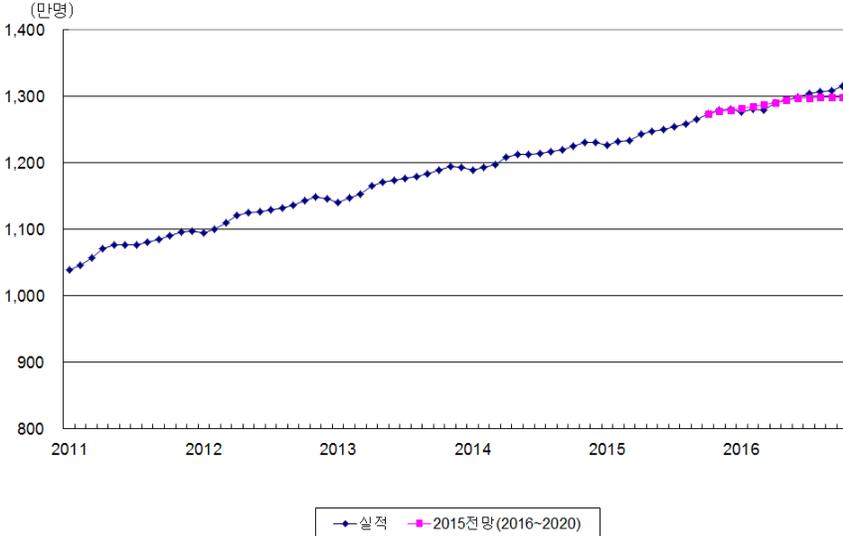


이러한 사업장가입자의 증가 추이는 이전 중기전망에서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전 2015년 12월에 수행된 중기전망에서는 2015년도 상반기에 나타난 사업장 가입자의 증가추이가 상당기간 계속 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sup>5)</sup>. 그러나 2015년도 연말과 2016년 초에 다시 하락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전의 증가추이와 유사해지는 형태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2016년도 상반기는 전망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2016년 중반기에는 실적과 전망치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에는 전망 보다 사업장 가입자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II-3)참조). 이러한 전망과 실적의 차이는 가입자 전망방법이 매월별 변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연간 추이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5) 2015년 12월의 중기재정전망에 반영된 실적자료는 2015년 10월까지의 자료를 활용

## 16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그림 II-3] 사업장 가입자 실적 및 2015년도 전망과의 비교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사업장범위 확대사업에 의한 영향을 밀접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 중반이전까지 1,000만명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던 지역가입자의 규모는 제1차 사업장확대가 실시된 2003년 중반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장확대사업을 실시하면서 미가입자가 발굴되어 이들에 대한 가입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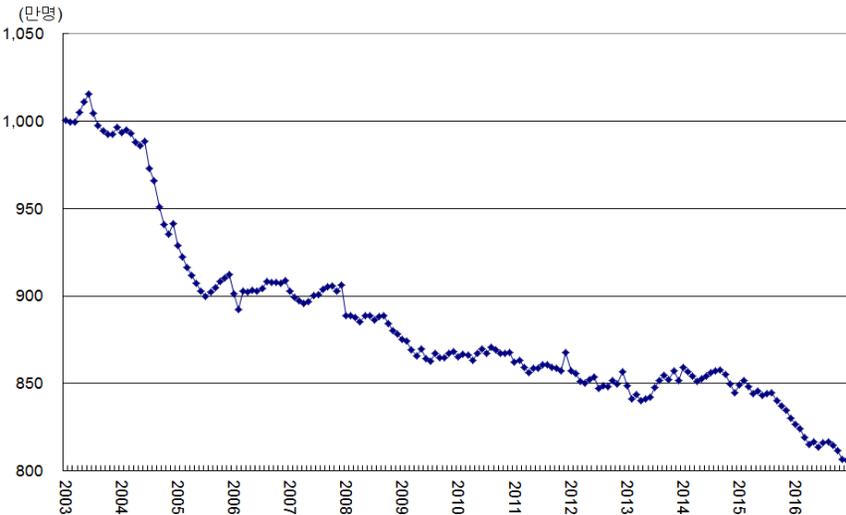
그러나 제2차 사업장확대사업이 실시된 2004년도 중반이후에는 지역가입자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다. 제2차 사업장범위 확대 사업의 특징은 지역가입자의 감소 추이가 2005년 중반까지 꾸준하게 이어졌다는 점이라 볼 수 있다. 2005년 중반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나 제3차 사업장확대가 실시된 2006년 초에 다시 감소하였으며 2006년도 중반이후에는 다시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II-4)참조).

2007년 초에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업장가입 전환으로 다시 감소하였

으며, 2008년 초에는 행방불명자에 대한 적용제외 조치로 인하여 가입자의 규모가 감소하였다. 2008년 중반이후 다시 지역가입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국제금융위기에 의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이러한 감소현상은 2009년 중반 이후 2010년 말까지 다시 정체 현상으로 바뀌었으나 2011년 초에 다시 감소하였다.

2011년 중반이후 지역가입자의 규모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2년 들어 지역가입자의 규모가 다시 감소하였으며, 2013년 중반이후에는 다시 지역가입자의 규모가 증가하여 2012년 이후 평균적으로 850만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중반 이후 다시 지역가입자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인 지역가입자의 감소 추이는 계속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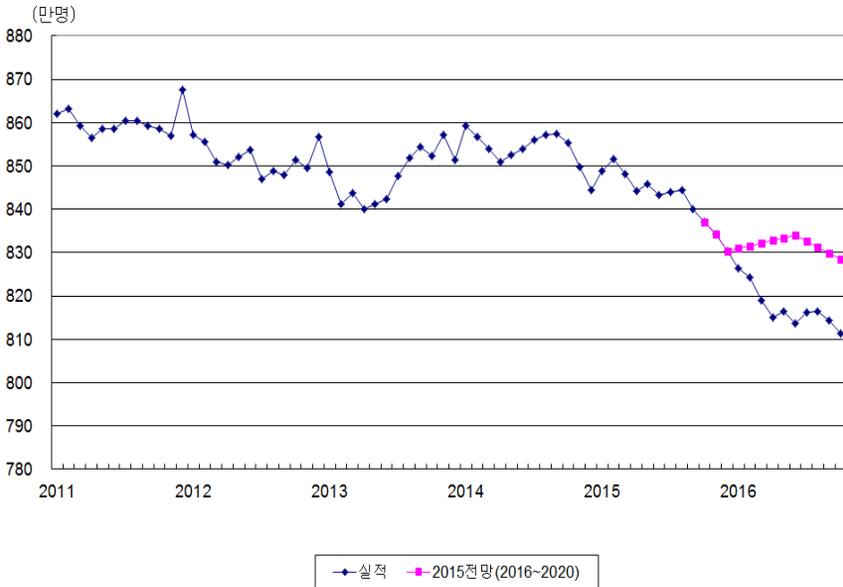
[그림 II-4] 지역가입자 추이



## 18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2015년도 중기전망에서는 당시 지역가입자의 규모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추계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단기적으로 초기에는 정체 또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지역가입자는 2015년 이후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실적과 전망치와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림 II-5] 지역가입자 실적 및 2015년 전망과의 비교



## 2. 가입자 전망

국민연금의 총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에 국민연금가입률을 적용하고<sup>6)</sup>,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의 총 가입자에 지역가입자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사업장가입자는 총 국민연금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규모로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text{국민연금가입자} &= \text{인구} \times \text{경제활동참가율} \times \text{국민연금가입률} \\ \text{지역가입자} &= \text{국민연금가입자} \times \text{지역가입자비중} \\ \text{사업장가입자} &= \text{국민연금가입자} - \text{지역가입자} \end{aligned}$$

15세 이상 60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비율로 정의된 국민연금가입률의 1999년 지역가입자의 도시지역 확대 이후 추이를 살펴보았다. 2005년까지 약 80% 수준에 머물고 있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도에는 85% 수준에서 2009년도이후에는 계속 증가하여 2013년에는 90%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최근에는 91%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가입률의 상승은 주로 여성 가입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성의 가입률이 초기 95% 수준에서 최근에는 90%

6)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협의회” 산하 “통합재정추계위원회”에서 사회보험의 중기전망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거시경제변수 및 노동변수를 제공함. 노동변수 중 경활률은 성별·5세연령계층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연령별 변환이 곤란하여, 중기전망에서는 연령계층별 경활률을 적용한 15세~59세 성별 경활인구를 산출하고 여기에 국민연금가입률은 성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음. 한편, 통계청의 경활인구 통계에서 인구는 총 인구중 군인, 재소자 등이 제외된 인구(남자 5.12%, 여자 1.04%, 2016년 기준)를 대상으로 경활률이 산출되므로 가입자 전망에서 경활인구를 산출하기 위한 인구는 인구전망의 15세 이상 60세 미만 총 인구에 제외자 비율을 적용하여 경활대상 인구를 산출하고 여기에 경활률을 적용하였으며, 실적과 전망치의 접점에서의 괴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외자 비율은 실적의 75%를 적용하였음

## 20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여성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3%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실업률이 안정적인 경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자가 취업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가입자의 비중은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고 판단되어 중기전망에서 성별 국민연금가입률의 상승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및 이로 인한 여성 가입자의 증가로 전체 국민연금가입률은 미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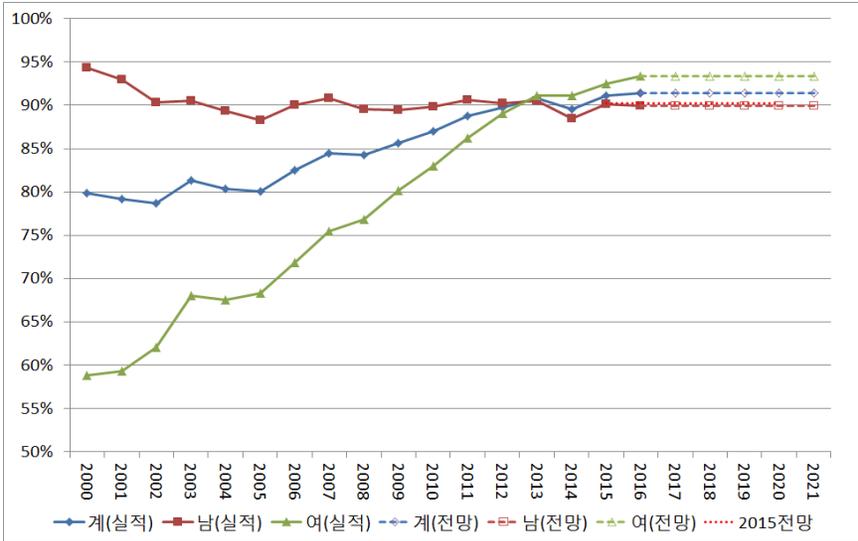
〈표 II-3〉 국민연금 가입률

(연도말 기준)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91.37%	91.38%	91.39%	91.39%	91.40%	91.40%
남	89.91%	89.91%	89.91%	89.91%	89.91%	89.91%
여	93.37%	93.37%	93.37%	93.37%	93.37%	93.37%

주 : 국민연금 가입률 실적은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 60세 미만)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제외)의 비율이며, 통계청([www.kosis.kr](http://www.kosis.kr))의 경제활동인구와 국민연금 내부의 가입자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그림 II-6]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및 전망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합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가입자중 지역가입자의 비중은 도시지역 확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제도 시행초기 70% 수준에 달하던 지역가입자 비중은 2016년 12월 현재 37.92%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사업장범위 확대로 인하여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 사업장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지역가입자 비중은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감소를 우려하여 2016년 지역가입자 비중의 전년도 대비 감소율<sup>7)</sup>(남자 0.9634, 여자 0.9639)을 약간 높게 조정하여 적용하였으며, 2021년 말에는 34.63%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전망 결과는 2015년 중기전망에서의 전망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16년의 지역가입자 비중이 2015년 전망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7) 감소율 = 금년도 지역가입자 비중 / 전년도 지역가입자 비중

## 2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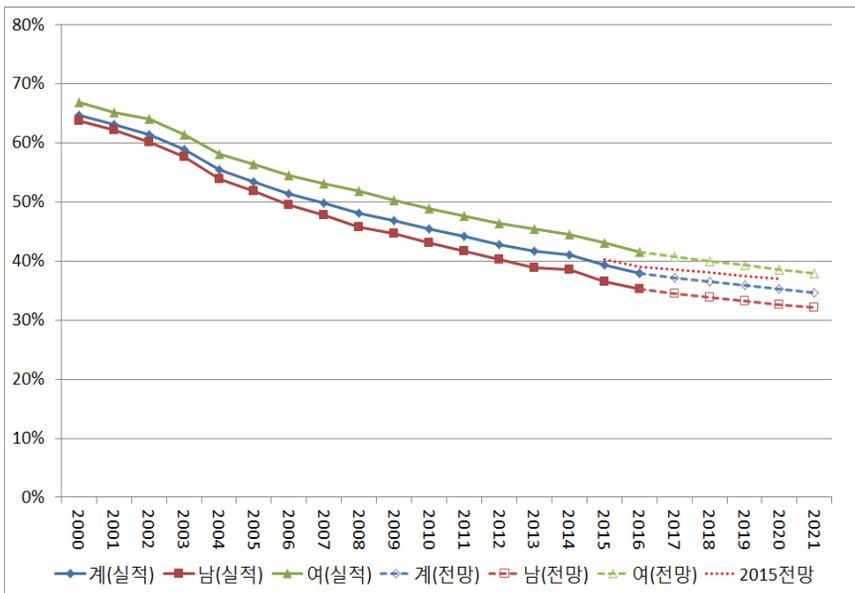
〈표 II-4〉 지역가입자 비중 전망

(연평균 기준)

연도	2016년 12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37.92%	37.23%	36.56%	35.91%	35.26%	34.63%
남	35.20%	34.56%	33.93%	33.30%	32.69%	32.09%
여	41.50%	40.75%	40.01%	39.29%	38.58%	37.89%

주 : 지역가입자 비중은 가입자(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제외) 대비 지역가입자의 비중임

[그림 II-7] 지역가입자 비중 추이 및 전망



가입자 현황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13년에 들어 임의가입자의 감소가 나타났으나 2014년에는 다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에는 매월 평균 4.7천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임의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향후 임의가입자의 증가 규모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 가정 하에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그 증가 규모를 축소 적용하였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의 신규가입률, 계속가입률 및 탈퇴율을 적용하여 전망하였다. 즉, 매월 임의계속가입자에 계속가입률 및 탈퇴율을 적용하여 임의계속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자와 59세 가입자 및 대기자 중 60세에 달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신규가입률을 적용하여 신규 임의계속가입자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총 가입자는 2016년 말 2,183만 명 수준에서 2017년에는 2,189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2018년에는 2,194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는 2,176만 명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찰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감소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가능 활동인구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증가로 2017년과 2018년에 다소 증가하지만 전반적인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

〈표 II-5〉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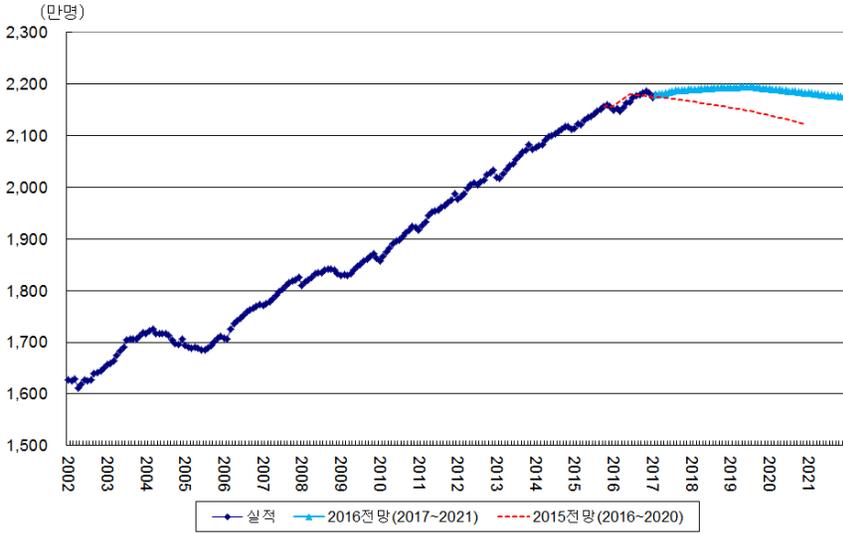
(단위 : 명)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가입자	21,832,524 (1.22%)	21,894,718 (0.28%)	21,936,725 (0.19%)	21,919,819 (-0.08%)	21,837,649 (-0.37%)	21,764,299 (-0.34%)
사업장 가입자	13,192,436 (3.02%)	13,381,244 (1.43%)	13,491,840 (0.83%)	13,562,658 (0.52%)	13,593,688 (0.23%)	13,638,828 (0.33%)
지역 가입자	8,060,199 (-2.92%)	7,843,398 (-2.69%)	7,685,188 (-2.02%)	7,510,075 (-2.28%)	7,319,010 (-2.54%)	7,141,919 (-2.42%)
임의	296,757 (23.35%)	344,338 (16.03%)	383,660 (11.42%)	417,363 (8.78%)	445,452 (6.73%)	467,922 (5.04%)
임의 계속	283,132 (29.22%)	325,738 (15.05%)	376,037 (15.44%)	429,723 (14.28%)	479,499 (11.58%)	515,630 (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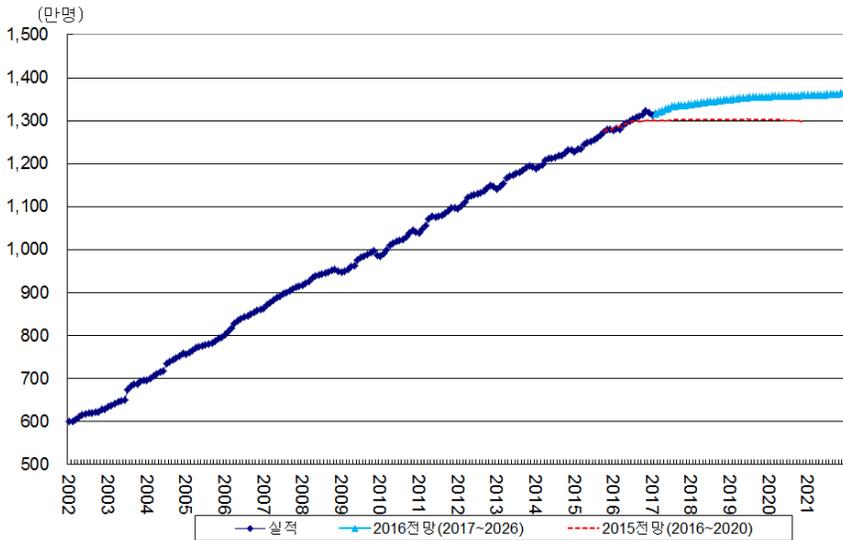
주 : ( )은 연간 증감률

## 24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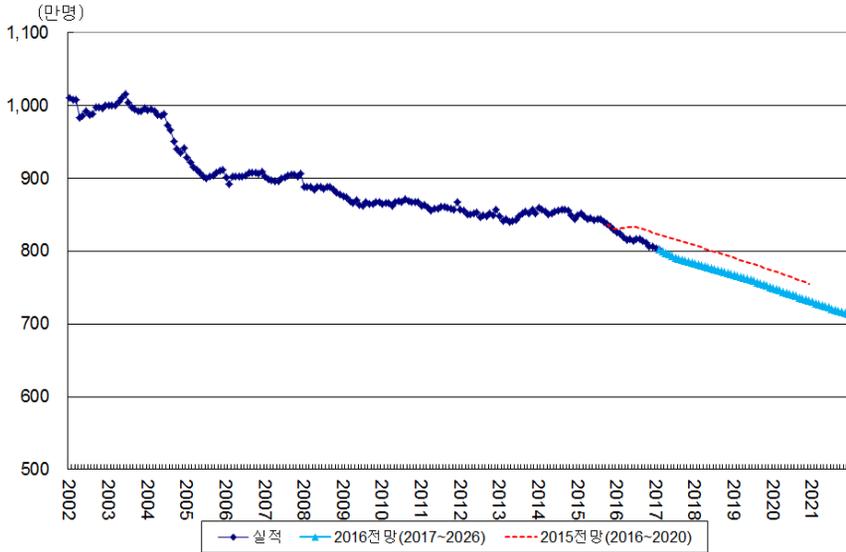
[그림 II-8] 총 가입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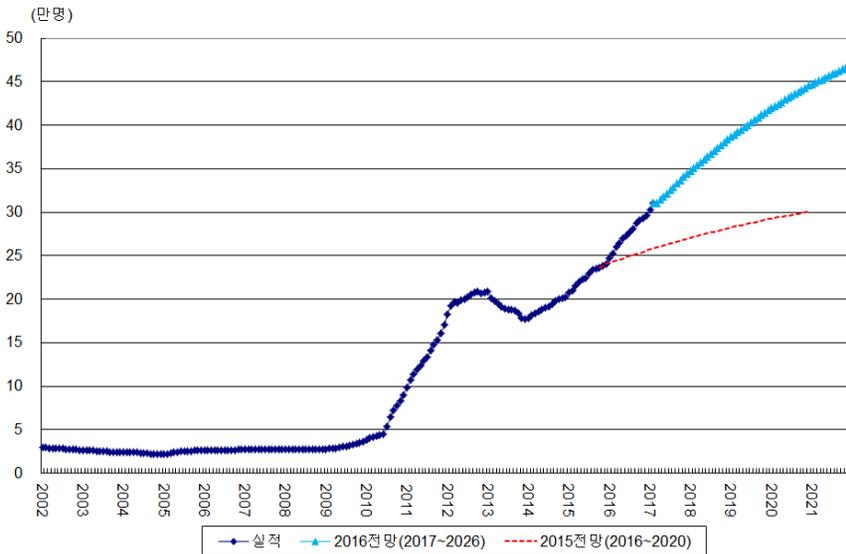
[그림 II-9] 사업장 가입자 전망



[그림 II-10] 지역가입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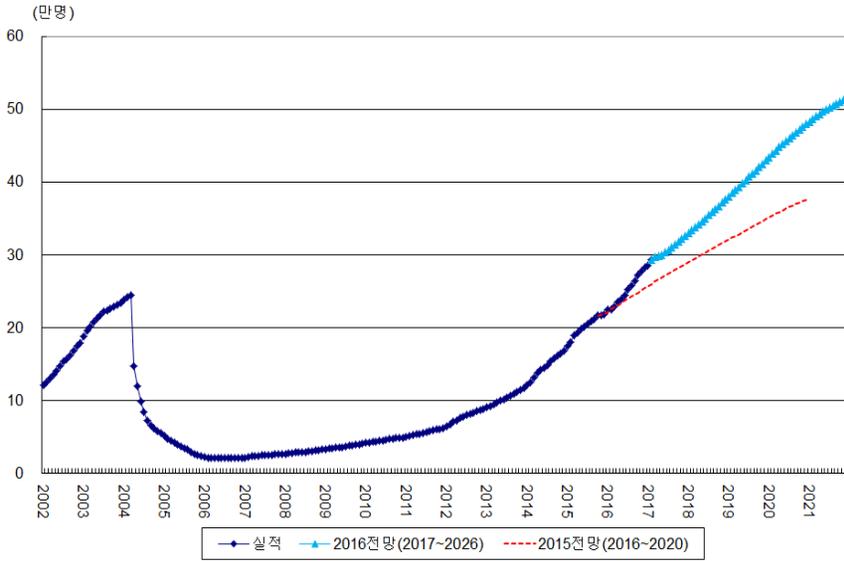


[그림 II-11] 임의가입자 전망



## 26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그림 II-12] 임의계속가입자 전망



### Ⅲ. 연금보험료 수입

#### 1. 평균소득월액

##### 가.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평균소득월액은 2003년 이전까지는 전산업(全産業) 평균 임금과 비교하여 다소 낮으나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그 이후에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5년에 변경된 표준소득월액<sup>8)</sup> 등급표의 상한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2000년 이후로 평균소득월액과 평균임금과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2003년 이후에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의 영향이외에 사업장가입자의 범위가 5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균소득월액의 상승률도 평균임금의 상승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평균소득월액과 평균임금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균소득월액의 상승률이 평균임금의 상승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sup>9)</sup>. 또한 2009년도부터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총액신고에 의한 새로운 소득의 적용시기가 매년 4월에서 매년 7월로 변경<sup>10)</sup>됨에 따라 2009년의 경우 전산업 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감소하였다<sup>11)</sup>. 그러나 2010년 7월에

---

8) 2007.7 연금법의 개정으로 명칭이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됨

9)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전산업 평균임금과의 격차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은 76% 수준에서 그 하락 추이가 상당히 완화되는 경향을 보임

10) 이전까지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은 매년 초에 각 사업장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을 제출받아 4월에 새로운 소득을 적용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근로소득자의 전년도 소득을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하여 7월부터 새로운 소득을 적용

11)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매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다시 새로운 소득이

## 28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는 새로운 소득이 적용됨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다시 상승하였고, 특히 이때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과 상한이 각각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매년 전년도 A 값 상승률에 따라 변동되어, 2016년 7월부터는 하한은 28만원, 상한은 434만원으로 조정되었다.

〈표 III-1〉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평균임금

(단위 : 원)

연도	사업장가입자 <sup>1)</sup>		전산업 <sup>2)</sup>		비율 C=A/B
	평균소득월액(원) (A)	상승률	평균임금(원) (B)	상승률	
2000	1,514,876	5.22%	1,543,600	8.19%	98.14%
2001	1,642,459	8.42%	1,667,542	8.03%	98.50%
2002	1,713,843	4.35%	1,752,382	5.09%	97.80%
2003	1,819,157	6.14%	1,947,774	11.15%	93.40%
2004	1,864,726	2.50%	2,127,401	9.22%	87.65%
2005	1,904,703	2.14%	2,254,889	5.99%	84.47%
2006	1,938,405	1.77%	2,404,385	6.63%	80.62%
2007	1,980,335	2.16%	2,541,886	5.72%	77.91%
2008	2,027,280	2.37%	2,683,203	5.56%	75.55%
2009	2,025,293	-0.10%	2,568,838	-4.26%	78.84%
2010	2,068,187	2.12%	2,636,260	2.62%	78.45%
2011	2,142,997	3.62%	2,816,188	6.83%	76.10%
2012	2,220,067	3.60%	2,843,545	0.97%	78.07%
2013	2,289,010	3.11%	2,995,471	5.34%	76.42%
2014	2,358,197	3.02%	3,110,992	3.86%	75.80%
2015	2,433,148	3.18%	3,189,995	2.54%	76.27%
2016	2,495,615	2.57%	3,300,091	3.45%	75.62%

주 : 1) 매년 4월기준(단, 2009년 이후는 7월 기준)

2) 전산업 평균임금은 2009년 이전은 10인 이상, 그 이후는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이며 평균소득월액과의 비교를 위하여 1년 전 평균임금을 나타냄

자료 : 고용노동부 home page 및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적용되는 시점에서 상승하게 됨.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이 조정된 2010년 7월 이후 사업장 가입자의 등급별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III-2>는 2010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업장가입자중 소득하한에 속한 가입자의 비중과 상한에 속한 가입자의 비중을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최저소득자, 즉, 소득하한에 있는 가입자의 비중이 2010년 6월에는 0.3%에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이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조정된 2010년 7월에는 0.38%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 7월에는 하한 소득이 23만원으로 이전과 변함이 없음에 따라 0.30% 수준이 유지되었고, 2012년 7월에는 하한 소득이 24만원으로 변경되고 가입자의 비중은 0.33%로 증가하였다. 2013년 7월에는 하한 소득이 25만원으로 증가되고 가입자의 비중은 0.34%로 증가하였고, 2014년 7월에는 하한 소득이 26만원으로 증가되고 가입자의 비중도 0.37%로 증가하였다. 2015년 7월에는 하한 소득이 27만원으로 증가되었으나 하한 소득자의 비중은 0.36%로 감소하였다. 2016년 7월에는 하한 소득이 28만원으로 증가되었고 하한 소득자의 비중은 0.41%로 증가하였다.

상한 소득에 속한 가입자의 비중도 소득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2010년 7월에 상한 소득이 368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상한에 속한 가입자의 비중은 17.86%로 나타났다. 2011년 7월에는 상한 소득이 375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한에 속한 가입자의 비중은 16.79%로 감소하였다. 2012년 7월에는 상한 소득이 389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상한에 속한 가입자의 비중은 18.18%로 증가하였다. 2015년 7월에 상한 소득은 421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상한에 속한 가입자의 비중은 18.56%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감소하였다. 최근 2016년 7월에 상한 소득은 434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상한에 속한 가입자의 비중은 18.31%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감소하였다.

30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표 Ⅲ-2〉 월별 상·하한 소득자 비중의 변화

(단위 : %, 단 ( )은 %p)

연	월	하한 소득자			상한 소득자		
		비중	비중의 변동	평균	비중	비중의 변동	평균
'10	6	0.3030	-	-	17.4937	-	-
	7	0.3815	-	-	17.8648	-	-
	8	0.3801	99.63		17.7924	99.59	
	9	0.3915	102.99		17.6378	99.13	
	10	0.3940	100.66		17.4656	99.02	
	11	0.3706	94.04		17.4660	100.00	
	12	0.3647	98.42		17.4779	100.07	
'11	1	0.3588	98.39		17.3946	99.52	
	2	0.3592	100.09		17.2597	99.22	
	3	0.3650	101.62		17.0678	98.89	
	4	0.3723	102.00		16.8803	98.90	
	5	0.3676	98.75		16.7897	99.46	
	6	0.2254	61.31	99.66	16.7858	99.98	99.44
	7	0.3019	133.92	(-0.07)	18.9300	112.77	(2.14)
	8	0.2953	97.83		18.8352	99.50	
	9	0.2944	99.69		18.7431	99.51	
	10	0.3070	104.28		18.5969	99.22	
	11	0.2732	88.97		18.5867	99.95	
	12	0.2665	97.58		18.5445	99.77	
'12	1	0.2550	95.67		18.1055	97.63	
	2	0.2512	98.51		17.9626	99.21	
	3	0.2530	100.71		17.8122	99.16	
	4	0.2517	99.48		17.6169	98.90	
	5	0.2457	97.64		17.5204	99.45	
	6	0.2380	96.85	97.93	17.5060	99.92	99.29
	7	0.3299	138.63	(0.09)	18.1845	103.88	(0.68)
	8	0.3237	98.12		18.1029	99.55	
	9	0.3243	100.19		18.0041	99.45	
	10	0.3247	100.11		17.8806	99.31	
	11	0.2947	90.75		18.1000	101.23	
	12	0.2833	96.14		18.1137	100.08	

〈표 Ⅲ-2〉 월별 상·하한 소득자 비중의 변화-계속

(단위 : %, 단 ( )은 %p)

연	월	하한 소득자			상한 소득자		
		비중	비중의 변동	평균	비중	비중의 변동	평균
'13	1	0.2716	95.89		18.0804	99.82	
	2	0.2671	98.35		17.9710	99.40	
	3	0.2688	100.63		17.8309	99.22	
	4	0.2662	99.01		17.6848	99.18	
	5	0.2588	97.25		17.5913	99.47	
	6	0.2512	97.03	97.59	17.5495	99.76	99.68
	7	0.3420	136.15	(0.09)	18.7765	106.99	(1.23)
	8	0.3345	97.81		18.6954	99.57	
	9	0.3348	100.11		18.6210	99.60	
	10	0.3307	98.77		18.4347	99.00	99.39
	11	0.3017	91.23		18.4895	100.30	
	12	0.2921	96.82		18.4581	99.83	
'14	1	0.2822	96.61		18.4380	99.89	
	2	0.2779	98.48		18.2907	99.20	
	3	0.2781	100.07		18.1961	99.48	
	4	0.2773	99.71		17.9965	98.90	
	5	0.2716	97.94		17.9098	99.52	
	6	0.2621	96.50	97.64	17.8644	99.75	99.55
	7	0.3702	141.24	(0.11)	18.8010	105.24	(0.94)
	8	0.3620	97.78		18.7035	99.48	
	9	0.3581	98.92		18.6069	99.48	
	10	0.3661	102.23		18.4364	99.08	-
	11	0.3362	91.33		18.4670	100.17	
	12	0.3088	91.83		18.4008	99.64	
'15	1	0.2960	95.87		18.3567	99.76	
	2	0.2882	97.34		18.2210	99.26	
	3	0.2864	99.38		18.1226	99.46	
	4	0.2857	99.76		17.9976	99.31	
	5	0.2818	98.64		17.8957	99.43	
	6	0.2728	96.82	97.31	17.8232	99.59	99.52
	7	0.3637	133.31	(0.09)	18.5628	104.15	(0.74)
	8	0.3559	97.87		18.4520	99.40	
	9	0.3529	99.14		18.3174	99.27	
	10	0.3485	98.77		18.1179	98.91	
	11	0.3072	88.15		18.1785	100.33	
	12	0.2991	97.35		18.0481	99.28	

〈표 Ⅲ-2〉 월별 상·하한 소득자 비중의 변화-계속

(단위 : %, 단 ( )은 %p)

연	월	하한 소득자			상한 소득자		
		비중	비중의 변동	평균	비중	비중의 변동	평균
'16	1	0.2868	95.88		17.9962	99.71	
	2	0.2819	98.30		17.8394	99.13	
	3	0.2821	100.06		17.6946	99.19	
	4	0.2813	99.74		17.6158	99.55	
	5	0.2766	98.32		17.4839	99.25	
	6	0.2690	97.24	97.35	17.3961	99.50	99.41
	7	0.4091	152.10	(0.14)	18.3149	105.28	(0.92)
	8	0.4017	98.19		18.2076	99.41	
	9	0.4010	99.83		18.1571	99.72	
	10	0.3989	99.46		17.9839	99.05	
	11	0.3679	92.24		18.0346	100.28	
	12	0.3503	95.21		18.0324	99.99	

주 : 평균에 제시된 수치는 매월 비중의 변동의 전년도 7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의 평균이며, ( )안은 6월과 새로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7월의 비중의 변화이며 2011년은 5월과의 차이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이와 같은 실적을 근거로 향후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우선 새로운 소득 기준, 즉, 변경된 하한과 상한이 적용되는 매년 7월에 소득 하한에 속한 가입자의 비중과 상한에 속한 가입자의 비중을 설정하여야 하며, 7월 이후 이듬해 6월까지 하한과 상한에 속한 자들의 속한 비중이 어떻게 변하여 가는지 를 설정하여야 한다.

우선 매월 하한 소득자 비중의 월별 변동과 상한 소득자 비중의 월별 변동은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매월 변동률의 평균인 97.56%와 99.49%를 각각 적용하였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과 상한이 변화 하는 매년 7월에 적용할 하한 소득자 및 상한 소득자의 비중도 최근 5년간 변동폭의 평균을 적용하여 하한 소득자 비중의 변동폭은 0.10%p,

상한 소득자 비중의 변동폭은 0.90%p를 각각 적용하였다. 따라서 7월을 제외한 매월 상·하한 소득자의 비중은 전월의 비중에 매월 변동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7월의 비중은 전월의 비중에 변동폭을 더하여 산출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매월 하한 가입자의 비중과 상한 가입자의 비중이 설정되면 매년 7월에 새로운 소득기준에 의한 소득을 반영할 수 있다. 당해 연도 7월의 평균소득의 산출 방법은 하한 소득에 하한 소득 가입자의 비중을 적용하고, 상한 소득에 상한 소득에 속한 가입자의 비중을 적용한다. 소득이 하한 보다 크고 상한 보다 작은 가입자의 소득은 전년도 7월에 동일 소득 계층에 속한 가입자, 즉, 전년도 7월을 기준으로 소득이 하한보다 크고 상한보다 작은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매년 7월에 새로운 소득이 적용되는 사업장 가입자는 전년도에 3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 가입자가 대상이므로 금년도 7월의 사업장 가입자 중 일부는 전년도 소득이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따라서 앞서 새로운 상·하한 소득과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한 평균소득과 전년도 7월의 평균소득을 일정 조건<sup>12)</sup>에 따라 가중평균하면 금년도 7월의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산출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새로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매년 7월에 상승하고 이듬해 6월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중기 전망에서도 최근 실적을 기준으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였다.

---

12) 2016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는 사업장 가입자는 9,999,478명으로 이는 2015년 말 현재 사업장 가입자 12,805,582명의 약 78%로 산출되어 사업장 가입자중 22%(=1-0.78)는 전년도 소득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34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표 III-3〉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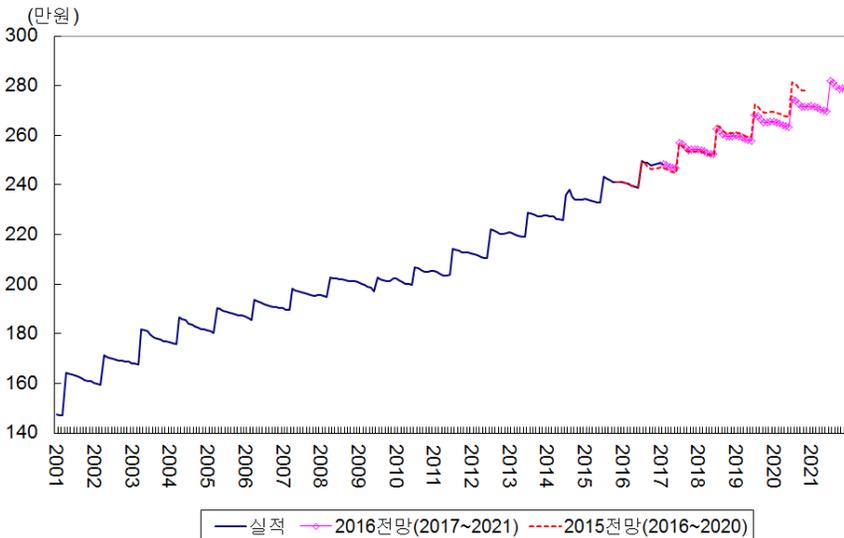
(단위 : 원)

연도	사업장가입자		전산업(B)		금액비율 (C=A/B)
	평균소득월액(A)	상승률	평균임금(B)	상승률	
2016	2,495,615	2.57%	3,300,091	3.45%	75.62%
2017	2,569,771	2.97%	3,424,726	3.78%	75.04%
2018	2,624,543	2.13%	3,513,559	2.59%	74.70%
2019	2,682,544	2.21%	3,623,265	3.12%	74.04%
2020	2,745,766	2.36%	3,750,417	3.51%	73.21%
2021	2,818,982	2.67%	3,900,666	4.01%	72.27%

주 : 1) 매년 7월 기준

- 2) 전산업 평균임금은 평균소득과의 비교를 위하여 1년 전 평균임금을 표시함에 따라 2017년 평균임금은 2016년 평균임금이며 2018년 이후 임금상승률은 거시경제변수 전망에서 제시된 값을 사용

[그림 III-1] 사업장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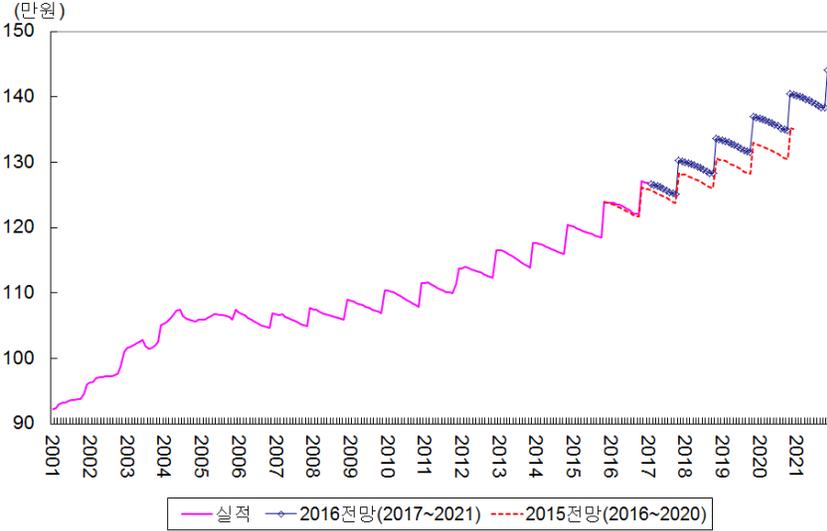


## 나. 지역가입자

매년 1회 소득이 신고 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매월 일정한 증감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지역가입자들은 매월 0.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계별 사업장 확대추진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7월과 2004년 7월에 일시적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이들의 영향을 제거하면 월평균증가율이 0.34% 수준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최근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추이는 이전과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최근 들어 연도 말에 일시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관련한 자료를 12월에 입수하여 국민연금의 신고소득과 괴리가 발생하는 가입자들의 소득을 조정하는 업무형태에 기인한다. 하지만 2014년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소득관련 자료 입수 시기가 12월에서 11월로 한 달 당겨짐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추이는 11월에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그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이를 반영하여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1월에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하락하는 형태를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1월~10월 및 12월의 경우는 최근 3년간의 지역가입자의 월별평균증감률을 적용하였고 매년 11월의 증가율은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3개년의 평균인 4.17%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III-2]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이상과 같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전망하면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약 2.5% 수준으로 상승하여 2021년 말에는 279만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2021년 말에 약 144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과 상한은 2016년 7월부터는 28만원, 434만원으로, 2021년 7월 이후에는 각각 33만원, 499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한의 증가 규모에 비하여 하한의 증가 규모가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은 A값 상승률로 동일한 증가율을 적용하였지만 소득수준의 차이로 증가폭이 미미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Ⅲ-4〉 평균소득월액 전망

(단위: 원)

구분	전체	사업장	지역
2016.12	2,227,788	2,483,717	1,268,783
2017.12	2,264,697	2,541,756	1,301,005
2018.12	2,316,559	2,595,932	1,334,055
2019.12	2,371,554	2,653,300	1,367,944
2020.12	2,431,264	2,715,833	1,402,695
2021.12	2,499,424	2,788,250	1,438,328

주 : 2016.12까지는 실적임

〈표 Ⅲ-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전망

(단위 : 원)

적용기간	최저기준소득월액	최고기준소득월액
2010.7~2011.6	230,000	3,680,000
2011.7~2012.6	230,000	3,750,000
2012.7~2013.6	240,000	3,890,000
2013.7~2014.6	250,000	3,980,000
2014.7~2015.6	260,000	4,080,000
2015.7~2016.6	270,000	4,210,000
2016.7~2017.6	280,000	4,340,000
2017.7~2018.6	290,000	4,490,000
2018.7~2019.6	300,000	4,640,000
2019.7~2020.6	310,000	4,760,000
2020.7~2021.6	320,000	4,870,000
2021.7~2022.6	330,000	4,990,000

주 : 적용기간 2017.6까지는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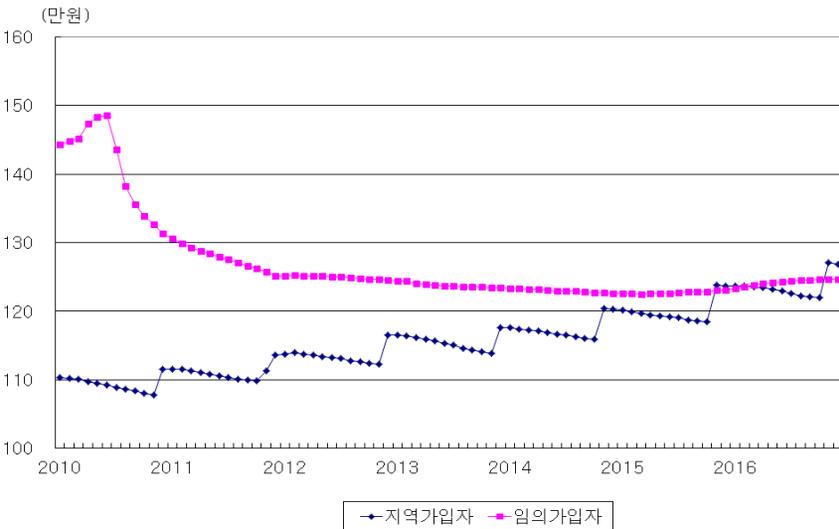
#### 다.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의 소득은 최소한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2015년 적용 중위소득 99만원)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가 임의가입

자가 된 경우에는 중위소득 이하로도 소득을 적용할 수 있다. 2010년 중반이후 임의가입자의 평균소득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의가입자의 소득이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되므로 중기전망에서 임의가입자의 소득은 지역가입자 소득의 일정 수준으로 가정하였으며, 임의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의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임의가입자의 소득 수준은 2016년 실적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00.5%로 산정하였다<sup>13)</sup>.

[그림 Ⅲ-3]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의 평균소득 비교



13) 임의가입자의 소득을 지역가입자의 일정수준으로 가정한 것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소득도 상승하게 되며 이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의 변동과 연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라.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가입기간을 충족하기 위하여 60세 이후에도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2004년 4월을 기준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999년도에 도시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가입자가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4년 4월 이전까지는 임의계속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들이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임의계속가입자가 감소하였고 임의계속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보다 다소 낮아 졌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2004년도에 연금을 지급하게 된 임의계속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갖는 계층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이 지급자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이 낮아졌으나 최근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하락하면서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이 지역가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됨에 따라 향후 이러한 추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임의계속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105.27% (2016년 평균)로 가정하였다.

## 40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표 Ⅲ-6〉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비교

(단위 : 천원)

월	2014년			2015년			2016년		
	지역 (A)	임의 계속 (B)	비율 (B/A)	지역 (A)	임의 계속 (B)	비율 (B/A)	지역 (A)	임의 계속 (B)	비율 (B/A)
평균	1,174	1,225	104.38%	1,200	1,270	105.84%	1,236	1,302	105.27%
1	1,176	1,203	102.3%	1,202	1,252	104.2%	1,237	1,284	103.8%
2	1,174	1,205	102.6%	1,199	1,255	104.6%	1,237	1,283	103.7%
3	1,173	1,208	103.0%	1,197	1,259	105.2%	1,235	1,284	104.0%
4	1,171	1,211	103.4%	1,195	1,262	105.7%	1,234	1,289	104.4%
5	1,170	1,215	103.8%	1,193	1,264	106.0%	1,233	1,291	104.8%
6	1,167	1,218	104.4%	1,192	1,266	106.3%	1,229	1,294	105.3%
7	1,165	1,231	105.6%	1,191	1,278	107.3%	1,226	1,307	106.6%
8	1,162	1,235	106.2%	1,187	1,279	107.7%	1,223	1,309	107.1%
9	1,161	1,239	106.7%	1,186	1,279	107.9%	1,221	1,312	107.5%
10	1,160	1,241	107.0%	1,185	1,281	108.1%	1,220	1,316	107.8%
11	1,205	1,249	103.7%	1,239	1,285	103.7%	1,271	1,322	104.0%
12	1,202	1,249	103.9%	1,237	1,283	103.7%	1,269	1,325	104.5%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2. 징수율 및 납부예외자비율 가정 등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m월분의 연금보험료를 m+1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금제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계모형에서는 m+1월의 연금보험료는 m월의 가입자 및 평균소득월액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즉, m+1월의 연금보험료 수입은 m월의 가입자, m월의 평균소득월액, m월의 연금보험료율에 m월의 징수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연금보험료의 전망을 위하여 가입자 및 가입자들의 평균소득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징수율과 납부예외자비율이다.

징수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각 가입종별 징수율은 징수권에 대한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고지 이후 3년 이내의 누적징수율만을 고려한다. 국민

연금 보험료의 징수율은 고지 후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율 산정 시 고지금액에서 제외된다. 통계연보 등을 살펴보면 과거 지역가입자에 대한 징수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징수권이 고지금액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인 고지 후 3년까지의 누적징수율을 사용하게 되면 소멸시효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장가입자의 징수율은 전 기간에 걸쳐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독촉분에 대한 징수액이 반영되지 않은 최근 실적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독촉분이 상당부분 반영된 과거 시기의 징수율이 최근 징수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며, 이는 최근 3년과 그 이전 연도의 징수율의 차이로 확인할 수 있다.

〈표 III-7〉 월별 징수율 현황

(단위 : %, 2016년 12월 기준)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장	99.28	99.27	99.26	99.20	98.65
지 역	98.07	94.94	68.62	67.49	67.84

주 : 자료의 산출시점이 2016년 12월 기준이므로 2013년도 12월분까지의 징수권은 대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까지 누적징수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2014년도 1월분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16년도 12월 분은 산출시점에서 남기내 징수율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출에서 제외함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징수율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전 기간에 걸쳐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2013년 12월 이후 평균 누적징수율은 99.05%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사업장가입자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면 68.02%

## 4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가 산정된다. 사업장 가입자의 범위가 확대된 이후에도 가입자의 징수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징수율은 위와 같이 산정된 최근 징수율을 적용하였다<sup>14)</sup>.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전망에 적용할 적절한 징수율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2014년도 정기고지금액과 수납금액의 비율의 평균인 수납률<sup>15)</sup>을 징수율로 설정하였으며 이때 임의가입자의 징수율은 76.42%, 임의계속가입자의 징수율은 66.62%로 나타났다<sup>16)</sup>.

〈표 III-8〉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수납률(2014년)

구분	수납액 (억원)	가입자 (명)	소득월액 (원)	보험료율	수납률
임의	1,922	189,255	1,230,713	9.00%	76.42%
임의계속	1,253	142,336	1,223,028	9.00%	66.62%

주 : 1) 수납액은 연간 총액이며 누적금액의 차액임. 가입자 및 소득월액은 연평균을 의미

2) 표에서 제시된 수납률은 중기전망에서 연금보험료 수입을 산출하기 위한 개념적 정의이며, 실제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의 징수율은 수납률과는 다른 개념임. 또한 제시된 수납률에는 연금보험료 미납에 의한 직권상실자 등에 대한 고지제외 등의 개념이 고려되지 않는 것임에 따라 해석상 주의가 필요함

자료 : 국민연금통계연보(2014) 및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한편 가입자 중에서 일정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함으로써 납부예외자가 되고 이들은 가입자의 자격은 유

14) 누적징수율은 고지 후 납부마감 이후에도 징수된 고지금액에 대한 징수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고지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미징수분은 고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누적징수율이 100%에 이르게 됨. 따라서 추계에서는 소멸시효완성 이전까지 누적징수율을 사용함

15) 수납률이란 당해연도 수납액을 당해연도 고지금액으로 나눈 것으로서 고지금액에 대한 징수액을 고지금액으로 나눈 징수율과 정의상 차이가 있으며 수납률의 경우에는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함

16) 2015년도 통계연보에는 통계개편으로 인하여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수납금액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부득이 2014년도 기준 수납률을 적용

지되지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비율은 도시자영자 확대시점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소득신고 유도로 2003년도에 40% 초반대까지 하락하였으나 2004년도 국민연금 안티사태<sup>17)</sup> 이후 50% 이상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도에는 그 증가 추이가 완화되었으나 2006년도에 다시 증가하여 2006년도 말에 54.3%를 나타내었다. 납부예외자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던 배경에는 2006년도 초에 실시된 사업장확대사업의 영향과 저소득층에 대한 가입유도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8년도 1월에는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비율이 잠시 하락하였으나 2월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1월에 납부예외자비율이 하락한 이유는 2007.7월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납부예외 사유 중 행방불명에 의한 납부예외자가 1년 미만 행방불명으로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행방불명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들은 적용제외로 가입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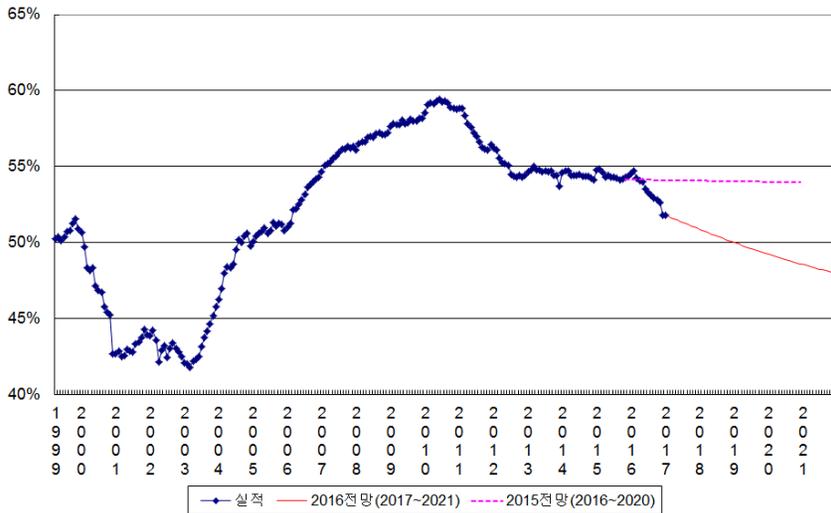
2007년도 이후 경제위기로 인하여 사업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고 이들은 대부분 납부예외자로 구분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09년에도 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비율은 이전 증가추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더욱이 2010년 하반기부터 납부예외자비율의 급격한 하락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2012년 중반이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55%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완만하게나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6년 들어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 비율이 다시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52% 이하 수준을 보이고 있다.

17) 2004년도에 중복급여, 유소득자의 연금 감액 등 수급권 제한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른바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내용이 사이버 상에 게재된 것을 계기로 국민연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남.

#### 44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 비율이 다시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최근 납부예외자 비율의 연간 감소 추이를 반영하되 그 감소폭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납부예외자 비율을 적용하였다. 즉, 향후 납부예외자 비율의 감소폭은 2015년과 2016년의 납부예외자 비율의 평균의 차이인  $-0.92\%p$ 를 적용하되 급속한 납부예외자비율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차이는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에 말에는 50.95%, 2018년 말에는 50.08% 수준으로 감소하여 2021년 말에는 48.02%로 전망되었다.

[그림 Ⅲ-4] 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 비율 현황 및 전망



마지막으로 최근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연금보험료 반납금 및 추후납부에 의한 연금보험료 수입을 금년 중기전망부터 반영하였다. 연금보험료 반납금이란 과거 반환일시금을 수급 받은 자가 재가입하게 되면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과거 수급한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회복하는 제도이며, 추후납부에 의한

연금보험료는 과거 납부예외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새롭게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증가시키는 제도이며 최근에는 납부예외기간뿐만 아니라 적용제외기간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2011년 이후 가입종별 연금보험료 수입과 반납 및 추납에 의한 연금보험료 수입의 추이를 보면 가입종별 연금보험료 수입 대비 반·추납에 의한 연금보험료 수입이 최근 약 1.74%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된 중기전망에서 연금보험료의 산출은 주로 가입종별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수입에 국한되었으나, 반납 및 추납에 의한 연금보험료 수입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의 보험료 수입은 가입종별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수입의 1.74%를 적용하였다.

〈표 III-9〉 연금보험료 수납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총계	가입종별 연금보험료 수입					반납 및 추납 연금보험료			B/A
		소계 (A)	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	소계 (B)	반납	추납	
2011	304,328	299,603	260,372	37,162	1,768	302	4,725	3,402	1,323	1.58%
2012	301,528	294,902	256,819	34,974	2,724	385	6,626	4,498	2,128	2.25%
2013	307,328	303,937	275,226	25,820	2,462	430	3,391	2,360	1,031	1.12%
2014	342,100	337,618	292,750	41,357	2,803	708	4,482	3,060	1,423	1.33%
2015	355,636	349,561	312,271	33,621	2,800	869	6,075	3,844	2,231	1.74%

주 : 통계연보에 제시된 누적수납현황을 재정리하여 연간 수납액으로 저자가 환산한 금액임

자료 : 국민연금통계연보, 각연도

### 3.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

이상의 가정들을 적용하여 향후 연금보험료 수입을 전망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40.6조원, 42.0조원, 43.3조원, 44.4조원, 그리고 45.7조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평균소득월액과

## 46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가입자의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연금보험료 수입의 증가가 전망되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평균소득월액의 증가 및 납부예외자 비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감소로 인하여 연금보험료 수입의 증가율이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높지 않다. 전체 연금보험료 수입의 증가율은 2018년에 3.45%가 예상되나 2019년 이후에는 가입자의 감소로 인하여 2% 후반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

〈표 III-10〉 보험료수입 전망

(단위: 백만원)

연도	총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	반추납
2017	40,571,606	35,662,149	3,592,303	333,770	289,510	693,873
2018	41,969,501 (3.45%)	36,862,207 (3.37%)	3,659,472 (1.87%)	387,880 (16.21%)	342,163 (18.19%)	717,780 (3.45%)
2019	43,253,496 (3.06%)	37,935,987 (2.91%)	3,735,418 (2.08%)	439,254 (13.24%)	403,098 (17.81%)	739,739 (3.06%)
2020	44,430,074 (2.72%)	38,923,670 (2.60%)	3,790,796 (1.48%)	487,489 (10.98%)	468,257 (16.16%)	759,862 (2.72%)
2021	45,667,898 (2.79%)	39,991,707 (2.74%)	3,837,327 (1.23%)	531,546 (9.04%)	526,286 (12.39%)	781,031 (2.79%)

주 : ( )은 연간 증감률

〈표 III-11〉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연도	보험료 (백만원)	가입자 (천명)	평균소득 (천원)	보험료율 (%)	징수율 (%)
2017	35,662,149	13,283	2,510	9.00	99.05
2018	36,862,207	13,434	2,565	9.00	99.05
2019	37,935,987	13,533	2,620	9.00	99.05
2020	38,923,670	13,577	2,680	9.00	99.05
2021	39,991,707	13,611	2,747	9.00	99.05

〈표 III-1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연도	보험료 (백만원)	가입자 (천명)	평균소득 (천원)	보험료율 (%)	소득신고자비율 (%)	징수율 (%)
2017	3,592,303	7,965	1,264	9.00	48.57	68.02
2018	3,659,472	7,772	1,296	9.00	49.46	68.02
2019	3,735,418	7,609	1,329	9.00	50.29	68.02
2020	3,790,796	7,422	1,363	9.00	51.02	68.02
2021	3,837,327	7,235	1,397	9.00	51.67	68.02

〈표 III-13〉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연도	보험료 (백만원)	가입자 (천명)	평균소득 (천원)	보험료율 (%)	징수율 (%)
2017	333,770	320	1,268	9.00	76.42
2018	387,880	362	1,303	9.00	76.42
2019	439,254	399	1,336	9.00	76.42
2020	487,489	430	1,370	9.00	76.42
2021	531,546	456	1,404	9.00	76.42

〈표 III-14〉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연도	보험료 (백만원)	가입자 (천명)	평균소득 (천원)	보험료율 (%)	징수율 (%)
2017	289,510	303	1,330	9.00	66.62
2018	342,163	349	1,364	9.00	66.62
2019	403,098	400	1,399	9.00	66.62
2020	468,257	454	1,435	9.00	66.62
2021	526,286	497	1,471	9.00	66.62

〈표 III-15〉 지역,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연도	보험료 (백만원)	가입자 (천명)	평균소득 (천원)	보험료율 (%)	징수율 (%)
2017	4,215,584	4,492	1,269	9.00	68.50
2018	4,389,515	4,555	1,302	9.00	68.55
2019	4,577,770	4,626	1,336	9.00	68.61
2020	4,746,542	4,671	1,370	9.00	68.67
2021	4,895,159	4,691	1,406	9.00	68.73

주: 가입자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소득신고자를 의미함.



## IV. 급여지출 및 기타지출

### 1. 급여지급현황 및 전망

#### 가. 급여지급현황

〈표 IV-1〉은 도시지역으로 확대된 1999년 이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1999년까지는 반환일시금이 전체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급여의 주종을 이루었던 반환일시금은 자격상실 후 1년 경과로 인한 지급이 1998년 말 법 개정으로 1999년부터 제한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매년 그 수가 크게 감소하여 총 급여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993년부터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노령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을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차지하고 있다. 2000년도에는 1995년도에 확대 적용된 농어촌지역가입자 및 특례적용지역가입자의 영향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또한 2004년도에는 1999년 도시지역 확대 시 특례 적용된 자들이 노령연금 수급자로 발생되어 이전연도에 비해서 증가되었다. 그리고 1999년도에는 조기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유족연금과 장애연금도 도시지역가입자의 영향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부터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되었고, 2008년부터는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도 발생되어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0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표 IV-1〉 급여지급현황(2000~2016)

(단위 : 천, 억원)

연도		총계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00	수급자	927,545	482,042	114,276	24,084	304,127	3,016
	급여액	16,070	6,514	2,031	859	6,624	43
'01	수급자	948,164	602,197	140,915	29,925	170,542	4,585
	급여액	15,693	9,736	2,439	1,019	2,435	64
'02	수급자	1,052,327	717,488	166,266	35,070	129,239	4,264
	급여액	19,153	12,547	2,940	1,203	2,387	76
'03	수급자	1,169,441	819,800	192,887	42,580	108,740	5,434
	급여액	23,284	15,333	3,527	1,539	2,782	103
'04	수급자	1,533,059	1,156,098	220,725	50,869	99,750	5,617
	급여액	29,140	19,875	4,179	1,929	3,032	126
'05	수급자	1,756,854	1,348,806	247,588	58,614	96,078	5,768
	급여액	35,849	25,315	4,846	2,296	3,249	143
'06	수급자	1,985,502	1,517,649	279,358	66,660	115,394	6,441
	급여액	43,602	31,032	5,706	2,698	4,007	160
'07	수급자	2,244,777	1,731,560	311,868	72,258	121,200	7,591
	급여액	51,826	38,577	6,454	2,942	3,684	169
'08	수급자	2,517,579	1,949,867	344,593	77,068	137,654	8,397
	급여액	61,808	47,655	7,314	3,160	3,480	198
'09	수급자	2,770,344	2,149,168	378,927	78,371	154,119	9,759
	급여액	74,719	58,148	8,446	3,280	4,605	240
'10	수급자	2,975,336	2,330,128	414,241	79,727	141,347	9,893
	급여액	86,359	68,619	9,492	3,336	4,655	256
'11	수급자	3,166,938	2,489,614	449,735	79,375	136,628	11,631
	급여액	98,193	79,052	10,623	3,475	4,751	293
'12	수급자	3,499,522	2,748,455	485,822	78,796	175,716	10,733
	급여액	115,508	93,271	11,957	3,491	6,480	308
'13	수급자	3,633,770	2,840,660	524,992	78,034	179,440	10,644
	급여액	131,128	107,056	13,302	3,649	6,791	329
'14	수급자	3,748,130	2,947,422	563,996	78,038	146,353	12,321
	급여액	137,799	112,959	14,599	3,661	6,185	395
'15	수급자	4,028,671	3,151,349	605,151	78,285	179,937	13,949
	급여액	151,840	124,151	15,910	3,721	7,597	461
'16	수급자	4,362,254	3,412,350	647,445	78,074	207,751	16,634
	급여액	170,682	140,480	17,218	3,734	8,746	504

주 : 1) 연도말 누계기준임.

2) 장애연금은 장애일시금을 포함함.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특히 2012년도는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크게 증가되어 조기노령 및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2011년도에 비해서 약 10.4%가 증가되어 약 2,748천명이다. 이는 2011년도 말에 이루어진 국민연금법 부칙개정에 의해서, 2013년도에 이루어지는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방식이 '연도별 적용'에서 '출생코호트별 적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에 의하면, 일부 코호트는 이전의 연도별 상향방식에 비해서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급여유이 불리해짐에 따라 이를 인지한 대상자들의 조기수급 신청이 크게 늘었다. 2012년도의 조기노령연금 수급 신청자의 증가는 2013년도에도 영향을 주었다<sup>18)</sup>.

반면 2013년도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1세 증가함에 따라 수급연령에 도달한 출생코호트의 신규발생은 없으며<sup>19)</sup>, 청구지연이나 임의계속가입을 한 자 중에서 노령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자가 발생되어 이전연도에 비해서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수는 감소되어 약 41천명이 발생되었다. 하지만 수급연령이 늦추어진 영향으로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이전 연도인 2012년도보다 더 많은 약 85천명이 발생되어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의 신규수급자의 합은 약 127천명이며, 전체 수급자는 약 2,841천명이다.

2014년도는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이 이전연도에 비해서 줄어들고 또한 노령연금 신규수급자도 줄어들었는데, 이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각각 늘어난 조기노령연금의 신규수급자로 인한 영향이다. 조기노령 및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약 2,947천명으로 2013년도에 비해서 약 3.7% 증가되었다. 2015년도는 노령연금(조기노령 포함)신규수급자가 이

18) 2012년도 12월에 조기노령연금을 대거 신청한 자들이 2013년 1월부터 수급이 시작되어 2013년 조기노령수급자가 증가됨(2012년도와 2013년도 조기신규수급자는 각각 79,044명, 84,956명임).

19) 2012년도는 1952년생이 노령연금 수급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도는 1953년생이 수급을 시작하여야하나, 수급연령이 1세 증가되어 61세인 2014년도에 노령연금 수급을 시작함.

전연도인 2014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어 수급자의 규모가 증가되었다. 조기노령을 포함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3,151천명으로 이전 연도에 비해서 약 6.9% 증가하였다. 2016년도는 베이비부머 세대(55년~63년생)가 처음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로 발생되기 시작하여 노령연금 수급자 규모는 이전 연도보다 약 8.3%가 증가되었다.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총 수급자수는 약 4,362천명<sup>20)</sup>이며, 이들 중 연금 수급자는 4,135천명, 일시금은 약 227천명이 수급하였으며, 급여지출은 연금으로 약 16조 1,071억원, 일시금으로 약 9,611억원, 총 17조 682억원을 지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추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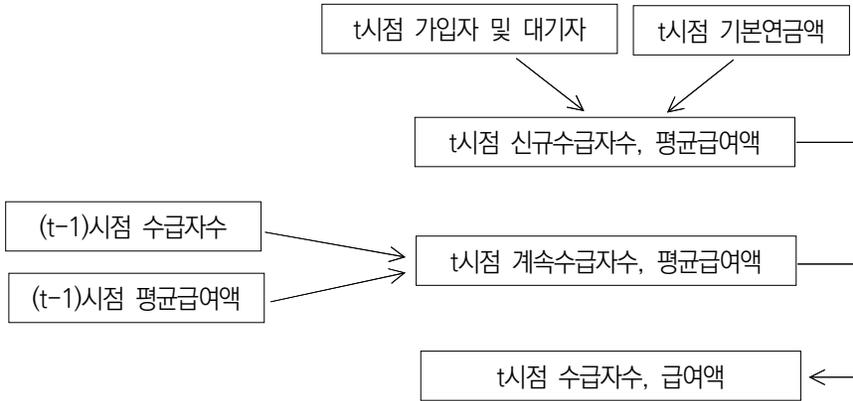
수급자수 및 급여액을 전망하는 방법은 급여종류별로 산출하는데 매월별로 신규수급자수와 계속수급자수를 구별하여 산출하고 또한 이들의 급여액을 각각 산출하여 더하여 주는 방법으로 한다. [그림 IV-1]은 추계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신규수급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별로 분류된 가입자수와 대기자수<sup>21)</sup>를 이용한다. 계속수급자는 전월의 전체 수급자 중에서 계속해서 수급하는 자들을 구한다. 급여액 산출은 수급자수와 이들의 평균급여액의 곱으로 하여 구분단위별로 산출하여 이를 모두 합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신규수급자의 급여액은 신규수급자수와 평균급여액을 곱하고, 계속수급자의 급여액은 계속수급자수와 이들의 평균급여액을 곱하여 모두 합산하여 준다. 여기서 구분단위는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을 의미한다. 신규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은 기본연금액을 이용하여 구하며 계속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은 전월의 전체 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이다.

20) 연도말 누계기준임. 즉 1개월이라도 수급한 자는 모두 산정

21) 현재 가입 중인 자는 아니나, 과거의 가입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급자는 아닌 자 즉, 가입자이었던 자를 의미함.

[그림 IV-1] 수급자수 및 급여액 산출 흐름도



수급자수와 급여액은 이러한 유량(flow)방식으로 산출되므로, 초기치를 필요로 한다. 2017~2021년의 수급자수 및 급여액을 전망하기 위해서 수급자수 및 평균급여액 등의 실적값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초기값<sup>22)</sup>을 설정하고, 2017년 1월부터 매월별로 전망해나가는 방법으로 하였다. 즉, 신규수급자수는 해당월에 수급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전체로 구하거나 필요한 수급률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계속수급자수는 전월의 수급자 중에서 탈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급하는 자를 구한다<sup>23)</sup>.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61세(조기노령연금은 57세~60세)이나, 2018년부터는 62세(조기노령연금은 58세~61세)이며, 이를 고려하였다.

급여액의 산출에 있어서 신규수급자는 급여산식에 의해서 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값(A값)과 자신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A값으로 재평가한 기준소득월액의 평균값(B값)을 이용하여 구한다. 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값(A값)은 소비자물가상승률<sup>24)</sup>과 가입자의

22) 급여종류별로 초기값을 설정함. 초기치는 2016년 12월 실적자료의 성별, 연령별, 가입기간별 수급자수와 이들의 평균급여액임.

23) 초기치인 2016년 12월의 수급자 중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2017년 1월의 계속수급자가 됨.

24) <요약표 1> 참조

## 54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기준소득월액 전망치인 <표 III-4>의 결과를 사용하여 산출하며, 결과는 <표 IV-2>에서와 같다.

현재 2017년도 신규수급자 급여액 산정에 적용하는 A값은 약 217.6만원이다. 2018년도 신규수급자 급여액 산정에 적용될 2017년도의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은 약 226.5만원, A값은 약 224.8만원이다. 계속수급자의 급여액은 전년도 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을 이용하며 매년 4월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인상하여 산출한다.

<표 IV-2> A값 전망

(단위 : 원)

연도	평균소득월액	A값	적용기간
2016 <sup>1)</sup>	2,227,788	2,176,483	2017.04~2018.03
2017	2,264,697	2,248,110	2018.04~2019.03
2018	2,316,559	2,307,222	2019.04~2020.03
2019	2,371,554	2,358,155	2020.04~2021.03
2020	2,431,264	2,418,557	2021.04~2022.03
2021	2,499,424	2,482,226	2022.04~2023.03

주 : 1) 2016년도 값은 실적임.

### 다. 추계결과

수급자 산출을 위한 초기치는 2016년 12월 실적값이다. <표 IV-3>에 의하면, 2016년도 12월의 월지급액으로 노령연금은 1조 2,312억원, 유족연금은 1,488억원, 장애연금 및 장애일시금은 316억원,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은 784억원을 각각 지급하여 1조 4,901억원이 지급되었다. 전체 급여지출액 중 노령연금은 82.6%, 유족연금은 10.0%, 장애연금(장애일시금 포함)은 2.1%,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은 5.3%를 각각 차지한다. 월지급액을 모두 합한 2016년도 총 급여액은 17조 682억원이다.

〈표 IV-3〉 수급자 및 급여액 현황(2016년)

(단위: 건, 억원)

구분	총 계	노령연금	유족 연금	장애 연금	장애일 시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16.12 <sup>1)</sup>	수급자	4,089,361	3,364,456	637,623	69,513	246	16,332	1,191
	급여액	14,901	12,312	1,488	281	35	744	40
‘16 <sup>2)</sup>	수급자	4,362,254	3,412,350	647,445	75,497	2,577	207,751	16,634
	급여액	170,682	140,480	17,218	3,373	360	8,746	504

주 : 1) 2016년 12월 당월지급 기준으로 월지급총액 실적임.

2) 2016년 값은 연간 누계값임. 즉 연금 수급자수는 연도말 누계기준이며 일시금은 연간 총 수급자수이며, 급여액은 연간총액임.

2017년 이후의 수급자수 및 급여액 전망결과<sup>25)</sup>는 〈표 IV-4〉와 같다. 2017년도 수급자수는 약 464만명, 총 급여액은 약 19조 4,031억원이며, 2018년도 수급자수는 약 478만명<sup>26)</sup>, 총 급여액은 약 21조 1,779 억원으로 전망된다. 2018년도의 수급자가 이전 연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되지 않은 것은 2018년도는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이 1세 상향되어 62 세로 되는 첫 해이므로, 이전 연도에 비해서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2016년도의 급여액(〈표 IV-1〉 참조)은 전년도에 비해서 12.4% 증가 되었다. 이전 연도인 2015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2% 증가하였는데, 2015년도의 급여액 연동 지수인 물가상승률은 1.3%, 2016년도는 0.7%가 적용되었으나, 2016년도의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증가로 급여

25)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내용 즉, 재직자노령연금 소득수준 별 감액, 부분연기연금 도입, 실업 크레딧 도입 등은 금년 중기재정전망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한 급여지출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26) 급여액은 월단위로 산출하므로 월단위 지급 기준의 수급자수와 이들의 1인당 급여액을 곱하여 산출함. 하지만 연간 수급자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누계기준’으로 하였는데 즉, 2018년도의 총 수급자수는 2017년도 12월에 지급한 수급자수와 2018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연간 발생자수를 더하는 방법으로 함.

액 증가가 좀 더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도는 2016년도에 비해서 13.7% 증가되고 2018년도는 좀 낮아져서 9.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액은 수급자수와 평균급여액을 곱하여 산출되므로 수급자수 증가와 평균급여액 인상이 동시에 작용하여 증가한다. 일시금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수 및 급여액은 매년 증가하지만, 2017년 이후 총 급여액은 10% 이상 증가하는데, 연령상향이 이루어지는 2018년도에는 10% 미만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IV-4〉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단위: 건, 억원)

연도	총계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애일시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2017	수급자	4,641,929	3,672,106	688,681	75,124	2,633	187,065	16,320
	급여액	194,031	161,222	19,017	3,462	353	9,463	514
2018	수급자	4,781,183	3,745,477	735,721	75,808	2,685	205,039	16,453
	급여액	211,779	176,201	20,944	3,508	367	10,224	535
2019	수급자	5,179,321	4,075,820	783,877	76,155	2,746	224,243	16,480
	급여액	234,271	195,569	23,031	3,587	382	11,143	559
2020	수급자	5,617,692	4,451,019	832,961	76,619	2,801	237,998	16,294
	급여액	269,692	227,855	25,241	3,674	397	11,953	572
2021	수급자	6,079,504	4,858,547	882,894	77,185	2,858	241,957	16,063
	급여액	309,695	264,936	27,602	3,771	412	12,392	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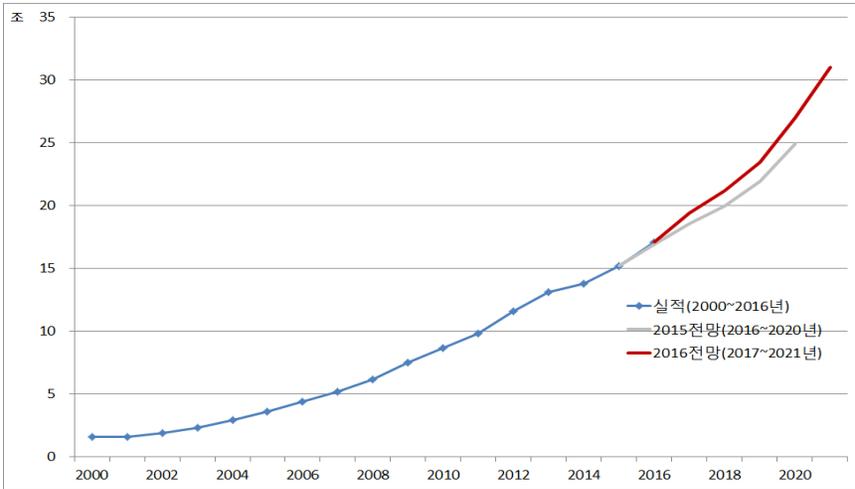
주 : 1) 급여액은 연간 총액임.

2) 연금은 1개월 이상 수급한 연간 수급자수이며, 일시금은 연간 총 수급자임.

[그림 IV-2]는 총 급여액 실적과 전망치이며, 앞서 2015년도에 이루어진 중기전망의 결과와도 함께 비교하였다. 2015년에 이루어진 전망 결과는 ‘2015전망’이라고 하고 금년도에 이루어진 결과는 ‘2016전망’이라고 하면<sup>27)</sup>, ‘2016전망’은 ‘2015전망’에 비해서 높아졌다. 이는 최근의 베이비부머들의 노령연금 수급 시작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이전에

비해서 높게 증가되는 점을 반영하여 전망하였으므로, '2015전망'에 비해서 총 급여액의 증가가 높아졌다.

[그림 IV-2] 총 급여액 실적(2000~2016) 및 전망치(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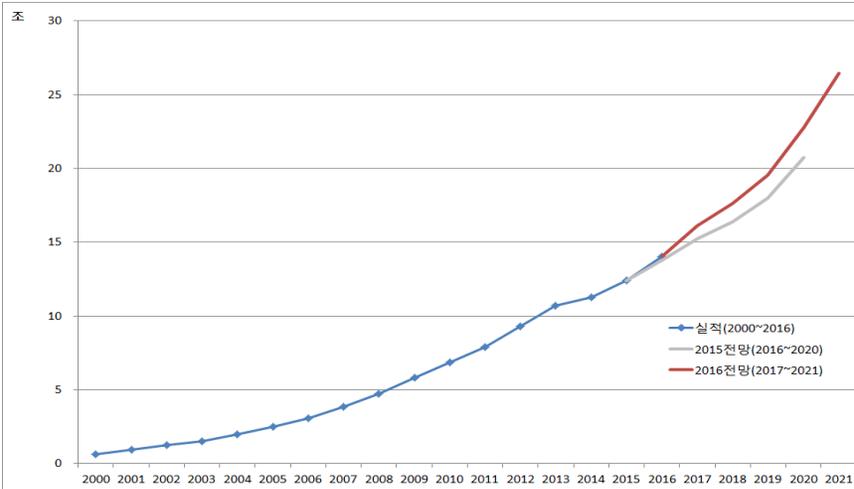


주 : 1) 총 급여액은 일시금을 포함한 수치임.  
 2) '2015전망'은 2015년도에 수행한 중기재정전망(2016~2020)의 결과임.

총 급여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령연금이다. 최근 연도인 2016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노령연금은 총 급여액의 대부분인 약 8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IV-3]은 노령연금의 실적과 전망결과이다. '2016전망'은 2016년 12월 기준의 값을 초기치로 하였으므로 베이비부머인 55년생의 노령연금 실적을 기초로 하여 56년생 이후 베이비부머들의 신규 발생 증가를 참고적으로 살폈다.

27)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재정전망은 매년 이루어지는 과제이며, 향후 5년 동안의 재정을 전망한 결과를 생산함. 그러므로 '2015전망'은 2015년도에 수행한 결과를 의미하며, 2016년부터 2020년을 전망기간으로 하였음. 이후 2016년도에 수행예정이던 중기전망(2017~2021)은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의 중기추계 수행으로 인하여, 수행이 연기되었음('2016년 12월'에서 '2017년 4월'로 연기). 본 보고서에서는 '2016전망'으로 칭함.

[그림 IV-3] 노령연금액 실적(2000~2016) 및 전망치(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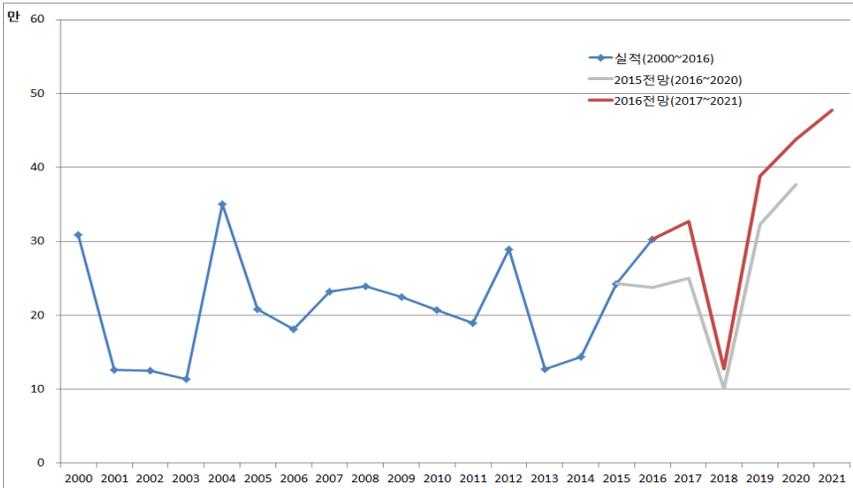


모형에서의 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자로서 해당연도에 수급연령에 도달한 자이다. [그림 IV-4]는 노령연금(조기노령 포함) 신규수급자 실적과 전망 결과이다. [그림 IV-4]에서 2000년 이후의 노령연금(조기노령 포함) 신규수급자수는 2000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크게 증가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영향이다<sup>28)</sup>. 2009년도 제도 확대 이후 노령연금(조기노령 포함) 신규수급자 규모는 2009년도는 약 224천명, 2010년도는 208천명, 2011년도는 약 189천명으로 다소 감소되었다. 이는 특례적용 되는 자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점차로 감소된 것이다. 특례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1995년 당시 45세인 자가 60세에 도달하는 2010년 7월까지 발생하고 그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는다<sup>29)</sup>.

28) 95년 농어촌지역가입자확대 및 99년 도시지역가입자확대 시 특례적용 받는 이들이 수급자로 발생하는(가입기간 5년 이상)시점이 각각 2000년과 2004년임.

29) 하지만 실적에서는 지연청구로 인하여 신규수급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도(10월 기준)에는 1,912명이 발생되었음. 지연청구로 인한 수급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그림 IV-4] 노령연금(조기노령 포함) 신규수급자수 실적(2000~2016) 및  
전망치(2017~2021)



2012년도의 신규수급자는 약 289천명으로 이전연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되었는데 이는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급증에 의한 것이다. 특히 노령연금(조기노령 제외) 신규수급자의 경우, 52년생은 이전 출생코호트인 51년생에 비해서 가입자수가 많으므로 2012년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대다수는 52년생임)의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다. 2013년도는 수급연령 상향으로 신규수급자가 이전연도에 비해서 감소하였고, 2014년도 이후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5년도는 이전 연도보다 크게 증가되었다. ‘2016전망’은 ‘2015전망’에서 보다 신규수급자의 규모가 더 많이 발생하는 점이 구별된다. 이는 최근연도인 2016년도의 55년생 코호트의 신규발생 규모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15전망’에서의 규모는 과소추계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베이비부머의 노령연금 수급이 본격적으로 발생된 2016년도 이후부터는 그 이전에 비해서 좀 더 높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5〉 출생코호트(55년생~60년생) 인구수 및 가입자수

(단위 : 명)

출생연도	인구수	10년 이상 가입이력이 있는 자
1955년생	699,786	313,362
1956년생	682,440	292,186
1957년생	721,204	311,500
1958년생	772,651	310,497
1959년생	811,552	334,462
1960년생	896,370	357,088

주 1) 인구수 : 통계청 기준인구 2015

2) 국민연금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 : 가입자 및 가입자 이었던 자(10년 이상 가입이력이 있는 자)는 2016. 09 기준(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3) 가입자수 현황은 발취 기준일에 따라 변동됨.

〈표 IV-5〉는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출생코호트의 인구수와 국민연금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가입이력을 통해 규모를 비교하였다. 56년생은 이전 코호트인 55년생에 비해 인구수가 다소 작지만 다른 출생코호트는 이후 계속해서 규모가 커진다. 10년 이상의 가입이력이 있는 자의 규모도 인구수와 마찬가지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2017년 이후의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이다. 그러므로 모형에서 산출한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규모도 이를 참고로 하였다.

2017년도 이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규모는 2016년도보다 점차적으로 더 증가하게 되고 이는 코호트별 인구수가 증가하고 또한 가입자수가 증가되므로 신규수급자의 규모가 증가되는 것이다(〈표 IV-5〉). 특히 2018년도에는 62세로 수급연령이 상향되는 첫 해이며, 62세에 해당하는 56년생은 2017년도에 61세가 되어 신규수급자로 대다수가 발생되었으므로, 2018년도의 신규발생의 규모는 이전 연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감소될 것이다. 그러므로 2018년도에는 청구지연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중 일부가 신규수급자로 발생하므로, 2013년도<sup>30)</sup>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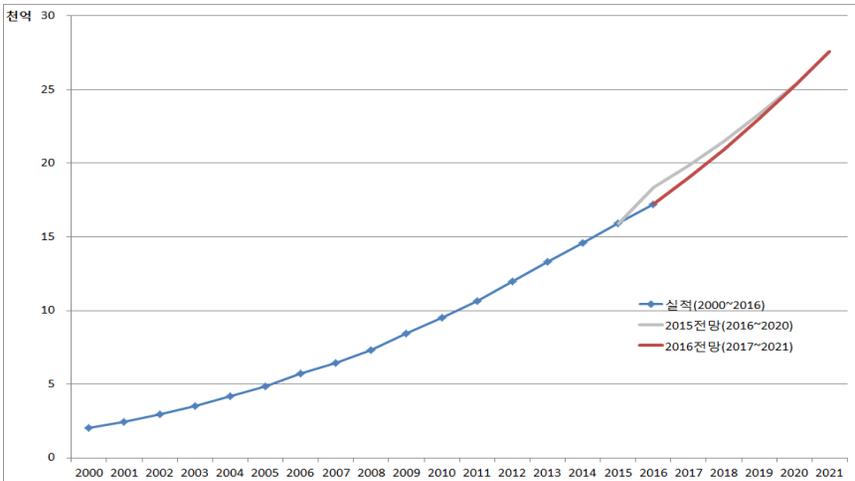
30) 2013년도에는 수급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된 첫 해임.

신규수급자의 규모를 정하였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림 IV-5) 참조), 유족연금은 총 급여액 중 약 10.1%(2016년 기준) 정도를 차지한다. 유족연금은 2009년도 약 8,446억원, 2010년도 9,492억원, 2011년도 약 10,623억원, 2012년도 약 11,957억원, 2013년도 13,302억원, 2014년도 14,599억원. 2015년도 약 15,910억원으로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다.

최근 개정법(2016.11.30.시행)에 의하면,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이 확대되었고, 중복급여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20%에서 30%로 인상되었다<sup>31)</sup>. 이로 인하여 유족연금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전망’의 유족연금은 이전 연도의 추이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그림 IV-5] 유족연금액 실적(2000~2016) 및 전망치(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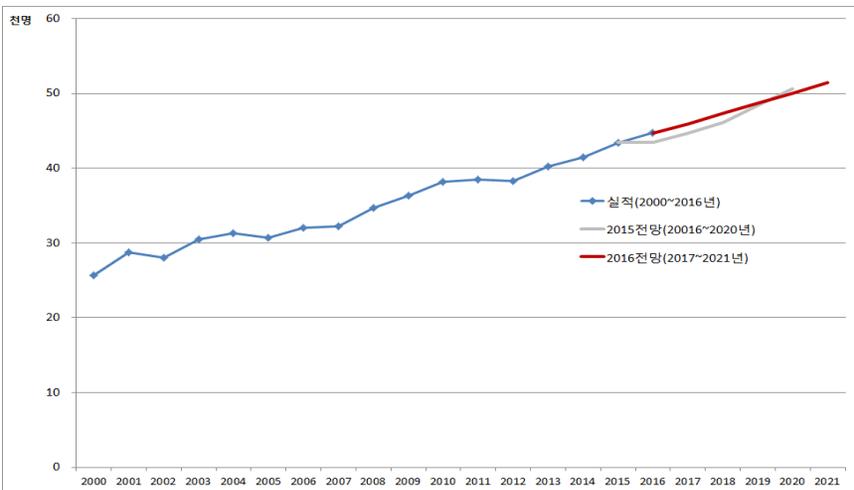
[그림 IV-6]은 유족연금 신규수급자 실적과 전망 결과이다. 유족연금 신규수급자(중복급여 대상자를 제외함<sup>32)</sup>)는 2009년도 36,320명, 2010

31) ‘부록’의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 주요내용(요약) 참조

## 6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년도 38,132명으로 약 2천명 정도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는 38,454명, 2012년도 38,253명으로 유사한 수준이며, 2013년도 40,187명, 2014년도 41,416명, 2015년도 43,435명, 2016년도 44,690으로 증가되었다. '2016전망'의 유족연금 신규수급자는 증가하는데, 최근의 증가추이를 고려하여 조정한 결과이다.

[그림 IV-6] 유족연금 신규수급자수 실적(2000~2016) 및 전망치(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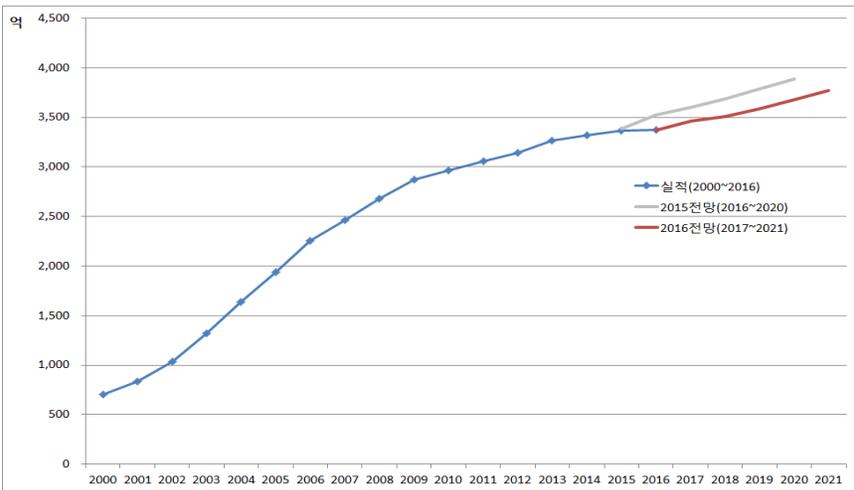


장애연금은 총 급여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2016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장애연금은 총 급여액의 약 2.2%정도(장애일시금 포함)를 차지한다(표 IV-1)참조). 또한 장애연금의 신규수급자 발생 추이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32) 2007년도의 개정법에 의해서 유족연금과 제도 내의 다른 급여의 중복이 발생한 경우, 유족연금이 선택급여가 아닌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30%(2016년 11월30일부터 30%로 인상)를 지급하게 됨. 그러므로 중복급여로 인하여 유족연금의 30%를 수급하는 자도 신규수급자로 산정이 되나, 전체의 규모에 비해서 비중이 작으므로, 모형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이들을 신규수급자 규모에 포함하지 않았음.

로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과는 다른 형태이다. [그림 IV-7]은 장애연금의 실적과 전망 결과이다. 신규수급자의 발생은 최근 연도 들어서서 정체되고 있어서 전체 수급자 증가를 이전에 비해서 둔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개정법(2016.11.30. 시행)에 의해서 장애연금의 수급조건이 확대되었으므로<sup>33)</sup>, 이로 인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장애연금은 초진일 이후 장애등급 판정까지의 시간 경과 후 수급이 이루어지므로 신규수급자의 증가는 서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하여 2017년 이후 장애연금의 신규발생은 증가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장애연금액의 지출도 점차적으로 증가해나가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IV-7] 장애연금 실적(2000~2016) 및 전망치(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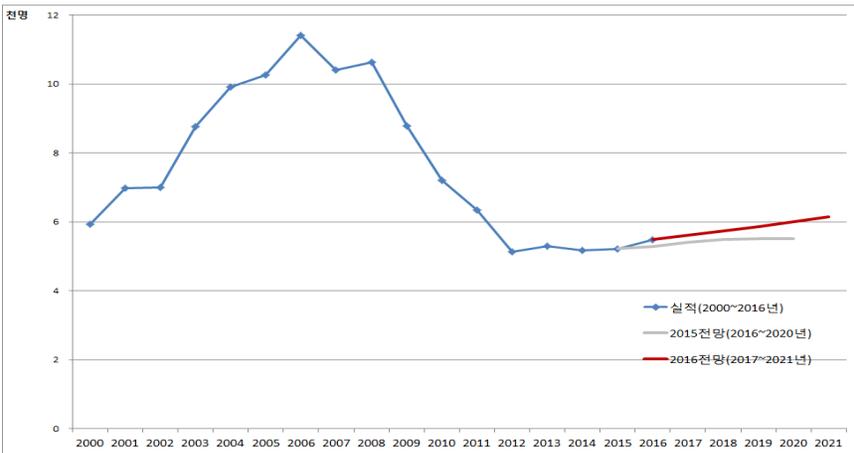
[그림 IV-8]은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실적과 전망결과이다. 2009년도 신규수급자는 8,788명으로 2008년도에 비해서 1,800명 정도 감소되었으며, 2010년도 신규수급자는 약 7,200명으로 2009년도 신규수급자보다 약 1,600명 정도 감소되었다.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추이를 살펴보면

33) '부록'의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 주요내용(요약) 참조

## 64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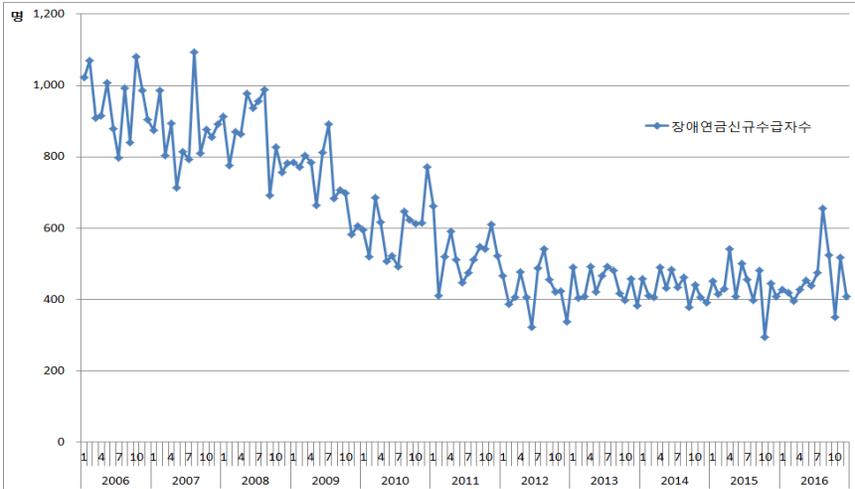
2006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7년도부터 감소하고 있다([그림 IV-8] 참조). '2015전망'에서는 최근 연도의 수준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2016전망'에서는 개정법에 의한 효과로 신규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수급조건이 확대된 개정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정채되어 있던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의 규모는 최근 연도의 증가추이를 참고하여 조정하였다.

[그림 IV-8]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실적(2000~2016) 및 전망치(2017~2021)



실적에서의 장애연금의 수급자수가 정채된 이유는 [그림 IV-9]의 월별 신규수급자 발생추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 수 있다. [그림 IV-9]는 2006년 1월부터 최근 2016년 12월까지의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의 월별 발생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8년 9월 이전의 매월 약 900명 정도가 발생하는 수준에서 2008년 10월 이후로 2009년 10월까지 평균적으로 약 800명 미만으로 발생되었으나 그 이후 신규수급자의 발생은 평균적으로 600명 미만으로 감소되었다. 2012년도의 월별 신규수급자는 약 430명 수준으로 발생되었으며, 2013년도 이후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정채되어 있다.

[그림 IV-9]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의 월별 발생추이(2006~2016)



장애연금 신규수급자가 2006년 이후로 감소하는 이유는 장애심사 건수가 이전에 비해서 감소되었고, 또한 신청자의 등급 외 판정 비율이 높아진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심사규정 개정(2006년, 2010년<sup>34)</sup>)과 장애심사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로 등급 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2006년도는 신청자 중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의 비중이 약 23%이나, 점점 증가하여 2008년도는 약 30%, 2009년도는 약 36%로 증가되었으며, 그 이후 등급 외 비중은 약 40%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졌다(〈표 IV-6〉 참조).

34) 2006년도 장애심사 규정 개정 이후 장애판정의 객관성, 타당성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추진되어 2010년도 2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표 IV-6〉 장애연금 신청자 및 등급 외 비율

(단위 : 건수, %)

구분	신청자	1급	2급	3급	4급	등급 외(비율)	
2006	20,533	2,112	3,718	5,028	5,031	4,644	22.6
2007	21,965	2,002	3,146	4,543	5,240	7,034	32.0
2008	20,573	1,908	3,061	4,489	4,958	6,157	29.9
2009	18,955	1,736	2,518	3,844	3,952	6,905	36.4
2010	14,728	1,490	2,167	2,610	3,099	5,362	36.4
2011	14,285	1,459	1,906	2,310	3,121	5,489	38.4
2012	12,608	1,521	1,738	1,933	2,356	5,060	40.1
2013.10	10,920	1,373	1,420	1,757	2,020	4,350	39.8

주 : 1) '등급 외'는 장애연금 신청자건수에서 장애연금(1급~4급)지급결정 된 건수를 차감한 수입.

2) '신청자' 및 장애연금(1급~4급)결정건수는 모두 업무처리일자를 기준으로 접수건과 지급결정건을 구한 것이므로, 발체기준에 따라 수치는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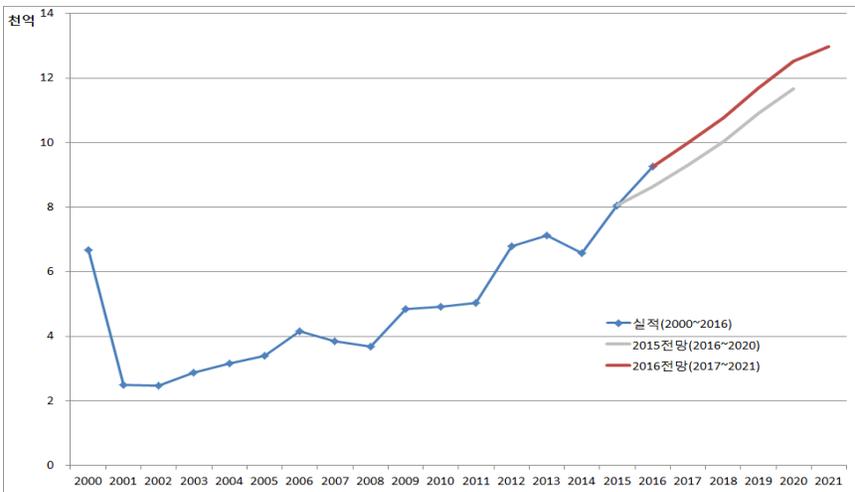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장애일시금을 제외한 일시금은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다.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을 합한 급여액은 2016년도 총 급여액 중 약 5.4%를 차지한다(〈표 IV-1〉 참조). 반환일시금은 수급사유별로 각각 전망하는데, 연령 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나뉜다. 반환일시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령 도달로 인한 수급이다(〈표 IV-22〉 참조).

실적에서 연령 도달로 인한 수급자의 경우, 2013년도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1세 증가되므로 연령 도달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 규모도 줄어들어야 하나,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국민연금법 부칙개정(2012.10.22. 공표)의 영향이다. 즉, 개정법에 의해서 각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어 반환일시금의 수급자가 일시적으로 증가되었다. 연령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자는 2013년도 112,700명이다(2012년도의 경우 연령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자는 95,706명, 2011년도는 76,680명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연령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는 출생코호트인

53년생은 전년도의 해당 코호트인 52년생에 비해서 가입자수가 작았으나, 연령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자는 증가하였다. 이는 가입기간 분포의 차이, 즉 52년생에 비해서 53년생은 1개월 이상 10년 미만인자의 규모가 컸기 때문이다.

[그림 IV-10] 일시금(장애일시금 제외) 실적 및 전망치(2017~2021)



[그림 IV-10]은 반환일시금 실적과 전망결과이다. [그림 IV-10]의 ‘2015전망’은 2014년도 이후 일시금은 증가해 나가는 것으로 하였으나, 실적과의 비교가 가능한 2016년도의 일시금 수급자수는 전망치보다 높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2016전망’을 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55년생 이후 세대가 연령도달에 해당되므로 이전에 비해서 연령도달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될 것을 고려하였다. 연령도달로 인한 수급자를 산출하기 위해서 ‘2015전망’에서는 2014년 12월 기준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가입기간 분포를 토대로 하여<sup>35)</sup> 각 코호트별로

35)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내부자료로 매년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력자료를 구축하여

장래 연령도달로 발생할 규모의 잠정치를 예상하여 모형의 결과를 어느 정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결과로 '2015전망'은 최근에 이루어진 '2016전망'에 비해서는 증가가 낮은 형태로 전망되었다.

반환일시금의 연령도달 수급자는 각 출생코호트별로 60세에 대부분 수급할 것으로 예상하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코호트별로 60세 도달자를 잠정적인 수급대상으로 하였다. 코호트별로 가입자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시금 중 연령도달의 경우는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sup>36)</sup>.

국외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변동은 예측하기가 힘들므로 현재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국외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2010년도 39,202명, 2011년도 46,483명, 2012년도 67,115명으로 증가되었다. 2013년도는 52,177명, 2014년도는 42,54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수준이다. 2015년도는 47,138명, 2016년도 54,991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7년 이후의 국외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수를 전망하였다.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규모는 2010년도 8,716명, 2011년도 9,695명, 2012년도 9,100명, 2013년도 8,763명, 2014년도 9,018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이후 2015년도 9,505명, 2016년도는 9,121명으로 마찬가지로 유사한 규모이다.

---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있음. 이는 개인별 자료로 가입이력이 1개월이라도 있는 가입자(약 3천만명)가 모두 포함되며, 현재 사용 중인 자료는 1988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가입 및 수급이력을 월별로 담은 자료임.

36) <표 IV-5>에서 출생코호트 60년생은 2020년에 60세에 도달하며, 반환일시금의 연령도달의 경우 잠재적 수급자로 가입기간 1개월 이상이고 10년 미만인 자료 볼 수 있음.

## 2. 노령연금 전망

### 가. 특례노령연금 지급현황 및 전망

1993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특례노령연금은 매년 30%이상의 수급자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표 IV-7>은 1993년부터 최근까지의 특례노령연금의 지급현황이다.

2000년도에는 1995년에 가입한 농어촌지역가입자 및 특례적용지역가입자의 영향으로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1988년에 최초 가입한 사업장가입자들 중 특례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2002년 12월까지 모두 발생되었으므로, 2003년도의 수급자 증가가 이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 1999년 4월 도시지역 확대 적용에 의한 가입자가 2004년 4월부터 수급하게 되어 2004년의 신규수급자수는 이전 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여 약 31만명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약 13만명~16만명이 발생하였다. 2009년도에는 1999년 도시지역 확대 시 특례를 적용받는 자들이 3월까지 발생하므로 4월부터는 감소되어 이전연도의 절반수준 정도만 발생하였다.

## 70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표 IV-7〉 특례노령연금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원)

연도	수급자		급여액	
	신규수급자	총수급자	총 급여액	평균급여액
1993	10,971	10,971	6,447	74,289
1994	11,628	22,530	18,524	83,938
1995	15,818	38,162	37,517	90,287
1996	20,303	58,099	67,616	104,426
1997	25,733	83,222	109,722	116,492
1998	30,555	112,946	171,425	136,201
1999	37,475	149,429	254,532	165,253
2000	296,246	444,363	550,833	124,413
2001	117,156	557,941	857,388	131,230
2002	115,941	665,756	1,111,781	155,252
2003	77,239	733,828	1,328,789	158,521
2004	308,935	1,032,133	1,656,064	150,094
2005	163,930	1,182,908	2,029,310	153,029
2006	127,716	1,294,873	2,301,267	158,124
2007	157,570	1,435,130	2,644,506	164,105
2008	156,360	1,572,381	3,035,394	171,096
2009	86,516	1,637,039	3,432,046	180,856
2010	30,169	1,644,953	3,609,700	186,468
2011	7,329	1,627,140	3,679,068	191,510
2012	3,503	1,606,125	3,758,848	198,920
2013	2,096	1,581,145	3,794,101	203,167
2014	482	1,553,815	3,783,211	205,778
2015	213	1,525,057	3,758,353	208,462
2016	407	1,495,069	3,707,750	209,904

주 : 1) 연도말 누계 기준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010년도는 95년 농어촌지역 확대 시 특례적용 대상자의 일부가 7월 까지 발생가능하며 이후로는 특례적용 대상자가 없으므로 신규발생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하지만 수급권이 발생한 대상자의 지연청구<sup>37)</sup> 등으로

37) 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해당서식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여야 지급이 이루어짐(국민연금 시행규칙 제22조). 그러므로 지급 청구를 지연하는 경우도 발생됨.

인하여 8월부터는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신규수급자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도는 7,329명이 신규 발생되었으며 전체 수급자는 감소하고 있다.

특례노령연금의 월평균급여액은 가입기간 및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2000년도에는 가입기간과 소득이 적은 농어촌 지역가입자의 신규수급으로 인하여 월평균급여액이 일시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2004년도에도 이전연도에 비해서 평균급여액은 하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이후 상대적으로 가입기간이 짧은 신규수급자의 유입 영향으로 전체 월평균급여액은 그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

특례노령연금의 수급자 및 급여액을 전망하기 위하여, 초기치는 2016년도 12월의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 수급자수와 월평균급여액으로 한다. 2016년도 12월 기준의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수는 1,464,352명이며<sup>38)</sup>, 이들의 평균급여액은 209,904원이다. 모형에서는 청구지연으로 인한 신규수급자의 발생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sup>39)</sup> 신규수급자의 발생<sup>40)</sup>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 수급자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특례노령연금의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은 <표 IV-8>과 같다. 2017년도의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143만명, 급여액은 3조 6,623억원, 2018년도 수급자수는 약 139만명, 급여액은 3조 6,212억원으로 이후 감소해 나간다.

38) 수급자수는 12월 지급 기준임. <표 IV-7>의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수는 12월 누계기준임. 즉, 누계기준은 1개월 이상 수급한 자가 모두 포함된 규모를 말함.

39) 현재 청구지연으로 인한 신규발생은 매월 점차로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이후에는 그 규모가 전체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규모에 비해 미미한 규모가 될 것임.

40) 2016년 특례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407명(연간 기준)임.

〈표 IV-8〉 특례노령연금 전망

(단위 : 명, 백만원, 원)

연도	수급자수	급여액	평균급여액
2017	1,428,962	3,662,349	213,579
2018	1,391,587	3,621,173	216,849
2019	1,351,823	3,580,016	220,691
2020	1,309,581	3,533,540	224,852
2021	1,264,724	3,483,433	229,525

주 : 1) 수급자수는 연도말 기준임.

2) 급여액은 연간 합계이고, 월평균급여액은 전체수급자에게 지불한 연간 총급여액과 지급개월수를 이용하여 월급여액의 평균값을 구한 것임.

#### 나. 조기노령연금 지급현황 및 전망

연령이 57세 이상 61세 미만<sup>41)</sup>이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수급신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1999년 3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표 IV-9〉는 조기노령연금이 최초 지급된 199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연간 수급자수 및 총급여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0년 이후 수급자수는 연간 약 16%정도 증가하였으며 총급여액은 평균급여액의 상승으로 인하여 수급자수의 증가율보다 높은 약 2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도는 2006년의 소득활동에 대한 기준변경으로 이전연도에 비해서 신규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여 약 2.4만명이며, 2008년도에는 이전연도보다 증가하여 약 2.7만명의 수급자가 발생되었다. 2007년 개정법에 의해서 노령연금 수급자의 정지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서, 구직급여로 인하여 노령연금 수급이 정지되던 규정이 없어졌다. 그러나 2008년도의 신규수급자의 규모가 크게 증가되지는 않았다. 2009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신규수급자가 크게 증가하여 약 3.5만명이며, 2010년도는 약 3.4

41)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기노령연금 수급 신청이 가능한 연령임. 2018년부터는 58세 이상 62세 미만으로 상향됨.

만명이므로 2009년도와 비슷한 규모이며, 2011년도는 약 3.2만명으로 이전연도에 비해서 감소되었다.

〈표 IV-9〉 조기노령연금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원)

연도	수급자		급여액	
	신규수급자	총수급자	총 급여액	평균급여액
1999	26,142	26,142	45,059	233,689
2000	12,977	37,674	100,528	233,749
2001	8,805	44,245	116,223	243,213
2002	9,107	51,708	142,923	265,899
2003	10,188	59,907	170,086	275,621
2004	11,498	69,956	210,394	289,967
2005	12,554	81,128	260,820	306,526
2006	16,385	101,166	345,526	324,931
2007	24,110	124,738	460,003	356,348
2008	27,436	150,973	619,656	380,158
2009	34,792	184,608	809,385	406,432
2010	34,189	216,522	1,014,389	425,977
2011	32,454	246,659	1,226,137	446,080
2012	79,044	323,238	1,560,120	467,550
2013	84,956	405,107	2,203,603	476,618
2014	40,257	441,219	2,438,419	485,199
2015	43,447	480,343	2,717,072	496,320
2016	36,164	511,880	2,972,511	505,567

주 : 1) 연도말 누계 기준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012년도 이전 3년 동안 비슷한 규모의 신규수급자가 발생하였으나, 2012년도는 신규수급자의 발생규모가 크게 증가되었다. 이는 2013년도에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1세 상향되면서 연령상향방식도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2011년도 말 국민연금법 부칙개정에 의하면 2013년도부터 이루어지는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방식이 '연도별 상향 방식'이 아니라 '출생연도별 상향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출생코호트에 따라 조기노령

연금 급여율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2012년도에는 수급 가능 대상자에게 개별적인 청구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적극적인 청구안내로 신규수급자수가 크게 증가되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전망하기 위하여, 신규수급자는 수급 연령과 최소 가입기간조건을 만족하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자들 중에서 신규수급자를 산출한다. 즉 2016년부터 2017년(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령이 57세 이상 61세 미만(58세 이상 62세 미만)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및 대기자를 가입기간에 따라 분류하여 이들 중에서 매월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를 산출한다. 따라서 전월 가입자 중 탈퇴하여 금월에 대기자로 전환되는 자와 전월 대기자 중 금월에 재가입하지 않는 자를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들 중에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들의 수에 조기수급률을 곱하여 신규수급자수를 산출한다.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수

$$= \text{가입자 및 대기자}(57 \leq \text{연령} \leq 61, \text{가입기간} \geq 10\text{년}) \times \text{조기수급률}$$

조기노령연금 신규급여액

$$= \text{신규수급자수} \times \{ \text{기본연금액} \times (1 - \text{연령별 감액률}) + \text{부양가족연금액} \}$$

신규수급자 산출과정에서 적용한 조기수급률은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대기자수와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는데, 3차 재정계산 시 조기수급률을 사용하였다<sup>42)</sup>. 초기치인 2016년도 12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505,538명<sup>43)</sup>이며, 평균급여액은 505,567원이다.

42) 조기수급률은 3차 재정계산모형의 기초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3차 재정계산 모형의 조기수급률은 2010년 실적자료를 토대로 추정된 값임.

43) 소득활동으로 감액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포함한 건수임.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매월 신규수급자수와 계속수급자수를 산출하고 이들의 급여액을 전망하는데, 그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조기신규수급자는 2017년도 약 5.9만명, 2018년도 약 6.5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의 전체 수급자는 약 56.0만명, 2018년은 약 6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이들의 급여액은 2017년은 약 3조 3,107억원, 2018년은 약 3조 7,806억원으로 전망된다.

<표 IV-10> 조기노령연금 전망

(단위 : 명, 백만원, 원)

연도	수급자		급여액	
	신규수급자	총수급자	총 급여액	월평균급여액
2017	59,475	560,374	3,310,732	518,658
2018	64,555	619,703	3,780,589	535,180
2019	73,383	687,202	4,334,297	554,149
2020	83,827	764,416	4,990,061	574,161
2021	91,270	848,238	5,734,893	593,305

주 : 1) 신규수급자는 연간 규모이며, 총 수급자는 연도말 기준이며 조기재직자를 포함  
 2) 총 급여액은 연간 합계인데 조기재직자 급여액을 포함하였으며, 월 평균급여액은 조기재직자를 제외한 조기수급자의 월평균급여액임.

#### 다. 노령연금 지급현황 및 전망

노령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61세 이상<sup>44)</sup>이면 수급하게 된다. <표 IV-11>은 노령연금 수급자(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실적자료이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일정액을 감액하여 지급받는다<sup>45)</sup>. 또한 연금의 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의 증액률이 적용된다<sup>46)</sup>. 2016년 12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10년 이상 20년

44) 2013년부터는 61세 이상이지만, 2018년부터는 62세 이상으로 1세 증가됨.

45)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참조

46) 국민연금법 제62조 '지급연기에 따른 가산' 참조

## 76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미만)는 1,128,583명, 이 중에서 소득활동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10년 이상 20년 미만)는 31,492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10년 이상 20년 미만)중 약 2.8%가 소득활동을 하는 자이다.

〈표 IV-11〉 노령연금(10년 이상 20년 미만) 지급현황

(단위 : 명, 억원, 원)

연도	노령연금(20년 미만, 소득활동 제외)			노령연금(20년 미만, 소득활동)		
	총수급자	총급여액	월평균 급여액	총수급자	총급여액	월평균 급여액
2003	9,714	174	336,785	16,170	169	174,528
2004	21,845	641	360,368	31,745	565	204,063
2005	35,127	1,165	388,068	48,647	990	238,176
2006	102,019	4,552	407,549	18,641	639	352,803
2007	146,311	6,539	447,100	23,951	974	411,570
2008	189,049	9,489	460,219	22,528	1,088	445,192
2009	266,267	12,508	444,614	22,908	1,219	458,603
2010	379,031	16,981	418,996	24,790	1,300	458,263
2011	497,908	22,203	410,120	25,982	1,314	432,965
2012	654,985	28,893	411,368	28,057	1,284	396,369
2013	713,332	33,444	411,501	25,693	1,233	384,465
2014	763,861	35,686	408,265	26,583	1,237	392,478
2015	911,322	40,975	404,239	28,106	1,238	377,272
2016	1097,091	48,883	398,131	31,492	1,430	399,318

주 : 1) 총 수급자수는 연도말 지급기준이며, 급여액은 연간 총액임.

2008년 1월 부터는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도 발생하고 있으며, 〈표 IV-12〉는 최근 연도까지의 노령연금 수급자(20년 이상)의 실적자료이다. 2008년도는 소득 활동하는 자를 포함하여 노령연금 수급자(20년 이상)는 12,798명이며, 2009년도 33,005명, 2010년도 57,102명, 2011년도 81,897명, 2012년도 121,826명, 2013년도 125,630명, 2014년도 143,596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20년 이상)는 246,304명이며, 이 중 소

득활동을 하는 자(28,040명)는 약 11.4%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입기간 20년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자에 비해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표 IV-12〉 노령연금(20년 이상) 지급현황

(단위 : 명, 억원, 원)

연도	노령연금(20년 이상, 소득활동 제외)			노령연금(20년 이상, 소득활동)		
	총수급자	총급여액	월평균 급여액	총수급자	총급여액	월평균 급여액
2008	9,308	401	719,392	3,490	95	447,235
2009	24,888	1,618	750,834	8,036	333	498,280
2010	44,571	3,356	770,772	12,531	668	540,895
2011	65,385	5,360	792,270	16,512	1,024	597,928
2012	97,380	8,225	817,871	22,776	1,541	654,436
2013	105,882	10,478	848,598	18,586	1,740	723,279
2014	122,648	11,867	869,808	19,480	1,733	771,553
2015	183,068	15,038	881,689	22,033	1,866	779,401
2016	218,264	20,438	882,990	28,040	2,543	861,177

주 : 1) 총 수급자수는 연도말 지급 기준이며, 급여액은 연간 총액임.

노령연금의 수급자를 전망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가입자 및 대기자를 가입기간에 따라 추정하여 산출한 결과를 사용한다. 즉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자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노령연금 신규수급자로 발생한다. 또한 이들 중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는 구분한다.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 중 소득활동 하는 자를 먼저 구분하고 나머지를 노령연금 수급자로 한다.

그러므로 해당월의 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매월 임의계속가입 등을 제외한 가입자 및 대기자 중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인 자와 전월의 임의계속가입자 중에서 탈퇴한 자들이다.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들 중 소득활동을 하는 자를 각각 산출한다.

노령연금 수급자수(10년이상 20년미만)

$$= \{[사업장가입자 및 대기자(연령=61, 10년\leq가입기간<20년)+지역가입자(연령=61, 12년\leq가입기간<20년)] \times (1 - 임의계속신규가입률) + 임의계속가입자(연령\geq 61, 15년\leq가입기간<20년) \times 임의계속탈퇴율\} \times (1 - 재직수급률) + (전월의 노령연금 수급자수) \times (1 - 사망률) \times (1 - 재직수급률)$$

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활동을 하는 자는 재직수급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재직수급률은 실적자료를 토대로 하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활동을 하는 자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최근에 수급을 시작하는 코호트들의 재직수급률은 이전의 코호트에 비해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최근 2015년도는 이전연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하여 20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경우 약 12% 정도이며, 가입기간 20년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이보다도 낮은 약 3%수준으로, 20년 이상 수급자 경우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매월별 가입자 및 대기자 전망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수급자로 신규 발생하는 규모는 <표 IV-13>에서와 같다. 즉 수급조건인 가입기간과 수급연령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 전체를 의미한다. 2017년에는 20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진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166.8만명,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101.0만명이며, 2018년에는 20년 미만인 경우는 약 4.8만명, 20년 이상인 경우는 약 1.5만명이 새로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도는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1세 증가되어 62세가 되므로,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정상 수급연령의 신규수급자는 없다. 그러나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청구지연으로 신규수급자가 발생하고 임의계속가입자 중 탈퇴하여 신규수급자가 발생하므로, 이들의 규모를 추정하여 각각 대상자로 한다. 이는 2013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전년도 대비한 신규수급자 발생비율을 적용하였다.

〈표 IV-13〉 노령연금 신규대상자

(단위 : 명)

연도	계	노령연금 (10년 이상 20년 미만)	노령연금 (20년 이상)
2017	267,854	166,830	101,024
2018	62,962	48,058	14,904
2019	315,242	200,307	114,935
2020	354,697	205,569	149,128
2021	385,898	213,371	172,527

주 : 1) '신규대상자'는 수급연령과 가입기간이 수급조건을 만족하는 자임.  
 2) 소득활동하는 노령연금 수급자를 각각 포함한 수치임.

〈표 IV-14〉는 노령연금(10년 이상 20년 미만)수급자의 전망 결과이다. 수급자수는 2017도 약 124.8만명, 2018년도 약 128.3만명 정도가 될 것이며 급여액은 2017년도 약 5조 6,783억원, 2018년도 약 6조 219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V-14〉 노령연금(10년 이상 20년 미만) 전망

(단위 : 명, 백만원, 원)

연도	총 수급자	총 급여액	월평균급여액
2017	1,248,264	5,678,300	400,864
2018	1,282,569	6,021,852	396,082
2019	1,467,988	6,555,764	394,045
2020	1,652,472	7,409,934	393,596
2021	1,844,973	8,290,715	392,760

주 : 1) 총 수급자수는 연도말 기준임. 즉 연도말 기준의 노령연금 수급자(10년 이상 20년 미만, 소득활동 제외)임.  
 2) 총 급여액은 연간 합계이고, 월평균급여액은 전체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임.

〈표 IV-15〉는 노령연금 수급자(20년 이상)전망 결과이다. 수급자수는 2017년도 말에는 약 29.9만명, 2018년도 말에는 약 31.5만명이며, 점차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급여액은 2017년도는 약 2조 8,817억원, 2018년도는 약 3조 5,357억원으로 전망된다.

〈표 IV-15〉 노령연금(20년 이상) 전망

(단위 : 명, 백만원, 원)

연도	총 수급자	총 급여액	월평균급여액
2017	299,454	2,881,710	911,689
2018	315,100	3,535,685	948,137
2019	405,104	4,245,021	979,434
2020	528,716	5,716,444	1,009,110
2021	672,595	7,525,528	1,030,462

주 : 1) 총 수급자수는 연도말 기준임. 즉 연도말 기준의 노령연금 수급자(20년 이상, 소득활동 제외)임.

2) 총 급여액은 연간 합계이고, 월평균급여액은 전체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임.

〈표 IV-16〉은 소득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전망 결과이다. 수급자수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20년 미만인 자와 20년 이상인 대상자 전체이다. 2017년도는 약 8.1만명, 2018년도는 약 7.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도는 수급연령 상향으로 신규수급자가 줄어들게 되므로, 재직으로 인한 감액자의 비율이 높은 연령의 수급자가 감소되어 이전연도에 비해서 소득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규모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sup>47)</sup> 중에서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도 12월 기준 약 4.3%(2010년도 8.6%, 2011년도 7.3%, 2012년도 6.3%, 2013년도 5.6%, 2014년도 5.1%, 2016년도 4.5%)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급자전망에서 재직자비율은 현재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이다.

〈표 IV-16〉 노령연금(소득활동) 전망

(단위 : 명, 백만원, 원)

연도	총 수급자	총 급여액	월평균급여액
2017	80,906	589,163	705,385
2018	78,236	660,684	721,739
2019	100,378	841,782	807,694
2020	126,194	1,135,567	859,198
2021	151,406	1,459,057	908,376

주 : 1) 총 수급자수는 연도말 기준임.

2) 총 급여액은 연간 합계이고, 월평균급여액은 전체수급자의 월평균급여액임.

47) 특례노령, 조기노령, 분할연금은 제외한 노령연금 수급자를 말함.

### 3. 유족연금 전망

〈표 IV-17〉은 최근 연도까지의 유족연금의 지급현황이다. 유족연금은 1989년도부터 발생하였으며, 지급건수는 1990년대 초반에는 매년 1만건 미만의 발생이 있었으나 농어촌지역가입자의 확대로 1997년 이후에는 약 2만건 내외로 새로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지역가입자로 확대되면서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입자의 증가로 인하여 2003년도 이후에는 약 3만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유족연금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원)

연도	수급자수		급여액	
	신규수급자수	총 수급자수	총 급여액	월평균급여액
2000	25,701	114,276	203,052	153,466
2001	28,732	140,915	243,929	157,329
2002	28,077	166,266	293,950	166,966
2003	30,507	192,887	351,651	170,962
2004	31,268	217,820	380,672	177,083
2005	30,732	247,588	484,577	184,222
2006	32,050	279,358	570,601	192,104
2007	34,343	311,868	645,401	197,487
2008	34,689	344,593	731,358	204,093
2009	36,320	378,927	844,649	215,536
2010	38,059	414,241	949,239	223,348
2011	38,454	449,735	1,062,312	231,340
2012	38,253	485,822	1,195,694	241,790
2013	40,187	524,992	1,330,211	248,591
2014	41,416	563,996	1,443,463	253,573
2015	43,435	605,151	1,591,004	258,989
2016	44,690	647,445	1,721,814	262,893

주 : 1) 연도말 누계 기준임.

2) 신규수급자는 중복급여로 인한 유족연금(20%)수급자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총 수급자와 급여액은 중복으로 인한 수급자도 포함.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그리고 2007년 개정법에 의해서 중복급여 조정 시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유족연금액을 2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7월 이후로 수급을 하고 있다. 2007년 이후의 수급자수와 급여액은 이들을 포함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34,689명의 신규수급자(20% 수급자 제외)가 발생되었으며, 2009년도보다 약 1,600명 정도가 증가되어 36,320명이 발생되었다. 2010년도는 38,132명이며, 2011년도 38,454명, 2012년도 38,253명, 2013년도 40,187명, 2014년도 41,416명, 2015년도 43,435명이다. 2016년도는 이전 연도에 비해서 증가되어 44,690명<sup>48)</sup>이다.

2017년 이후의 유족연금 수급자수와 급여액을 전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초기치는 2016년 12월의 유족연금 수급자 실적자료이며, 연령별 수급자수와 이들의 1인당 평균급여액을 이용하였다. 2016년 12월 유족연금 수급자수는 588,070명<sup>49)</sup>이며, 평균급여액은 262,893원이다. 매월별 신규수급자수는 가입자,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가입자이었던 자, 노령연금 수급자 및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수에 사망률 및 유유족률(有遺族率)을 각각 적용하여 구하고, 신규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을 구하여 총 급여액을 산출한다.

*유족연금 신규수급자수*

$$= \{ \text{가입자 및 대기자(가입기간} \geq 10) + \text{노령연금수급자} + \text{장애연금수급자} \} \times \text{사망률} \times \text{유유족률}$$

*유족연금 신규급여액*

$$= \text{신규수급자수} \times \{ \text{기본연금액} \times \text{가입기간별 급여율} + \text{부양가족연금액} \}$$

48) 유족연금 신규수급자는 30%유족연금 신규수급자를 제외한 규모이며, 2016년도 연간 기준으로 30%유족연금 신규수급자는 4,485명이 발생하여 12월 말 기준 전체수급자는 49,553명임.

49) 중복급여로 발생한 유족연금(30%)수급자수는 2016년 12월 기준으로 49,553명으로 포함하지 않음.

유유족률은 사망자 중에서 유족이 있는 자들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sup>50)</sup>. 유족연금의 신규 발생 규모를 결정하는 사망률과 유유족률중 유유족률은 3차 재정계산 시 변수값을 적용하였고<sup>51)</sup>, 사망률은 최근에 이루어진 통계청의 인구추계 결과<sup>52)</sup>를 사용하였다. 월별로는 균분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계속수급자의 경우에는 사망과 배우자인 경우의 재혼으로 수급이 종료된 자들을 제외하였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이 여자이며, 이들의 재혼으로 인한 실권율은 수급자 실적자료에서 추정된 연간 추정치를 균분하여 월별로 적용하였으며, 남자의 경우는 그 규모가 여자에 비해서 작아서 재혼으로 인한 실권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복급여로 인하여 유족연금(30%)을 수급하는 자들에 대한 전망은 현재 수준과 비슷한(전체 유족연금 수급자와 대비하여) 추이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산출하고 총 급여액에 합산하였다.

〈표 IV-18〉은 유족연금 수급자수와 급여액 전망결과이다. 유족연금의 신규수급자<sup>53)</sup>는 2017년 약 4.6만명, 2018년 약 4.7만명으로 예상하며, 총 수급자수는 2017년도는 약 68.2만명, 2018년도는 72.8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총 급여액은 2017년도 약 1조 9,017억원, 2018년도 약 2조 944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50) 유족의 제1순위는 배우자인데, 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제한이 있었으나, 2007년 개정법에서 배우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서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조건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없어짐.

51) 3차 재정계산모형의 기초율을 적용하고 있음. 즉 3차 재정계산모형의 유유족률은 2010년도 실적자료를 통해서 산출한 값임.

52)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16)

53) 중복급여로 인한 유족연금(30%)수급자는 제외한 신규수급자 규모임.

〈표 IV-18〉 유족연금 전망

(단위 : 명, 백만원, 원)

연도	수급자수		급여액	
	신규수급자수	총 수급자수	총급여액	월평균급여액
2017	45,958	681,943	1,901,722	256,922
2018	47,299	728,330	2,094,407	265,462
2019	48,661	775,619	2,303,063	274,403
2020	50,051	823,718	2,524,109	283,704
2021	51,482	872,564	2,760,225	293,477

주 : 1) 신규수급자는 연간 규모(유족연금30%는 포함하지 않음)이며, 총 수급자수는 연도 말 기준인데 유족연금30% 수급자도 포함한 수치임.

2) 총 급여액은 연간 합계인데 유족연금30% 급여액도 포함하였으며, 월평균급여액은 유족연금30% 수급자를 제외한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급여액임.

#### 4. 장애연금 전망

〈표 IV-19〉는 2000년<sup>54)</sup>이후 부터 발생한 장애연금 및 장애일시금의 실적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장애연금 및 장애일시금 수급자는 2006년도까지는 매년 20%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도시지역가입자의 확대 등 가입자의 증가와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장애연금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장애일시금의 지급액은 1999년도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금법의 개정으로 기본연금액의 1.5배를 지급하던 것이 기본연금액의 2.25배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54) 장애연금은 1989년도부터 발생되었으나, 전 국민으로 제도가 확대된 1999년도부터 이전에 비해서 수급자수가 증가됨.

〈표 IV-19〉 장애연금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총 계		장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	24,084	85,897	21,914	70,098	2,170	15,799
2001	29,925	101,869	27,456	83,583	2,469	18,286
2002	35,070	120,268	32,876	103,849	2,194	16,419
2003	42,580	153,899	39,727	131,921	2,853	21,978
2004	50,869	192,926	47,260	163,629	3,609	29,297
2005	58,614	229,645	54,467	193,931	4,147	35,714
2006	66,660	269,847	61,762	225,607	4,898	44,240
2007	72,258	294,203	67,091	245,877	5,167	48,325
2008	77,068	316,021	72,166	268,101	4,902	47,921
2009	78,371	327,956	74,535	287,016	3,836	40,940
2010	79,727	333,604	76,280	296,305	3,447	37,299
2011	79,375	347,466	75,895	305,547	3,480	41,919
2012	78,796	349,116	75,934	314,463	2,862	34,654
2013	78,034	364,905	75,041	326,168	2,993	38,737
2014	78,038	366,075	75,387	331,603	2,651	34,471
2015	78,285	372,090	75,688	336,568	2,597	35,522
2016	78,074	373,380	75,497	337,332	2,577	36,048

주 : 연도말 누계 기준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017년 이후의 장애연금 및 장애일시금의 수급자수와 급여액을 전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초기치는 2016년 12월의 장애연금 수급자 실적자료이며, 연령별 수급자수와 이들의 평균급여액을 이용하였다. 2016년 12월 기준 장애연금 수급자는 69,513명이며, 평균급여액은 434,225원이다<sup>55)</sup>. 장애연금은 타제도인 산재보험 급여와도 중복조정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1/2만 지급받는데, 이들의 규모가 20%를 넘는다. 앞서 설명한 연도말 평균급여액은 중복급

55) 중복급여를 조정하기 전의 평균급여액이며, 중복급여(산재 등 타급여와의 중복인 경우 장애연금액을 1/2만 수급)를 고려하면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낮음.

여 조정을 고려하기 전의 급여액이므로, 장애연금 수급자의 평균급여액 초기치는 중복급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매월 신규수급자는 전월의 가입자수에 장애발생률을 각각 적용하여 금월의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수와 장애일시금 수급자수를 산출한다. 하지만 가입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장애연금 신규발생이 증가하지 않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장애발생률을 조정하여 적용하였다<sup>56)</sup>. 전월에 이은 계속수급자는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한 자를 제외하여 총 수급자로 하였다.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수 = 가입자수 × 장애발생률*

*장애연금 신규급여액 = 신규수급자수 × {기본연금액 × (1-0.2×(장애등급-1))+부양가족연금액}*

〈표 IV-20〉은 장애연금 수급자수와 급여액 전망결과이다. 2017년 이후 장애연금의 신규수급자는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장애연금 수급자는 2017년도와 2018년도는 비슷한 규모인 약 7만명이며, 급여액은 2017년도 약 3,462억원, 2018년도 약 3,508억원으로 전망하였다.

56) 신규수급자는 가입자수에 장애발생률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가입자수가 증가하면 신규수급자도 증가됨. 하지만 최근의 장애연금 신규수급자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조정함.

〈표 IV-20〉 장애연금 전망

(단위 : 명, 백만원, 원)

연도	수급자		급여액	
	신규수급자	총수급자	총급여액	월평균급여액
2017	5,611	70,073	346,174	407,942
2018	5,735	70,289	350,835	412,376
2019	5,866	70,609	358,745	419,006
2020	6,010	71,036	367,402	426,058
2021	6,149	71,564	377,130	433,753

주 : 1) 신규수급자는 연간 규모이며, 총 수급자는 연도말 기준임.

2) 총 급여액은 연간 합계이고, 월평균급여액은 전체수급자의 월평균급여액이며, 타 제도의 급여와의 중복급여(1/2)를 고려한 평균액임.

장애일시금 수급자는 가입자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에는 장애연금의 신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감소하였다. 〈표 IV-19〉의 장애일시금 실적을 살펴보면 이전의 증가추이와 다르게 2008년도는 이전연도에 비해서 수급자수가 감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이보다 더 큰 감소율로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10년도는 3,447명으로 2009년도 보다 감소되었고, 2011년도는 3,480명, 2012년도 2,862명으로 이전연도에 비해서 감소하였다. 최근 연도인 2013년도 2,993명, 2014년도 2,651명, 2015년도 2,597명, 2016년도 2,577명으로 거의 비슷한 규모이다.

2017년 이후의 장애일시금 수급자의 전망은 장애연금의 신규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듯이 수급조건의 확대 영향으로 조금씩 증가해 나갈 것을 고려하여 장애발생률을 조정하여 적용하였다<sup>57)</sup>. 2017년도 이후는 약 3천명 정도의 규모이다. 〈표 IV-21〉은 장애일시금 전망결과이다.

57) 매월 장애일시금 수급자는 가입자수에 장애발생률(장애4급)을 곱하여 산출함.

〈표 IV-21〉 장애일시금 전망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수급자수	총급여액
2017	2,633	35,257
2018	2,685	36,737
2019	2,746	38,229
2020	2,801	39,655
2021	2,858	41,209

주 : 수급자는 연간 기준이며, 총급여액은 연간합계임.

## 5.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전망

〈표 IV-22〉는 도시지역가입자로 확대된 이후인 2000년도 부터 최근까지의 반환일시금 지급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노령연금의 수급자가 발생되기 이전의 급여지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반환일시금은 1998년 말 연금법의 개정으로 상실 후 1년경과자에 대한 지급이 1999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연령 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증가추이는 가입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1998년 말 연금법의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999년도부터 타연금 가입에 의한 반환일시금이 발생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교육공무원의 증가로 인하여 대폭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직원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됨에 따라 타공적연금 가입에 의한 반환일시금 수급자가 증가하였다.

〈표 IV-22〉 반환일시금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총계	1년경과	연령도달	사망	국외이주	타연금 가입	기타	
'00	건수	304,127	182,013	41,610	3,193	2,834	11,820	62,650
	금액	662,420	358,427	46,720	1,404	26,559	37,640	191,670
'01	건수	170,542	71,494	54,979	3,745	5,164	32,223	2,937
	금액	243,445	37,459	51,775	2,740	52,304	94,609	4,558
'02	건수	129,239	28,638	62,197	3,943	6,453	26,885	1,123
	금액	238,685	13,265	81,398	4,389	57,011	81,794	828
'03	건수	108,740	1,926	63,351	5,377	7,237	30,655	194
	금액	278,233	2,364	105,453	6,782	62,870	100,694	70
'04	건수	99,750	59	48,198	5,890	8,604	36,999	0
	금액	303,194	341	85,134	8,065	69,288	140,365	454
'05	건수	96,078	53	31,767	5,815	19,888	38,555	0
	금액	324,885	194	54,434	10,288	95,108	164,860	0
'06	건수	115,394	37	43,835	6,465	22,022	43,034	1
	금액	400,674	161	67,485	13,163	111,856	208,009	-
'07	건수	121,200	382	55,955	7,162	28,707	28,994	0
	금액	368,374	171	86,366	15,774	135,250	130,813	0
'08	건수	137,654	2,213	56,449	8,468	69,550	974	-
	금액	348,026	489	91,402	20,505	231,094	4,536	-
'09	건수	154,119	3,805	72,963	8,788	68,329	234	-
	금액	460,476	4,681	185,587	24,335	244,634	1,235	-
'10	건수	141,347	3,278	90,066	8,716	39,202	83	-
	금액	465,123	2,069	262,636	26,684	172,666	1,061	-
'11	건수	136,628	3,430	76,680	9,695	46,683	139	-
	금액	475,051	807	231,409	29,080	213,268	483	-
'12	건수	176,531	4,469	95,789	9,100	67,115	48	-
	금액	648,036	902	308,930	29,870	308,200	119	-
'13	건수	179,440	5,783	112,700	8,763	52,177	15	-
	금액	153,518	905	360,012	32,818	285,369	40	-
'14	건수	146,353	5,679	89,073	9,018	42,549	17	17
	금액	618,469	994	334,869	34,779	247,681	128	17
'15	건수	179,937	7,838	115,437	9,505	47,138	18	1
	금액	759,704	1,063	419,847	38,244	300,473	77	0
'16	건수	207,751	10,168	133,456	9,121	54,991	14	1
	금액	874,649	1,273	458,910	38,283	376,101	72	10

주 : “연령 도달”은 임의계속가입자 탈퇴를 포함, “국외이주”는 국적상실을 포함,  
 “기타”는 연계제도에 의한 수급자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하지만 2007년 7월의 개정법에 의해서 타공적연금 가입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지급이 없어짐<sup>58)</sup>에 따라 2007년 한 해 동안의 타연금 가입으로 인한 수급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였다.

연령 도달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2007년과 2008년도에는 약 56천명으로 비슷한 규모였으나, 2009년도 72,963명, 2010년도 90,066명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3%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0년 7월 이후 부터 특례노령연금의 신규수급자의 발생이 줄어들면서 그 이후에는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자들 중에서 연령 도달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가 이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적으로 2011년도는 2010년도보다 오히려 감소되어 76,680명이다. 또한 2012년도는 95,789명이 발생되어 이전연도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2012년도의 반환일시금 수급자(연령 도달)가 이전연도에 비해서 증가된 이유는 2012년도의 노령연금 신규수급자 규모 증가와 마찬가지로 52년생(연령 도달로 반환일시금 수급)은 51년생에 비해서 가입자수 규모가 약 40% 정도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sup>59)</sup>. 5년 이상의 가입자 및 대기자 중에서 반환일시금 수급자가 늘어남<sup>60)</sup>에 따라 1인당 평균지급액도 점차적으로 증가되었다.

2013년도부터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1세 증가하였지만 2012년도

58) 2007년 개정법에 의해서 타공적연금 가입으로 인한 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세 도달하여 수급하는 것으로 변경됨. 또한 2009년도부터 시행된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의해서 가입기간을 통산하여 연금으로도 수급 가능함.

59) 국민연금 가입자 이력자료(2014.12 기준)에 의해서 발췌한 결과로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자를 합한 수치임. 인구수는 통계청 기준인구(2010)임.

출생연도	인구수(명)	가입자수(명)
1951	480,825	350,144
1952	508,971	487,317

60) 2009년 이전에는 60세 도달로 인한 반환일시금의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2년 미만이고 평균급여액은 약 160만원 정도이였으나, 2009년 4월 이후로 5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자도 발생되고 있으므로 평균급여액은 약 254만원 정도로 증가되었으며 최근의 2010년도는 약 305만원 정도임.

말에 이루어진 국민연금법 부칙 개정<sup>61)</sup>으로 인하여 반환일시금의 연령 도달의 경우에는 60세부터 가능하며, 대다수가 60세에 신청하여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전제하였으며, 2015년도 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55년생~63년생)가 해당되어, 점차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외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수는 국내체류가 끝나서 출국하는 외국인과 국외로 이주하는 내국인으로 구분된다. 또한 최근 연도의 국외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확대(2007년 5월 국민연금법 개정)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7년도에는 28,707명, 2008년도에는 65,550명이며, 2009년도에는 68,329명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개정 시 소급하여 발생한 수급자가 2008년과 2009년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2010년도는 39,202명으로 이전연도인 2009년도에 비해서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sup>62)</sup>이 개정(2009년 10월)되어,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 연장을 위하여 출국 후 재입국해야 했던 절차가 개선됨으로서 지급사유 발생이 이전연도에 비해서 감소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개정법에 의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출국하는 외국인이 다소 줄어들어서 이전 연도에 비해서 반환일시금 수급자가 감소되었다.

2011년도에는 46,683명으로 이전연도 보다 증가되었으며, 2012년도는 67,115명으로 이전 연도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2013년도는 52,177명으로 이전 연도에 비해 줄었으며, 2014년도 42,549명, 2015년도 47,138명, 2016년도 54,991명이 발생되었다. 2014년도부터 최근 연도에 이르기까지 증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다.

61) 2012년 10월 22일 공포되었으며,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됨.

62)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취업활동(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출국했다가 다시 재입국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으나, ‘10. 4월 이후에는 출국하지 않더라도 2년의 범위내에서 취업활동을 연장 할 수 있음.

2017년 이후의 반환일시금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은 연령 도달, 사망, 그리고 국외이주로 인한 지급만을 고려하였다.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수는 큰 증가가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1인당 평균지급액은 가입기간의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환일시금 수급자수는 가입자수 및 대기자수에 적절한 수급률을 적용하여<sup>63)</sup>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국외이주로 인한 수급률은 3차 재정계산 시 적용한 수급률<sup>64)</sup>을 그대로 적용하여 수급자를 발생시킨 후 최근의 추이를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반환일시금 수급자수*

$$= \text{가입자 및 대기자(연령}=60, \text{ 가입기간}<10\text{년}^{65}) \times (1 - \text{임의계속가입률}) + \text{임의계속가입자(연령} \geq 60, \text{ 가입기간}<10\text{년}) \times \text{임의계속탈퇴율} \\ + \text{대기자(가입기간}<10\text{년}) \times \text{사망률} \times \text{유유족률} \\ + \text{가입자} \times \text{국외이주로 인한 수급률}$$

$$\text{반환일시금 급여액} = \text{수급자수} \times (\text{보험료} \times \text{이자율})$$

〈표 IV-23〉과 〈표 IV-24〉는 반환일시금 수급자수와 급여액 전망결과이다. 2017년도는 18.7만명, 2018년도는 20.5만명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환일시금 수급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 도달로 인한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2017년도는 약 12.8만명, 2018년도는 14.6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반환일시금 급여액은 2017년도 약

63) 반환일시금의 수급 사유 중 ‘사망’은 유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유유족률을 적용하며, ‘국외이주로 인한’ 수급은 실적자료로부터 산출된 국외이주로 인한 수급률을 적용하였으며, 최근 실적과 제도 변화를 고려함.

64) 2013년 3차 재정계산모형의 기초율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3차 재정계산모형은 2010년 실적자료를 토대로 하여 수급률을 추정하였음.

65) 특례신규수급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시점부터는 60세에 도달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및 대기자는 반환일시금의 수급자가 됨.

9,463억원, 2018년도는 1조 224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IV-23〉 반환일시금 수급자수 전망

(단위 : 명)

연도	총계	연령 도달	사망	국외이주
2017	187,065	127,774	12,729	46,560
2018	205,039	145,651	12,139	47,249
2019	224,243	164,929	11,779	47,532
2020	237,998	178,942	11,491	47,559
2021	241,957	183,212	11,254	47,492

주 : 수급자는 연간 기준임.

〈표 IV-24〉 반환일시금 전망

(단위 : 백만원)

연도	총계	연령 도달	사망	국외이주
2017	946,284	558,038	57,968	330,278
2018	1,022,411	626,149	56,165	340,097
2019	1,114,283	710,686	56,299	347,299
2020	1,195,330	786,326	56,122	352,882
2021	1,239,202	829,523	56,868	352,811

주 : 총 급여액은 연간합계임.

〈표 IV-25〉는 사망일시금의 지급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1995년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표 IV-25〉 사망일시금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건수	급여액	연도	건수	급여액
1995	425	494	2006	6,441	15,957
1996	1,807	1,996	2007	7,591	16,924
1997	2,300	2,746	2008	8,397	19,871
1998	2,457	3,854	2009	9,759	24,028
1999	2,328	3,980	2010	9,893	25,626
2000	3,016	4,298	2011	11,631	29,287
2001	4,585	6,384	2012	10,733	30,812
2002	4,264	7,622	2013	10,644	32,897
2003	5,434	10,328	2014	12,321	39,535
2004	5,617	12,558	2015	13,949	46,101
2005	5,768	14,259	2016	16,634	50,359

주 : 건수 및 급여액은 연간 총합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009년도 부터 1만명 정도의 수급자가 유사한 수준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연도인 2016년도는 16,634명이 발생되어 이전 연도에 비해서 증가되었다. 사망일시금의 수급자는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 중에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의 대상이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사망률과 유유족률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사망일시금 수급자수

$$= \text{가입자 및 대기자(가입기간(10년))} \times \text{사망률} \times (1 - \text{유유족률})$$

$$\text{사망일시금 급여액} = \text{수급자수} \times (\text{보험료} \times \text{이자율})$$

〈표 IV-26〉은 사망일시금 수급자와 급여액 전망결과이다. 2017년 이후의 사망일시금 수급자수는 1.6만명 정도로 최근 연도인 2016년도와 비슷한 규모이다. 2017년도 급여액은 약 514억원, 2018년도 급여액은

약 535억원으로 전망한다.

〈표 IV-26〉 사망일시금 전망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수급자수	총급여액
2017	16,320	51,352
2018	16,453	53,488
2019	16,480	55,851
2020	16,294	57,169
2021	16,063	58,213

주 : 수급자는 연간 기준이며, 총급여액은 연간합계임.

## 6. 기타지출

기타지출은 연금급여지출 외에 공단관리비 지원을 포함하는 사업운영비, 기금본부운영비를 포함하는 기금관리비와 복지타운운영비 등의 경상지출로 구분된다. 2017년의 기타지출은 6천 5백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최근 기타지출의 증가율의 평균치인 8.34%씩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IV-27〉 기타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기타지출					기타지출 증가율
	계	관 리 운영비	지 급 수수료	연구비	복지타운 운 영 비	
2000	82,359	78,547	1,011	1,860	941	0.77%
2001	102,514	90,885	4,964	2,000	4,665	24.47%
2002	120,591	108,669	4,166	2,414	5,342	17.63%
2003	134,736	122,564	4,149	2,074	5,949	11.73%
2004	332,912	320,324	3,462	2,655	6,471	147.08%
2005	381,606	369,431	2,838	2,788	6,549	14.63%
2006	403,183	390,732	2,857	2,625	6,969	5.65%
2007	423,886	404,100	3,053	3,795	12,938	5.13%
2008	424,224	409,396	3,174	3,551	8,103	0.08%
2009	443,088	427,520	3,651	4,198	7,719	4.45%
2010	445,479	430,577	4,106	3,498	7,298	0.54%
2011	492,745	479,149	744	3,681	9,171	10.61%
2012	517,399	502,879	1,058	4,830	8,632	5.00%
2013	528,212	514,358	835	4,836	8,183	2.09%
2014	551,000	537,000	627	5,328	8,045	4.31%
2015	570,500	551,500	-	6,000	13,000	3.54%
2016	584,500	576,500	-	-	8,000	2.45%

주 : 연도 말 기준, 2016년 연구비 등은 관리운영비 내에 포함되어 계산되었음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표 IV-28〉 연도별 기타지출 전망

(단위 : 억원)

연도	합계	기금운영비	경상지출
2017	6,539	4,944	1,595
2018	7,085	5,357	1,728
2019	7,676	5,804	1,872
2020	8,317	6,289	2,028
2021	9,012	6,814	2,198

## V. 기금운용현황 및 투자

### 1. 기금운용현황

국민연금기금의 수입은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와 기금을 운용하여 얻어지는 기금투자수익 등이 있으며, 지출은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구성된다.

1988년도 제도 시행 이후 국민연금기금은 2016년 12월말까지 총수입 702.2조원(연금보험료 442.5조원, 기금투자수익 259.7조원 등)중 연금급여를 비롯하여 약 143.9조원이 지출되어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적립 기금은 약 558.3조원(시가 기준, 매입가 기준 : 488.9조원)이 조성되었다.

〈표 V-1〉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수 입				지 출			신규 조성자금
	계	연금 보험료	기금투자 수익	기타	계	연금 급여	기타	
1988	5,278	5,069	201	8	3	3	0	5,279
1992	16,628	12,234	4,394	0	2,295	2,165	130	14,229
1995	53,935	39,663	14,272	0	7,715	7,555	160	45,997
1999	135,096	93,859	41,222	15	39,723	38,906	817	95,276
2005	269,725	185,436	83,033	1,256	39,665	35,849	3,816	230,060
2006	306,947	201,523	103,773	1,651	47,634	43,602	4,032	259,313
2007	355,262	216,702	137,190	1,370	55,936	51,826	4,110	299,326
2008	225,853	229,855	-4,191	189	66,978	61,808	5,170	158,875
2009	500,844	238,582	262,462	-200	78,719	74,719	4,000	422,125
2010	554,295	252,857	301,058	380	90,812	86,359	4,453	463,483
2011	351,892	274,346	76,717	829	103,119	98,189	4,930	248,773
2012	551,681	301,277	249,916	488	120,682	115,508	5,174	430,999
2013	486,279	319,067	166,513	699	136,410	131,128	5,282	349,869
2014	571,987	340,775	230,326	886	143,303	137,799	5,504	428,684
2015	582,557	364,261	217,414	882	157,545	151,840	5,705	425,012
2016	636,277	390,359	245,439	479	176,527	170,682	5,845	459,750

주 : 1) 각 연도 말 기준자료

2) 2005년 이전의 현황자료는 〈부표 5〉 참조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총 558.3조원의 적립기금은 공단회관취득비 등의 기타투자를 제외하고 모두 금융부문에 투자되었다. 이는 1994년 이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운용자금의 50% 이상이 공공부문에 투자되어 온 것에 비하여 1999년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추가 투자가 폐지되고 기존의 투자는 회수되어 모두 금융부문에 투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98년도에 경제위기로 인한 가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대부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증대되었던 복지부문의 운용이 크게 감소되었다.

〈표 V-2〉 연도별 기금운용내역

(단위 : 억원)

연도	회수 자금	운용내역				적립기금			
		계	공공 부문	금융부문	기 타	계	공공 부문	금융부문	기 타
1988	0	5,279	2,880	2,399	0	5,279	2,880	2,399	0
1992	1,573	15,802	6,100	8,502	1,200	48,128	21,278	23,825	3,025
1995	10,407	56,404	42,735	12,155	1,514	161,173	104,355	48,897	7,921
1999	85,640	180,916	88,742	91,628	545	472,396	318,573	141,450	12,373
2005	373,572	603,632	0	603,495	137	1,639,486	0	1,633,509	5,977
2006	407,526	684,020	0	684,020	0	1,896,065	0	1,890,597	5,468
2007	451,267	728,463	0	728,463	0	2,195,399	0	2,190,099	5,300
2008	675,531	947,980	0	947,980	0	2,354,325	0	2,350,015	4,310
2009	374,830	494,613	0	494,613	0	2,776,424	0	2,772,519	3,905
2010	525,829	825,337	0	825,337	0	3,239,908	0	3,235,975	3,933
2011	445,880	760,834	0	760,834	0	3,488,677	0	3,484,681	3,996
2012	462,397	798,111	0	798,111	0	3,919,677	0	3,915,683	3,994
2013	501,120	833,730	0	833,730	0	4,269,545	0	4,264,473	5,072
2014	541,211	887,329	0	887,329	0	4,698,229	0	4,692,534	5,695
2015	637,140	989,850	0	989,850	0	5,123,241	0	5,116,983	6,258
2016	624,450	984,640	0	984,640		5,582,991	0	5,576,819	6,176

주 : 1) 2004년부터 자산취득비, 임차보증금 등의 운용을 복지부문을 포함한 기타운용으로 분류

2) 각 연도 말 기준자료(시가 기준)임.

3) 2005년 이전의 현황자료는 <부표 6> 참조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은 1990년 이후 다소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시증금리의 하향 안정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997년도<sup>66)</sup>에는 금융부문의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여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금융부문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외환위기로 인한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인하여 주식관련 상품의 수익률 하락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8년도<sup>67)</sup>에는 주식시장의 반등으로 금융부문의 수익률이 크게 증가하여 전반적인 기금운용수익률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1999년도에는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인하여 금융부문 수익률의 상승이 크게 나타났으나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2001년<sup>68)</sup>에는 공공부문이나 복지부문의 수익률이 다소 하락한 반면, 금융부문의 수익률은 외환위기 이전수준에 근접한 11%정도가 되었다. 2002년도<sup>69)</sup> 총 수익률은 7.7%인데, 이는 소비촉진을 위한 저금리정책 시행과 이에 따른 시증의 풍부한 유동성, 기업의 투자자금수요 저조,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국내주가의 불안정성 등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2005년에는 주식부문의 수익률이 50%를 상회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채권부문의 수익률이 1% 미만으로 매우 낮아 전체수익률이 5.6%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2006년에는 총 수익률이 5.8%이고 금융부문의 세부항목별 수익률 또한 단기자금을 제외하고는 5% 후반 대를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에는 다시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주식부문의 수익률이 30%를 상회하였으나 채권부문의 수익률이 2.7%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 수익률은 6.8%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미국 발 서브프라

66) <부표 7> 참조

67) <부표 7> 참조

68) <부표 7> 참조

69) <부표 7> 참조

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국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식을 비롯한 금융자산 및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등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급전직하하였다. 2008년 전체 수익률은 -0.2%로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기록되었으며, 이것은 대부분 주식부문의 평가손실이 가장 큰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금융위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공조 및 재정확대정책으로 인해 운용수익률은 점차 회복되었으며, 그 결과 금융부문 수익률은 10.4%, 주식부문에서는 45.4%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는 유럽 발 재정위기 및 경제 이중침체(Double deep)가 국내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자 2009년도 재정정책기조를 상당부분 유지하였으며 그 결과 수익률은 2009년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금융부문 수익률은 10.4%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식부문 수익률은 2009년 수준에는 못 미치는 21.9%를 기록하였다.

2012년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 2011년까지 지속된 유럽재정위기 확산우려로 인한 글로벌 증시의 동반 급락과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 여파로 저조하던 투자수익률이 일정 부분 만회되어 약 7.0%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2013년의 경우에는 유럽 발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가 해외주식부문에서의 투자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채권부문 및 국내주식 부문의 수익률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년의 경우에는 유럽,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 경기가 회복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채권 및 대체투자 부문에서 수익률이 상당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하였다.

〈표 V-3〉 연도별 수익률 현황

(단위 : %)

연도	총계	공공 부문	복지 부문 등	금융부문				
				계	채권	주식	대체 투자	단기 자금
1988	12.0	11.0	-	13.0	13.1	-	-	12.5
1992	12.7	11.0	11.0	14.1	14.7	10.0	-	13.4
1995	11.8	11.6	10.7	12.2	13.8	5.1	-	13.7
1999	12.8	8.5	8.0	24.5	12.9	88.9	-	5.9
2005	5.6	4.2	3.6	5.7	0.3	57.6	8.5	3.5
2006	5.8	-	3.6	5.8	5.8	5.5	6.6	4.2
2007	6.8	-	1.5	6.9	2.7	33.7	6.1	4.8
2008	-0.2	-	-0.8	-0.2	10.5	-42.9	2.7	5.9
2009	10.4	-	0.5	10.4	4.0	45.4	-0.9	-0.5
2010	10.4	-	-0.3	10.4	7.6	21.9	8.7	2.3
2011	2.3	-	-0.6	2.3	5.7	-9.5	10.2	3.2
2012	7.0	-	-1.0	7.0	6.2	10.1	4.9	3.2
2013	4.2	-	0.1	4.2	2.0	8.5	6.4	2.6
2014	5.2	-	-1.7	5.3	7.0	-0.1	12.3	1.5
2015	4.6	-	-2.1	4.6	4.2	3.0	12.2	1.6
2016	4.8	-	-1.4	4.8	2.0	7.8	9.9	2.0

주 : 1) 각 연도 말 기준자료로 수익률은 금액가중수익률이며, 연 환산 수익률임

2) 2005년 이전의 현황자료는 〈부표 7〉 참조

자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2015년의 경우에는 중국 및 신흥국의 경제둔화가 세계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긴축통화정책으로 기금 전체의 수익률은 전년도에 비하여 낮은 약 4.6%를 시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주식부문에서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수익률로 전환되었고, 채권 및 대체투자부문에서의 수익률은 각각 2.0% 및 12.2%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도 기금투자수익률은 2015년보다 상승하였으며, 그 중에서 주식부문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회복세 영향으로 수익률은 약 7.8%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투자부문

## 10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에서의 수익률 역시 9.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국의 금리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채권부문의 수익률은 다소 낮아져 약 2.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V-4〉 2016년도 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투자액 누계(2015년 12월 말)		투자액 누계(2016년 12월 말)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계	5,123,241	100.0	5,582,991	100.0
공공부문	0	0.00%	0	0.00%
복지부문	1,362	0.03%	1,396	0.03%
금융부문	5,116,983	99.88%	5,576,818	99.89%
- 채권(계)	2,902,300		3,025,596	
- 국내	2,686,368		2,793,442	
- 해외	215,932		232,154	
- 주식	1,648,322		1,880,174	
- 국내직접	492,435		547,449	
- 국내위탁	456,530		476,142	
- 해외	699,357		856,583	
- 대체투자	546,585		636,668	
- 단기자금	19,776		34,380	
- 해외대차거래	0		0	
기타부문	4,896	0.09%	4,777	0.09%

주 : 투자내역은 시가 기준으로 2015년 12월 말 및 2016년 12월 말 기준자료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표 V-4〉의 2016년도 12월 말 기준 누계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총 적립금액 558조 3천억 원 중 99.89%인 557조 7천억 원이 금융부문에 투자되었고 복지부문의 투자는 전년도와 유사한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다. 금융부문 내에서는 약 34%정도가 주식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채권투자에 대한 비중은 약 54%로서 약 303조 정도가 투자되고 있어 주식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은 증가한 반면 채권부문은 전년 대비 투자비중이 다소 감소되었다.

## 2. 기금투자에 대한 가정

2017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는 공공부문의 투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기존의 생활안정자금이나 복지시설을 위한 대부사업에 투자되었던 복지부문의 투자 또한 신규 사업의 시행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여유자금은 모두 금융부문에 투자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금융부문의 투자는 국공채, 지방채, 기타채권 및 위탁투자 등에 일정한 비중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017년 이후에는 부문별 투자에서 위탁 및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고 국공채의 투자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상품별 투자기간(duration)의 경우, 2017년도의 대부분의 투자가 만기 1년, 2년, 3년, 5년 및 5년 이상 상품에 투자되었고, 그 비율은 국공채의 경우 2017년을 기준으로 만기 1년(16.65%), 만기 2년(18.46%), 만기 3년(7.97%), 만기 5년(17.06%), 만기 5년 이상(39.85%)으로 투자되고 있다. 2017년 이후에는 만기 5년을 초과하는 상품의 투자비중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을 위한 상품별 투자기간에 대한 가정 또한 금융부문의 연도별 투자기간별 투자비율을 적용하였다.

〈표 V-5〉 기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계	872,741	100.0	1,006,460	100.0	888,368	100.0	967,327	100.0	943,723	100.0
금융부문	872,741	100.0	1,006,460	100.0	888,368	100.0	967,327	100.0	943,723	100.0
- 국공채	194,970		214,175		179,273		183,308		170,342	
- 지방채	2,705		2,919		2,487		2,515		2,359	
- 기타채권	196,367		216,489		182,027		186,887		174,589	
- 위탁투자 등	478,699		572,877		524,581		594,617		596,433	

각 부문에 투자된 금액은 여유원금 회수와 투자수익이 발생하는데, 2017년도 여유원금 회수 총액은 약 46조원, 투자수익총액은 약 21조원 규모이다. 투자수익 및 여유원금 회수는 <표 V-6>과 같이 2016년 12월말까지 주식부문에 투자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투자된 기금에 대한 부분과 그 이후의 운용자금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여유원금 회수의 경우 A부분은 2016년 12월말 기준 적립기금에 대한 연도별 여유원금 회수이고, B부분은 2017년 1월 이후에 운용된 자금에 대한 여유원금 회수이다. A와 B부분을 더한 것이 당년도 전체 여유원금 회수금액 된다. 투자수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 12월말 적립기금에 대한 투자수익(C)부분과 2017년 1월 이후의 운용자금에 대한 투자수익(D)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7년 1월 이후의 운용자금에 대한 투자수익은 부문별 투자비율<sup>70)</sup>과 이자율<sup>71)</sup>에 대한 중기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V-6> 연도별 여유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내역

(단위 : 억원)

연도	여유원금 회수			투자수익		
	A	B	(A+B)	C	D	(C+D)
2017	455,352	0	455,352	79,873	132,370	212,243
2018	485,554	73,845	559,399	69,069	177,161	246,230
2019	264,088	157,537	421,625	54,572	221,583	276,155
2020	282,936	194,846	477,782	58,125	265,128	323,253
2021	264,517	187,157	451,674	45,343	308,734	354,077

주 : A와 C는 2016년 12월 말까지 적립된 기금(주식투자부문 제외)으로부터 회수되는 투자수익과 원금이며, B와 D는 기 적립된 기금 중 주식부문에 대한 운용자금과 2017년 1월 이후 운용자금에 대한 투자수익과 원금임

70) 중기 재정전망을 위한 투자비율은 국공채를 포함한 채권부문에 45.1~36.8%의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으며, 주식투자를 포함한 위탁운용부문에 43.0~49.2%의 비중으로 투자 및 대체투자 부문에 11.9~14.0%의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음.

71) 중기 재정전망을 위한 예정이자율은 자산군 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국공채 및 지방채의 경우 약 2.25%, 대체투자의 경우에는 7.3~7.5%, 위탁 투자의 경우에는 5.5~5.8%를 적용하고 있음.

여유원금 회수와 투자수익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투자수익의 경우 채권에 대한 투자수익과 기타 위탁 및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권투자수익은 국공채, 지방채 및 회사채와 같은 기타 채권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기타 투자수익은 위탁투자로 발생하는 수익(평가수익 포함) 및 대체투자 등에 대한 투자수익을 말한다. 2017년의 경우 채권 투자수익은 약 7조 4천억 원, 위탁투자 투자수익은 6조 8천억 원, 대체투자 등에 대한 투자수익은 7조원 정도로 전망된다.

〈표 V-7〉 부문별 투자수익 세부내역

(단위 : 억원)

연도	투자수익				
	합계	국공채	지방채 및 기타채권	위탁	대체투자 등
2017	212,243	41,054	32,858	67,711	70,620
2018	246,230	41,274	32,560	85,821	86,575
2019	276,155	35,523	31,987	104,768	103,877
2020	323,253	37,452	33,615	130,120	122,066
2021	354,077	35,277	32,045	146,569	140,186

- 주 : 1) 기타채권의 세부항목은 회사채, 특수채, 금융채, 여신금융채임.  
 2) 대체투자 등에는 수익증권과 단기자금, 위탁투자가 포함됨. 수익증권 및 위탁투자의 세부항목은 모두 대체투자(부동산, SOC, 인수금융 등)로 분류됨.  
 3) 2017년 1월 이후 주식부문의 투자수익은 투자된 금액으로부터 해당 부문 수익률이 반영되어 발생한다고 가정함.

여유원금 회수의 경우에도 투자수익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채권, 위탁 운용 및 대체투자 등에 대한 회수로 구분된다. 2017년의 경우 여유원금 회수 총액 46조원은 채권부문에서 약 39조원이 회수됨으로서 회수자금의 대부분이 채권부문에서 발생할 전망이다. 위탁투자로부터 약 1조 3천억 원, 대체투자 등으로부터 약 5조 천억 원이 회수될 전망이다. 채권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공채부문에서 약 12조 9천억 원, 지방채부문에서 약 2천억 원, 기타채권에서 26조 3백억 원이 회수될 전망이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여유원금 회수에서 약 13조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2016년 12월 말까지 기 적립된 기금의 중기 회수계획(〈표 V-6〉 참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이로서 해당연도의 운용 가능한 투자자금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작성된 투자수익 및 여유원금 회수 총액은 해당 수입을 현금이 수취되는 기간에 기록하지 않고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기록하는 발생주의를 따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현금의 유출입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표 V-8〉 부문별 여유원금회수 세부내역

(단위 : 억원)

연도	여유원금 회수								
	총합	채권				기타			
		합계	국공채 회수	지방채 회수	기타채권 회수	합계	위탁투자 회수	대체투자 회수	기타
2017	455,352	391,619	129,553	1,732	260,334	63,733	12,706	2,524	48,503
2018	559,399	541,197	199,559	2,347	339,291	18,202	14,257	3,945	0
2019	421,625	390,671	141,339	4,602	244,730	30,954	25,317	5,637	0
2020	477,782	441,119	215,362	3,415	222,342	36,663	30,008	6,655	0
2021	451,674	401,387	198,212	5,385	197,790	50,287	44,353	5,934	0

주 : 1) 기타채권의 세부항목은 회사채, 특수채, 금융채, 여신금융채임.  
 2) 위탁투자는 국내위탁과 해외위탁을 합하여 산출함.  
 3) 기타는 단기자금 및 복지부문에 대한 회수금액임.

### 3. 기금전망

국민연금 기금은 2016년 12월 말 현재 시가 기준으로 약 558조원이 적립되어 있다. 2017년도에는 약 41조원의 연금 보험료와 21조원의 투자수익으로 총 62조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은 약 20조원으로서 연금급여로 약 19조 4천억 원, 그 밖에 기타지출로 약 6천

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2017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차감한 신규조성자금이 약 4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금액은 2016년도 말 기준 적립기금에 추가되어 2017년도 말 기준 적립기금은 약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도에는 67조원의 수입과 22조원의 지출로 인하여 신규조성자금이 약 45조원에 달하며 2018년도 말에 적립기금은 6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V-9〉 국민연금 재정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 (A)	계	617,959	665,925	708,690	767,554	810,756
	연금보험료	405,716	419,695	432,535	444,301	456,679
	투자수익	212,243	246,230	276,155	323,253	354,077
지출 (B)	계	200,570	218,864	241,947	278,009	318,707
	연금급여	194,031	211,779	234,271	269,692	309,695
	기타	6,539	7,085	7,676	8,317	9,012
신규조성자금(C=A-B)		417,389	447,061	466,743	489,545	492,049
여유원금 회수(D)		455,352	559,399	421,625	477,782	451,674
운용자금(E=C+D)		872,741	1,006,460	888,368	967,327	943,723
적립기금		6,000,380	6,447,441	6,914,184	7,403,728	7,895,777

주 : 기타지출은 관리운영비 및 경상지출 등이 포함됨



## 참고문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박성민 외,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6~2020)』, 국민연금연구원, 연차  
보고서 2015-02, 2016.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년~2065년』, 보도자료, 2016.12



# 부 록

## 1.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에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협의회’를 통해서 ‘사회보험의 중기재정전망(2016~2025)’을 수행하였음.
  - 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향후 10년의 거시경제변수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전망치를 사회보험 중기재정전망의 공통전제로 제공하였음.
-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은 내부 연구진이 거시경제변수를 전망하고 이를 적용하여 중기전망을 수행해왔으나, 금년은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통합추계에서 적용한 경제변수 전망치를 사용함.

〈부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중기 전망

(단위 : %)

경제변수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2.7	2.6	3.2	3.4	3.4	3.1
소비자물가상승률	1.0	1.6	1.7	1.8	2.0	2.0
명목임금상승률	3.8	2.6	3.1	3.5	4.0	3.5
명목금리	1.8	3.3	3.4	3.5	3.7	3.7

주 : 1) 2016년도는 실적치임.

2) 전망치는 기획재정부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협의회’ 전망치(‘17.01)임.

11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부표 2〉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2016~2021)

(단위 : %)

연령계층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남 자	15~19	7.5	7.5	7.6	7.5	7.5	7.4
	20~24	44.2	44.0	43.9	43.6	43.4	43.2
	25~29	77.2	76.9	76.8	76.8	76.4	76.4
	30~34	93.3	93.2	93.0	92.9	92.6	92.5
	35~39	94.9	94.7	94.6	94.6	94.2	94.2
	40~44	95.7	95.6	95.5	95.5	95.2	95.1
	45~49	94.6	94.4	94.3	94.2	93.9	93.8
	50~54	91.8	91.6	91.5	91.5	91.1	91.1
	55~59	87.7	87.7	87.5	87.4	87.0	87.0
	60~64	74.5	74.4	74.3	74.2	73.8	73.8
65~69	60.0	59.9	60.0	60.1	60.1	60.0	
여 자	15~19	9.2	9.2	9.1	9.0	8.9	8.6
	20~24	54.2	53.6	53.1	52.7	51.9	51.3
	25~29	75.0	75.4	76.0	76.5	76.7	77.2
	30~34	61.9	62.5	63.0	63.7	64.2	64.8
	35~39	57.6	57.8	58.3	58.8	59.5	60.4
	40~44	65.0	65.4	65.7	66.2	66.5	67.0
	45~49	71.2	71.7	72.2	72.7	73.1	73.6
	50~54	67.2	67.8	68.3	68.9	69.4	70.0
	55~59	58.6	58.6	58.8	58.9	58.9	59.1
	60~64	46.9	47.1	47.2	47.4	47.3	47.6
65~69	34.2	34.4	34.6	34.9	35.2	35.2	

##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 주요내용(요약)

- 2016.5.29. 개정(2016.11.30. 시행)된 내용 중 급여와 관련된 내용만을 요약 정리함.

### 〈부표 3〉 개정법(급여 관련)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유족연금 중복 지급율	(현행)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20% (개정) 30%로 상향
장애연금 수급기준	(현행) 가입 중 발생, 가입기간의 2/3이상 보험료 납부 (개정) 초진일기준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 인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 중 초진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1)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납부 2) 최근 5년 전부터 3년 이상 납부 3) 가입기간 10년 이상
유족연금 수급기준	(현행) 가입자 및 10년 이상 가입자이었던 자, 2/3이상 보험료 납부 (개정)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 사망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1)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납부 2) 최근 5년 전부터 3년 이상 납부 3) 가입기간 10년 이상
유족범위	유족의 범위 중 자녀의 연령이 19세에서 25세로 상향

- 개정법을 적용하는 경우, 잠재적 수급권자(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을 만족하는 자)들이 현행 대비하여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함.

## 114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 분석을 위한 원시자료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가입자 이력자료<sup>72)</sup>’를 사용
- 분석대상자는 2015년 12월 기준 18~59세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전체를 대상으로 함.
- 가입대상기간은 27세 미만의 경우는 고지기간을, 27세 이상은 27세부터 기준일(2015년 12월)까지의 기간으로 함.
- 장애연금의 경우는 초진일을 기준일로, 유족연금은 사망일을 기준일로 하여야하나, 분석의 어려움으로 기준일은 2015년12월로 일정하게 함.
- 결과에 따르면, 적용제외자를 제외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현행 대비하여 개정법은 대상자의 규모가 약 7.0% 증가되는 효과가 있으며, 적용제외자를 포함한 경우에는 약 3.5%가 증가됨.

### 〈부표 4〉 잠재적 수급권자(현행 대비 개정법)

(단위 : 천명)

구분		소득신고자		납부 예외자	임의 가입자	적용 제외자 (10년 미만)	계
		사업장	지역				
현행 (가)	고지기간의 2/3이상	11,415	2,381	2,779	198	3,922	20,695
개선 (나)	① 가입대상기간의 1/3, or ② 최근 5년 중 3년납부	11,870	2,897	3,001	182	3,464	21,414
(나)/(가)		1.070					
		1.035					

주 : 1) 가입기간 산정 시,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해당보험료에 대해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음.

2) 적용제외자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함.

72) 1988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이력이 있는 자를 전부 대상으로 하여, 개인별로 월별 가입이력(보험료납부여부 등)을 구축한 자료(약 3,675만명)임.

## 3. 기금현황

〈부표 5〉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수 입				지 출			신규 조성자금
	계	연금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	기타	계	연금 급여	기타	
1988	5,278	5,069	201	8	3	3	0	5,279
1989	7,121	6,279	799	43	57	57	0	7,053
1990	10,193	8,340	1,849	4	426	426	0	9,655
1991	12,796	9,848	2,943	5	1,109	1,109	0	11,289
1992	16,628	12,234	4,394	0	2,295	2,165	130	14,229
1993	32,228	26,394	5,834	0	3,474	3,331	143	28,614
1994	43,415	33,258	10,157	0	5,344	5,191	153	37,439
1995	53,935	39,663	14,272	0	7,715	7,555	160	45,997
1996	68,688	49,436	19,252	0	11,353	11,176	177	57,155
1997	81,621	56,757	24,843	21	15,213	14,998	215	66,115
1998	116,613	78,407	38,206	0	24,506	24,255	251	91,823
1999	135,096	93,859	41,222	15	39,723	38,906	817	95,276
2000	153,010	103,589	49,392	29	16,708	15,884	824	136,229
2001	167,111	120,690	46,398	23	16,718	15,693	1,025	150,258
2002	191,819	138,180	53,614	25	20,359	19,153	1,206	171,336
2003	219,756	156,109	63,643	4	24,631	23,284	1,347	195,125
2004	239,561	171,433	66,936	1,192	32,469	29,140	3,329	207,092
2005	269,725	185,436	83,033	1,256	39,665	35,849	3,816	230,060
2006	306,947	201,523	103,773	1,651	47,634	43,602	4,032	259,313
2007	353,990	216,702	135,922	1,366	56,065	51,826	4,239	297,925
2008	323,483	229,855	93,431	197	66,050	61,808	4,242	257,433
2009	323,499	238,582	84,727	190	79,150	74,719	4,431	244,349
2010	386,211	252,853	133,259	99	90,810	86,355	4,455	295,401
2011	411,811	274,346	137,323	142	103,120	98,193	4,927	308,691
2012	449,251	301,277	147,872	102	120,682	115,508	5,174	328,569
2013	153,010	319,067	166,513	699	16,708	131,128	5,282	136,302
2014	571,987	340,775	230,326	886	143,303	137,799	5,504	428,684
2015	582,557	364,261	217,414	882	157,545	151,840	5,705	425,012
2016	636,277	390,359	245,439	479	176,527	170,682	5,845	459,750

주 : 각 연도 말 기준자료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116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 〈부표 6〉 연도별 기금운용내역

(단위 : 억원)

연도	회수 자금	운용내역				적립기금			
		계	공공부문	금융부문	기 타	계	공공부문	금융부문	기 타
1988	0	5,279	2,880	2,399	0	5,279	2,880	2,399	0
1989	1,852	8,906	3,400	5,506	0	12,342	6,278	6,055	9
1990	4,085	13,740	3,900	9,840	0	22,109	10,178	11,809	122
1991	4,810	16,099	5,000	9,899	1,200	33,795	15,178	16,897	1,720
1992	1,573	15,802	6,100	8,502	1,200	48,128	21,278	23,825	3,025
1993	9,841	38,455	12,400	24,555	1,500	76,881	30,800	41,418	4,663
1994	12,847	50,286	38,120	11,234	932	114,952	65,520	43,209	6,223
1995	10,407	56,404	42,735	12,155	1,514	161,173	104,355	48,897	7,921
1996	26,436	83,592	47,397	34,265	1,929	218,507	146,752	63,012	8,743
1997	21,475	87,590	50,000	35,015	2,575	284,916	190,652	84,120	10,144
1998	46,730	138,552	89,699	39,941	8,912	377,023	267,951	92,311	16,761
1999	85,640	180,916	88,742	91,628	545	472,396	318,573	141,450	12,373
2000	150,299	286,528	86,424	199,650	455	615,876	348,608	257,501	9,767
2001	161,068	311,327	30,822	280,471	35	780,565	295,055	476,904	8,606
2002	106,702	278,038	49,390	228,574	75	963,396	303,551	650,491	9,354
2003	219,362	414,311	0	414,221	90	1,166,945	152,740	1,007,976	6,229
2004	363,930	574,003	0	570,455	3,548	1,410,080	63,840	1,340,415	5,825
2005	373,572	603,632	0	603,495	137	1,639,486	0	1,633,509	5,977
2006	407,526	684,020	0	684,020	0	1,896,065	0	1,890,597	5,468
2007	451,267	728,463	0	728,463	0	2,195,399	0	2,190,099	5,300
2008	675,531	947,980	0	947,980	0	2,354,325	0	2,350,015	4,310
2009	374,830	494,613	0	494,613	0	2,776,424	0	2,772,519	3,905
2010	525,829	825,337	0	825,337	0	3,239,908	0	3,235,975	3,933
2011	445,880	760,834	0	760,834	0	3,488,677	0	3,484,681	3,996
2012	462,397	798,111	0	798,111	0	3,919,677	0	3,915,683	3,994
2013	501,120	833,730	0	833,730	0	4,269,545	0	4,264,473	9,767
2014	541,211	887,329	0	887,329	0	4,698,229	0	4,692,534	5,695
2015	637,140	989,850	0	989,850	0	5,123,241	0	5,116,983	6,258
2016	624,450	984,640	0	984,640		5,582,991	0	5,576,819	6,176

주 : 2004년부터 자산취득비, 임차보증금 등의 운용을 복지부문을 포함한 기타운용으로 분류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부표 7〉 연도별 수익률 현황

(단위 : %)

연도	총계	공공 부문	복지 부문 등	금융부문				
				계	채권	주식	대체 투자	단기 자금
1988	12.0	11.0	-	13.0	13.1	-	-	12.5
1989	12.8	11.0	-	14.4	14.6	-	-	13.1
1990	12.6	11.0	-	13.8	14.0	10.0	-	14.3
1991	12.8	11.0	11.0	14.0	14.5	10.0	-	14.3
1992	12.7	11.0	11.0	14.1	14.7	9.9	-	13.4
1993	12.0	9.7	11.0	13.9	13.9	14.3	-	11.3
1994	12.1	10.3	10.9	14.0	13.8	16.0	-	12.4
1995	11.8	11.6	10.7	12.2	13.8	5.1	-	13.7
1996	10.6	10.3	9.7	11.2	13.5	2.9	-	12.1
1997	8.8	10.3	8.7	5.6	13.2	-24.9	-	12.3
1998	14.4	13.0	8.9	18.4	15.0	39.5	-	13.0
1999	12.8	8.5	8.0	24.5	13.0	88.9	-	5.9
2000	5.9	8.6	8.1	1.3	15.3	-50.9	-	6.2
2001	9.0	6.6	6.0	11.4	8.8	36.6	-	4.8
2002	7.7	6.5	4.5	8.4	9.8	-2.3	-	4.0
2003	7.0	4.9	4.5	7.6	5.1	37.1	-	3.9
2004	8.3	4.7	3.9	8.6	8.6	9.9	0.8	3.7
2005	5.6	4.2	3.6	5.7	0.3	57.6	8.5	3.5
2006	5.8	-	3.6	5.8	5.8	5.5	6.6	4.2
2007	6.8	-	1.5	6.8	2.7	33.7	6.1	4.8
2008	-0.2	-	-0.8	-0.2	10.5	-42.9	2.7	5.9
2009	10.4	-	0.5	10.4	4.0	45.4	-0.9	-0.5
2010	10.4	-	-0.3	10.4	7.6	21.9	8.7	2.3
2011	2.3	-	-0.6	2.3	5.7	-9.5	10.2	3.2
2012	7.0	-	-1.0	7.0	6.2	10.1	4.9	3.2
2013	4.2	-	0.1	4.2	2.0	8.5	6.4	2.6
2014	5.2	-	-1.7	5.3	7.0	-0.1	12.3	1.5
2015	4.6	-	-2.1	4.6	4.2	3.0	12.2	1.6
2016	4.8	-	-1.4	4.8	2.0	7.8	9.9	2.0

주 : 수익률은 금액가중수익률로, 연도 말 기준자료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발간보고서 목록

### 2016년도

정책보고서 2016-01	우리나라 유족보장의 개선방안연구 -유족기초연금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용하, 최인덕 외	2017.1.
연구보고서 2016-01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민기채, 조성은 외	2017.1.
정책보고서 2016-02	성직자 노후보장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	유희원, 한신실	2017.1.
정책보고서 2016-03	기초연금 운영국가의 급여수준 검토 및 시사점	최옥금, 한신실	2017.1.
정책보고서 2016-04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유호선, 유현경	2017.1.
정책보고서 2016-05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	정인영, 유희원 외	2017.1.
조사보고서 2016-01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제6차(2015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보고서-	송현주, 임란 외	2017.1.
연구보고서 2016-02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송현주, 임란	2017.1.
연구보고서 2016-03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 2016	박성민	2017.3.
연구보고서 2016-04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수급부담 통계모형	최기홍, 신승희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05	국민연금의 일반균형 세대간회계 연구	최기홍, 김형수	2017.3.
정책보고서 2016-06	은퇴 예정자를 위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혜영, 김아람	2017.3.
조사보고서 2016-02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국민연금 연구원 연금제도팀	2017.3.
연구보고서 2016-06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추계 2016	한정림, 신승희	2017.3.
연구보고서 2016-07	국민연금 보험료수입 추계 2016	한정림, 김형수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08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 2016	김형수	2017.3.
정책보고서 2016-07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및 규모 전망 연구	윤병욱, 송창길 외	2017.3.
정책보고서 2016-08	국내채권 기대수익률 산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상현	2017.3.
연구보고서 2016-09	해외주식운용 장기성과 개선을 위한 포트폴리오 연구	강대일, 황정욱	2017.3.
연구보고서 2016-18	독자적 투자전략과 펀드성과의 관계 분석	이지연	2017.3.
정책보고서 2016-10	2015년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강대일, 이지연 외	2017.3.
프로젝트 2016-01	해외 연기금의 책임투자관련 주요 현황	이정화, 원상희	2017.3.
연구보고서 2016-10	국민연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추계 2016	신경혜, 송창길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1	국민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추계 2016	신경혜, 송창길	2017.3.
연구보고서 2016-12	공적연금 연계모형 구축과 기초율 산정 연구 2016	박성민, 송창길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3	장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연구	성명기	2017.3.
연구보고서 2016-14	국민연금의 장기 거시경제 영향 연구	성명기, 홍기석	2017.3.
연구보고서 2016-15	자산군 프로파일 변경에 기반한 전략적 자산배분에 관한 연구	최영민, 손경우 외	2017.3.
정책보고서 2016-11	해외투자시 동태적 환헤징 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2017.3.
연구보고서 2016-16	팩터 기반 인덱스의 전술적 활용 방안-해외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손경우, 최영민 외	2017.3.
정책보고서 2016-12	해외 주요 연금의 기금운용부문 개혁 사례와 시사점	박태영, 이정화	2017.3.
정책보고서 2016-13	국민연금의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비교에 관한 연구	정문경, 태엄철 외	2017.3.
연차보고서 2016-01	2017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	최영민, 박태영 외	2017.3.

정책보고서 2016-09	노인기초보장제도의 관리운영방식에 관한 국제비교	이용하, 최옥금 외	2017.4.
프로젝트 2016-02	통일 대비 효율적인 연금통합 방안 연구	이용하, 이철수 외	2017.4.
프로젝트 2016-03	2016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최옥금, 이상봉 외	2017.4.
연구보고서 2016-17	국민연금 액티브운용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액티브 위험 한도 설정 체계를 중심으로	강대일, 이지연 외	2017.4.
워킹페이퍼 2016-01	국민연금 국내주식의 위탁규모 증가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문경, 이정화	2017.4.
연구자료 2016-01	2016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7.4.
프로젝트 2016-04	국민연금과 국민경제 연구	성명기 편	2017.5.
용역보고서 2016-01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김성태, 권규호 외	2017.5.

## 2015년도

연구보고서 2015-01	자녀세대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과 노후준비	송현주, 임란	2016.3.
연구보고서 2015-02	결측치 대체방법 연구 -국민노후보장패널 소득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박주완, 김호진	2016.3.
연구보고서 2015-03	중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연구	성명기	2016.3.
연구보고서 2015-04	국민연금이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명기, 이준상	2016.3.
연구보고서 2015-05	미국의 경기국면의 예측과 투자전략	손경우, 최영민	2016.3.
연구보고서 2015-06	자산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GIPS®기준의 국민연금 성과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	정문경, 이지연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07	노인가구의 경제적 가치 수준과 빈곤완화 효과 분석 -한국, 미국, 영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상봉, 이은영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08	국민연금가입자 중기전망방법 개선 연구	박성민, 송창길	2016.3.
연구보고서 2015-09	기초연금 재정시뮬레이션	신경혜, 김형수	2016.3.
연구보고서 2015-10	국민연금 보험료수입 및 신규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추계를 위한 소득지수 개선방안 연구	한정림, 송창길	2016.3.
연구보고서 2015-11	사망률 전망 모형의 선택과 전망된 사망률에 기초한 국민연금의 수익비와 재정효과 분석	최장훈, 권미애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2	출산율과 사망률 변경에 따른 인구전망	최장훈, 김형수	2016.3.
연구보고서 2015-13	미시모의실험 모형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 측정	최기훈, 신승희	2016.3.
연구보고서 2015-14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정책의 평가: OG모형 파레토개선 접근법	최기훈, 신성휘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5	재무곤경위험을 고려한 해외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전략에 관한 연구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강대일, 조재호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6	외부 위탁운용 매니저의 군집투자 행태(herding)와 유인에 관한 연구	이지연, 태엄철	2016.3.
정책보고서 2015-01	기초연금 급여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연동방법 검토	최옥금, 한신실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2	고령화의 진전과 공사적 연금자산 성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박태영, 원상희	2016.3.
정책보고서 2015-03	국민연금기금의 통화 오버레이 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노상윤	2016.3.
정책보고서 2015-04	국민연금 부동산투자 다각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노상윤, 주상철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5	CVaR를 사용한 전략적 자산 배분에 관한 연구	최영민, 손경우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6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정문경, 황정욱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7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강대일, 정문경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8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가요인분석과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하, 김원섭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9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보완적 발전 방안	정인영, 민기채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10	생애주기별 소비 및 저축실태 분석에 따른 노후준비 전략	성혜영, 이은영	2016.3.
정책보고서 2015-11	국민연금 목표초과 수익률 산출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대일, 정문경 외	2016.3.
조사보고서 2015-01	중·고령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송현주, 박주완 외	2016.3.
연차보고서 2015-01	2016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	최영민, 박태영 외	2016.3.
Working Paper 2015-01	가입자 및 수급자 추계의 기초율 추정	김진미	2016.3.
프로젝트 2015-01	해외 연기금의 기금관련 주요 현황	이정화, 원상희	2016.3.
정책보고서 2015-12	정년제와 공적연금제도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김헌수, 유현경	2016.5.
연구보고서 2015-17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전망방법 개선 연구	한정림, 허재준 외	2016.5.
연차보고서 2015-0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6-2020)	박성민, 신경혜 외	2016.5.
연구자료 2015-01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 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6.5.
프로젝트 2015-02	주요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용하, 민기채 외	2016.5.
프로젝트 2015-03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종합적 고찰	이용하, 김원섭 외	2016.5.
용역보고서 2015-01	싱가포르 공적연금 기금운용의 시사점	이준희	2016.5.
용역보고서 2015-02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주은선, 김진석 외	2016.5.
용역보고서 2015-03	기금규모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의 시장영향력 분석	이재현	2016.5.

## 2014년도

연구보고서 2014-01	가입기간별 기초율을 적용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II)	박성민	2014.12
연구보고서 2014-02	공적연금 가입자 추계 방법 연구	박주완, 한정림	2014.12
연구보고서 2014-03	국민연금 이력자료에 의한 계층별 특성치의 통계적 추정	최기홍, 신승희	2014.12
연구보고서 2014-04	국민연금제도변수 중기 전망 연구	성명기, 최장훈	2014.12
연구보고서 2014-05	국민연금과 거시경제 모의실험모형 연구	성명기	2014.12
연구보고서 2014-06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최적공분산 추정에 관한 연구	최영민	2014.12
연구보고서 2014-07	경제적불평등과 노후최저보장제도의 관계 및 시사점 -OECD국가를 중심으로	이상봉, 서대석	2015.3
연구보고서 2014-09	국민연금의 재정평가 지표에 대한 비교연구	최기홍, 김형수	2015.3
연구보고서 2014-10	남부유럽 연금개혁 연구	권혁창, 정창률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1	독거노인의 생애노동이력과 이전소득 효과 연구	송현주, 성혜영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2	부도위험을 고려한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과 거래전략에 관한연구	강대일, 조재호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3	고연령 사망률 추정과 미래 사망률 전망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최장훈, 김형수	2015.3
연구보고서 2014-14	시간변동성 성과평가지표를 이용한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정문경, 황정욱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5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연금소득 추정	한정림, 박주완	2015.3
연구보고서 2014-16	유족연금 및 중복급여 산출방법 개선방안	신경혜, 신승희	2015.3
연구보고서 2014-17	환경, 사회, 지배구조요인(ESG)을 이용한 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손경우, 주상철	2015.3

정책보고서 2014-01	국민연금 국내부동산 벤치마크 사용자지수 산출에 관한 연구	노상윤, 민성훈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2	국민연금기금의 액티브 외화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손경우	2014.12
정책보고서 2014-03	공적연금 리스크 관리체계의 국제비교	최영민, 박태영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4	국민연금 국내 인프라투자 벤치마크 지수 개선방안 연구	노상윤, 유승동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5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현수, 김원식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6	201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공개)	강대일, 정문경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8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개선방안	박태영, 이정확	2015.3
정책보고서 2014-09	국민연금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지역가입자 관리개선 방안연구	정인영, 김경아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0	노인기초보장제도와 국민연금 간 역할분담관계에 관한연구	이용하, 최옥금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1	단시간 근로자 실태와 국민연금 적용방안	최옥금, 조영은	2015.3
정책보고서 2014-12	연금교육 활성화를 통한 노후준비 수준 제고 방안	성혜영, 송현주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3	우리나라 노년층의 노후소득격차 발생요인 분석과 지원방안연구	김경아, 김현수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4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특성과 국민연금제도 가입확대방안	유호선, 박주완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1	유족연금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유호선, 김경아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국제비교연구	이용하, 정인영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3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제5차(2013년도)국민노후보장패널(KReIS)분석보고서-	송현주, 이은영 외	2015.3
용역보고서 2014-01	최적사회보장과 창조경제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투자방안을 중심으로	임양택	2014.12

용역보고서 2014-02	1. 독일연금통합의 전개과정 평가(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 북한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원섭 이철수 외	2015.3
용역보고서 2014-03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연구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재진, 이정우 외	2015.3
용역보고서 2014-04	반납·추납 보험료 대여사업 사업타당성 분석 및 수요도 조사(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승훈	2015.3
용역보고서 2014-05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노후보장체계 국제비교 연구	김상호, 배준호 외	2015.6
연차보고서 2014-01	2015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비공개)	기금정책팀	2014.12
프로젝트 2014-01	OECD 주요 국가의 기초보장 급여적정성 평가방법	이용하, 최옥금 외	2015.3

## 저자 약력

- **신 경 혜**

연세대 수학과 졸업

연세대 수학과 이학박사

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 **박 성 민**

동국대 통계학과 졸업

동국대 통계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 정 립**

전주대 수학과 졸업

성균관대 수학과 이학박사

보험계리사

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연차보고서 2017-01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

2017년 6월 인쇄

2017년 6월 발행

발행인 : 이 원 희

편집인 : 김 성 숙

발행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TEL : 063-713-6778 / FAX : 063-715-6564

---

ISBN 978-89-6338-376-7